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방안 연구

2023. 12.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조 소 영 (부산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이 상 명 (순천향대학교 교수)

허 진 성 (부산대학교 부교수)

이 권 일 (경북대학교 조교수)

연구기간 : 2023. 10. 13 - 2023. 12. 21.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본 연구보고서는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과제로서 연구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

최종보고서 제출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로 별첨과 함께 제출합니다.

2023 년 12 월 21 일

연구기간 : 2023. 10. 13 - 2023. 12. 21.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 : 조소영 (인)

연구참여자

· 공동연구원 : 이상명

· 공동연구원 : 허진성

· 공동연구원 : 이권일

연구단체의 장



※ 별첨 : 카피킬러 표절검사지 1부.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공직선거법 규범 체계 형성과정(우리나라 선거법의 변천과정)	4
1.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시작점과 그 의미	4
2. 선거법의 변천과정	5
(1) 통치기관별 선거법 제정 및 시행의 변천	5
1) 국회의원선거법	6
2) 대통령선거법	8
3) 지방자치제도 관련 선거법	9
(2) 통합선거법시대 I: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년 ~ 2005년)	11
(3) 통합선거법시대 II: 공직선거법(2005년~현재)	15
3.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현황과 문제점	27
(1)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 형식상의 문제점	27
(2)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의 내용상 문제점	28
4.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개선방안	30
제3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법제 이원화 제안을 위한 검토 1: 선거절차법 ...	32
1. 개관	32
2. 장별 분석 및 검토	33
(1) 제1장 총칙	33
(2)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5
(3)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35
(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36
(5) 제5장 선거인명부	36
(6) 제6장 후보자	37
(7)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38

(8) 제8장 선거비용	38
(9)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38
(10) 제10장 투표	39
(11) 제11장 개표	39
(12) 제12장 당선인	40
(13)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40
(14)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42
(15)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44
(1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44
(17) 제16장 벌칙	44
(18) 제17장 보칙	45
제4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법제 이원화 제안을 위한 검토 2: 선거운동법 ...	49
1. 현행 선거운동 관련 조문의 체계	49
2. 선거운동법의 체계정비	49
(1) 선거운동법 조문의 재분류	49
(2) 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50
3. 선거운동 규제 완화	50
(1)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조화	50
(2) 선거운동 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	51
4. 선거운동법 조문별 체계정비안	53
제5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의 기타 법조문 정비 방안	68
1. 정당법 관련	68
(1)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68
(2)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69
(3) 기타 정당법으로 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71
2. 정치자금법 관련	73
(1) 제8장 선거비용	73
(2) 기타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75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개정필요 규정	76
(1) 정의규정의 정리	76
(2) 한문혼용 관련	77
(3) 개별 개정의견	78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78

2) 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제한 규정	78
3) 그 밖의 개정 사항	79
제6장 결론	80
< 참고문헌 >	83
< 참고자료 1: 공직선거법의 변천 >	86
I. 통치기관별 선거법의 제정 및 시행의 변천	86
1. 국회의원 선거법	86
2. 대통령선거법	100
3. 기타 통치기관별 개별 선거법	110
II. 통합 선거법 시대의 변천	117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17
2. 공직선거법	128
<참고자료 2: 현행 공직선거법의 분류안>	162
부록 1. 공직선거법개정안(공직선거절차법)	175
<조문목록>	175
<조문내용>	183
부록 2. 공직선거법개정안(공직선거운동법)	264
<조문목록>	264
<조문내용>	267

요 약 문 (국 문)

공직선거법은 단일 법률로서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을 정하고 있다. 그것이 단일한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는 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 효율성과 간이성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직선거법은 방대한 분량의 규정을 담고 있고, 개별적으로 문제가 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집적되어 온 결과 국민들이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그 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선거절차와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으로 보아 이 두 영역을 규율하는 별개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당활동이나 선거자금에 관한 조항들은 이를 관계 법률인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선거절차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중 제7장 선거운동 부분을 제외한 전체 18개 장 중 그 규정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제8장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는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한 전체 규정을 정비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 규정과 선거관리에 대한 일반적 조항들을 두었고,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권리행사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에 더하여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배치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이어지는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장 선거인명부, 제7장 후보자, 제8장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5장 기타(보칙), 제16장 벌칙에 이르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수정하고 변경하며 적절한 경우 일정 규정을 다른 법률로 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정비를 하였다.

선거운동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들은 주제별로 나누면 선거운동기간 및 주체(제58조~제60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60조의2~제60조의4), 선거운동기구(제61조~제63조), 선거홍보물(제64조~제68

조),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제69조~제74조), 연설·대담·토론회(제79조~제82조의3),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제83조), 주체에 따른 제한(제84조~제88조), 설치·이용의 제한(제89조~제92조), 언론·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제93조~제100조), 집회·연설회 등 제한(제101조~제105조), 호별방문 및 공표의 제한(제106조~제111조), 기부행위의 제한(제112조~제118조), 각종 특례규정(제206조, 제207조, 제209조, 제218조의1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총칙,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의 제한, 벌칙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 의거한 공직선거법의 체계 정비를 통하여 선거와 관련한 규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하고 용이해짐으로써 국민이 이를 준수하고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관련 법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과정이자,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위해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키게 되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헌법적 의의가 상당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달리 첨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선거 과정이 그 규범적 의의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구성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평가일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행된 지 3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애초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위 법은(제1조) 취지상 선거와 정치를 규율 영역으로 삼고 있고, 선거가 진행되는 현실적 사정이 적지 않은 규제의 도입과 시행을 정당화할 정도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개별 선거법제를 통합하는 변천과정을 거치고, 선거시기 마다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정치현실적인 사정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왔던 법이 공직선거법이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중심으로 한 여러 주제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들을 함께 규율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선거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인 만큼 선거에 대한 규율 내용이 복잡다단해지는 경향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라는 단행법 체계 안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규율 영역이 중첩되는 현상을 대상으로 규제 조항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법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이라는 차원에서의 결함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의 체계성이라는 본질적인 요청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는 동시에 규범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규제하는 방향에서의 문제점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규범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법치주의의 기본적 지향점과는 상반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재 선거 법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항은 복잡 다단한 선거 과정을 규제하는 단행법인 공직선거법의 일원적 규제 체계를 그 타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검토하고, 그 제도적 구조를 수범자 중심의 관점에서 다원화함으로써 규범 내용의 명확성과 규율 시행의 효과성을 달성·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 하에 수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전개하는 본 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다시 재배치하고 개정방향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역대 선거법 규정들과 공직선거법 시행령 등의 관련된 법률 내용들도 연구대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대상 법률들에 대한 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상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조항들을 기본적으로 선거절차와 선거운동의 이원화된 구분을 통해 재분류하고, 그 중 조문의 주된 내용이 정당과 관련된 조항들은 정당법으로,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법의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항들은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여 정리하는 등의 검토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우선 공직선거법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선거 규제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개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여러 중첩되는 영역에 대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성질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어느 범위에서 분야를 나누어 별개로 규정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일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규제의 기본 틀이 형성된 과정과 현황을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과정을 우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 규제 관련 법제의 도입과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시작점인 국회의원선거법 등의 통치기관별 개별선거법제의 제개정과정, 통합선거법제인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의 제개정과 공직선거법의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는 개정 과정, 일원적 규제 체계가 형성되게 된 배경과 현실, 규범 체계로서 이러한 구조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 구조적 성질에 기인하는 규범 효력의 관철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한 점검, 문제점의 개선과 대안 모색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의 항목들을 주요한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단일한 규제 체계를 어떻게 분산할 수 있을 것인지, 재분류와 재배치, 그리고 추가되어야 할 것과 정리되어야 할 것 등을 검토하여 이원화된 법제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점들을 법개정안 정리까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복합적인 선거 현상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 체계 정비의 기본 방향은 선거절차와 관련된 영역과 수범자인 유권자의 이해가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된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의 조문 내용 중, 규정적용의 대상이나 권리주체가 누구인가를 염두에 둔 분류도 검토한다. 다시 말하자면 공직선거법은 선거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둔 규율을 정한 규범 체계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정당과 관련된 사항은 정당에 관한 단행법인 정당법에 규정하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조항들은 정치자금법에 이전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배경으로 하는 관점이라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 중 정당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된 규제 등의 경우에는 이를 정당법에서 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첫째, 본 연구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복잡함과 혼란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연구목적 하에, 현행 법제의 법체계적 개선작업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방법을 기본으로 하고자 한다.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조문들의 입법연혁은 물론 공직선거법 자체의 입법과 변천과정에 대한 정리와 분석까지 포섭하여 다룬다. 둘째,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공직선거법의 법체계 정비의 이론적 근거를 정리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된 선행 연구결과물들을 비교분석하는 문헌조사 연구방법론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법제 이원화 작업을 법개정안으로 도출해 보기 위해 축조 및 법안구성과 관련된 이론과 실재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넷째, 현행 법조문을 간이화·명확화 하기 위한 연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제 사례들을 비교하여 검토해보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2장 공직선거법 규범 체계 형성과정(우리나라 선거법의 변천과정)

1.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시작점과 그 의미

대의제도에 바탕을 둔 통치구조 내에서 선거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조직원리다. 대의제도는 선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기 때문이다.¹⁾ 즉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인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인 것이다.²⁾ 이처럼 사실상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자유민주국가의 통치질서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굴절 없이 통치기관 구성에 반영되고, 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사 결정과정이 자유로운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마련된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들을 담은 법률이 바로 선거법제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담은 법률은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개별 법률로 혹은 통합 법률로 형식적인 변화를 겪기도 했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개정은 2023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거시기별로 시대적 변화나 제도개선적인 고침을 반영하는 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물론 한국의 선거사는 한국의 정치사라는 말처럼³⁾, 정권의 통치구도를 편의적으로 강화하거나 권력기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의도적 개편의 역사도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선거법 개정의 역사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을 우선한 규제 중심의 법제로 평가될 만해서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⁵⁾.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절차규정과 선거운동 규정의 내용상의 혼란은 물론이고 제한 및 금지규정과 벌칙 규정의 복잡한 구성 등으로 수범자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크다.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체계정비를 위한 개선작업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법제상 과제라고 할 것이다.

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23), 847면

2) 헌재 1996. 8. 29. 96헌마99, 판례집 8-2, 199, 206-207

3) 김욱 외 9인, 대한민국선거60년: 이론과 실제,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6면

4)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4

5) 이상윤 외 4인, 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위한 연구,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49면

우리나라에서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 제정된 최초의 선거법은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청이 공포·시행한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이었다. 이 법은 총 5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선거 원칙을 비롯해 선거권·피선거권의 범위 및 선거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했다⁶⁾. 이 법령내용에 따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5월 31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했다. 이하에서는 이 법령 이후 개별법 형태의 각 선거법과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이후의 통합된 선거법에 이르기까지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그 연혁에서의 변화의 흐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거법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선거를 치르면서,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구조의 변경에 따른 제·개정의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속에서 선거법은 법률의 존재형태에 따라 개별선거법제와 통합선거법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통합선거법제도 법률명에 따라 다시 ‘공직선거법’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1) 통치기관별 선거법 제정 및 시행의 변천

통치기관별 개별 선거법 시대에는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의 통치기관별 선거법이 별도로 존재했고, 그 외에 유신헌법 시대의 특별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과 1960년 헌법에서 새로이 도입했던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를 위한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각 선거법의 형태로 있었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대의기관구성방법이 아닌 제도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은 주관부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였다는 점에서, 선거법의 변천과정과 관련된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6) 국사편찬위원회, 사료로 본 한국사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20108&tabId=01&levelId=hm_145_0050)

해당 법령은 총선거에서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인정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주어졌다. 단 일제 강점기에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인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되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 제국의회의원이었던 자는 선거권이 박탈되었고, 판관 임관 이상,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급 이상, 고등경찰이었던 이들은 입후보할 수 없었다.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10_0010)

1) 국회의원선거법

상술한 바와 같이 제헌국회 구성의 근거가 되었던 미군정법령 제175호인 국회의원 선거법은 1948년 헌법 부칙 제100조⁷⁾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후로도 이 법의 내용은 1948년 12월 23일 투표 종료시각인 오후 7시를 오후 4시로 단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12일 비로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은 군정시대의 선거법령을 새 국가이념에 입각해서 개정하고자 했고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을 폐지한 개정법이라는 점에서, ‘폐지제정’이라는 설명이 따르는 법률이었다⁸⁾. 1951년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확대한 법개정 이후, 국회의원선거법은 1952년 7월 7일 헌법개정으로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게 됨에 따라 1958년 1월 25일 폐지되었고⁹⁾, 같은 날 민의원선거법과 참의원선거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1960년 헌법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와 국회의 민의원·참의원 양원제를 채택했는데, 1960년 6월 23일 국회는 이전에 구분되어 존재했던 「민원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양의원에 관한 선거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형태로 새로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였다¹⁰⁾. 이 법은 이후 1961년 법률 제605호¹¹⁾, 제606호¹²⁾로의 두 번의 개정을 거쳤고, 5·16 군사정변 발생으로 단원제 국회로 변경됨에 따라 1963년 다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단원제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법이었던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은, 개정헌법과 8·12성명의 취지에 따라 정국의 안정을 얻고 지연·혈연의 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선거구에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에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선거관리의 공정과 선거비용의 경감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제를 철저히 하고 선거운동원을 전폐하고

7)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49&lsId=&efYd=19500412&chrClsCd=010202&urlMode=lsEf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9) [시행 1958. 1. 25.] [법률 제470호, 1958. 1. 25., 타법폐지]

10) 손재권(편저), 공직선거의 이해, 도서출판 동양미디어(2016), 46면

11) 1961년 4월 28일, 명량한 선거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현역군인이 신성한 군복무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후보하는 사례가 많아 현역군인은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으로, 공무원 입후보 관련 규정인 제28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12) 1961년 4월 28일, 한 선거구에서 제1부의원과 제2부의원의 보궐선거를 동시에 시행할 때의 제1부와 제2부 당선자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기표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법이었다. 그래서 보궐선거조항인 제132조에 ①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동일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하도록 함 ②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선출할 의원수 이하를 기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주로 연설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었다.¹³⁾ 1963년 선거법은 정당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던 1962년 헌법을 구체화했던 선거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정당국가적 경향 하에 국회의원 입후보시 정당공천제, 당적이탈이나 변경시의 의원직 상실 규정을 두었었다. 그리고 이 선거법은 이후 3번의 개정¹⁴⁾을 거쳤는데, 개정의 주된 이유는 공정한 선거를 기하고 타락선거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들었다. 이후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을 기본 골격으로 했던 선거법은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규정이 새로이 도입된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은 유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종래와 같은 선거의 과열화와 타락상을 일소하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을 그 이유로 들었다.¹⁵⁾ 주요 개정내용은 정당선거를 약화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구당 2인의 의원을 선출하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의원선거제를 신설했고, 선거운동도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그리고 1972년 선거법을 기본으로 한 선거법의 개정은 이후로 2번¹⁶⁾의 개정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에 의한 제8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됨에 따라 이 선거법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선거법이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이다.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은 제5공화국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새로운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지역구 및 전국구선거의 관리와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정선거를 보장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제정이유로 밝혔다.¹⁷⁾ 이후 이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은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으로 통합된 단일선거법이 등장할 때까지 3번의 개정¹⁸⁾을 거쳤다. 그런데 개정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적 규정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1년 개정 국회의원선거법은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제도개선이었다고 한다¹⁹⁾.

1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55&lsId=&efYd=196301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4) 1963년 8월 개정, 1966년 12월 개정, 1969년 1월 개정이 있었다.

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60&lsId=&efYd=1972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6) 1973년 7월 개정(국회의원선거구 구역 조정), 1978년 2월 개정(국회의원 정원을 219인에서 231인으로 증원)이 있었다.

17)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63&lsId=&efYd=1981012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8) 1984년 7월 개정, 1988년 3월 개정, 1991년 12월 개정이 있었다.

2) 대통령선거법

1948년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정부통령 간선제 선출방법을 규정했으나, 1952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법된 법률이 1952년의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였다. 이 법은 다시 제2공화국에서의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바뀔에 따라 대통령 간선제 정국 하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1963년 대통령 직선제를 실행하기 위한 대통령선거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963년 대통령선거법에 의하면, 피선거권자는 국민으로서 선거일현재까지 계속 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의 자여야 했고 대통령후보자 등록은 정당만이 할 수 있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선거법은 이후 1966년 12월, 1969년 1월, 1970년 12월의 3번의 개정을 거쳤는데, 공정한 선거 보장의 목적 하에 선거관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개정한 내용들이었다. 이후 이 선거법은 유신개헌으로 대통령 선출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선제로 바뀔에 따라 1972년 12월 6일 폐지되었다.

10.26 이후 새로이 등장한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선출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법부터는 선거법 규정구조가 장·절·조로 다시 편제되었다. 새로운 제정 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대해 규정했고 대통령선거인의 피선거권²⁰⁾, 대통령선거인선거,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선거운동 등 대통령선거인단 구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었으며, 선거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비용의 절감과 국력낭비방지등 간선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개정의도를 밝혔다. 이 1980년 대통령선거법은 다시 1981년에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수를 완화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등록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 선거인후보자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수를 하향조정²¹⁾하는 개정²²⁾을 했

1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66&lsId=&efYd=199112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20)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3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그 선거구 안에서 6월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로 하고, 대통령선거인이 정당에 소속될 수 있게 함.

21) "200인이상 300인이하"를 "100인이상 150인이하"로, 인구 5천미만 선거구에서의 "100인이상 150인이하"를 "50인 이상 70인이하"로 하향조정하였음.

22) [시행 1981. 1. 24.] [법률 제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다. 하지만 다시 1987년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선거인단에 기한 간선제 선출방식을 규정한 이 대통령선거법은 1987년에 폐지되었다.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법을 제정한 것이 1987년 대통령선거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피선거권자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선거일 현재 40세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정당 추천 대통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구분했으며²³⁾,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들을 담았다. 제6공화국 직선제 대통령의 선출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의미를 중시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제도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컸다. 1987년 선거법을 다시 개정한 1992년 선거법²⁴⁾의 개정방향은 선거의 자유 보장 보다는 선거공영제 실현에 더 주목한 개정이었다고 할 만 했다. 그리고 이 개정법은 개별 선거법들을 통합한 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 폐지되었다.

3) 지방자치제도 관련 선거법

1948년 제헌헌법 제97조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예정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후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같은 해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는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²⁵⁾, 제2공화국 들어서 당시의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자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었으며, 이런 정국은 1987년 헌법이 시행된 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988년 지방의회의원법과 1990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입법될 때까지 위 선거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실시되었다.

1987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한 논의가 입법화된 것이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다. 이 법은 ① 지방의회의원

23)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후보자 1인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천만원을 기탁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5이상에서 선거권자 5천인 이상 7천인 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서를 첨부하고 1억원을 기탁하도록 함.

24) [시행 1992. 11. 11.] [법률 제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25)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했다.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도록 함 ②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자는 20세이상인 자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피선거권자는 25세이상인 자로서 선거일 현재 90일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③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되, 시·도위원의 경우는 700만원, 구·시·군위원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 실제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항은 오히려 부칙조항이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해 규정한 부칙 제2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과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했었기 때문이다. 1990년에 개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두 종류이상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선거업무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취지²⁶⁾로 개정된 법률내용이었다. 이 선거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 2번에 걸쳐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는 1960년 이후 31년만에 부활된 지방선거였다. 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한 날이 달랐다는 점이 특기할만했던 선거였다. 이 법은 1991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몇 조문을 개정했다.²⁷⁾ 농·수·축협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과 시·도위원선거에 있어서의 기탁금에 관한 규정 기존의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관계조문을 보완하는 개정이었다²⁸⁾. 이후 1994년 통합선거법의 등장으로 이 법은 폐지되었다.

한편 1990년 12월 31일의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선거를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탄생한 것이 1990년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하게 되면 한 해에 너무 많은 선거가 실시되어 문제가 발생할

26) <https://www.law.go.kr/lsInfoP.do?IsiSeq=2944&lsId=&efYd=19901231&chrClsCd=010202&urlMode=lsEfl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27) [시행 1991. 5. 23.] [법률 제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28) ①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함 ② 시·도위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신청시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③ 후보자등록신청시의 기탁금이 공영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수 있다는 이유로 1995년에서야 선거가 실시되었다²⁹⁾. 1995년 5월에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 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 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때문에 1990년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실제 선거에 적용되지 못한 채 폐지된 법률이었던 것이고, 1995년의 동시지방선거는 1994년의 통합선거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된 선거였다.

(2) 통합선거법시대 I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년 ~ 2005년)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이어졌던 권위주의 정권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그 결과로 성립된 1987년 헌법으로 인해 일대 전환을 맞이했던 것으로 평가된다³⁰⁾. 이러한 전환적 분위기 속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제반 선거 관련 법률 또한 개정 논의를 마주하게 되었다. 1988년 총선으로 구성된 제13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들에 대한 개정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일부는 실제로 통과되기도 했지만, 여러 선거들에서 여전히 이른바 불법 내지는 혼탁·타락 선거가 만연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³¹⁾.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내용은 차치하고, 최소한 당시의 선거정국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는 인식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도 1993년 2월부터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법 등 제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³²⁾. 여러 과정들을 거친 끝에 1994년 새로운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적 조치라는 명분 아래 개별적으로 존재해 오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의 4개 선거법을 통합한 선거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제명으로 제정되었다³³⁾.

1994년 이 법의 제정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다.³⁴⁾ 그래서 새로운 통합선거법의 가장 큰 특징을,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선거비용의 축소·선거사범 엄벌로 드는 견해도 있다³⁵⁾. 하지만 선거운동 방법을 허용하는 규정이

29) 손재권, 앞의 책, 48면.

30) 배정훈,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의 도입과 전개, 공법연구 제50집 제4호(2022. 6), 10면.

31) 최재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몇 가지 쟁점, 피플뱅크사(1993), 1-2면.

32) 제160회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1993. 2. 23), 12면.

33)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정]

3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350&lsId=&efYd=199403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35) 박상철, 선거운동과 정치관계법, 한줄기(1995), 131-133면.

제한적 열거주의에 해당하는 등 적어도 유권자의 시각에서는 규제의 엄격함이 줄어든 선거법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관리에 비중을 크게 둔 선거법제였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법조문 수의 35%에 상당하는 분량이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금지규정과 위반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5년엔 4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먼저 4월의 법개정³⁶⁾은 광역자치단체의회에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그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일부 관련제도를 개선·정비하는 내용이었다. 1995년 5월의 법개정³⁷⁾은 4대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과도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의 행정구역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이었고,³⁸⁾ 8월의 법개정³⁹⁾은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는 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12월의 법개정⁴⁰⁾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개정이었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는 등의 내용인 1996년 법개정⁴¹⁾을 거쳐서, 1997년에는 2번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1월의 법개정⁴²⁾은,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배로 늘려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각종 공직선거시의 유급사무원의 수를 2배로 증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일부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⁴³⁾ 주요 내용으로는

36) [시행 1995. 4. 1.] [법률 제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37)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3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353&lsId=&efYd=199505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39)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40)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41) [시행 1996. 2. 6.] [법률 제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42)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4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487&lsId=&efYd=199701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했고, 국회의원선거에만 허용되었던 공직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하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방법의 개선과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련한 개정을 했다. 그리고 11월의 법개정⁴⁴⁾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선거공영제 확대·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공정성 제고·기타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당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설명했다.

다음 해인 1998년에도 2번⁴⁵⁾의 개정이 있었다. 2월의 법개정⁴⁶⁾은,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후 50여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어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했던 개정이었다. 뒤이은 4월의 법개정⁴⁷⁾은, 같은 해 6월 4일 실시예정이었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유급선거사무원수를 축소하고, 선출직공직자의 축의·부금품 제공과 주례행위를 제한하는 등 고비용정치구조를 개혁하고,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되,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시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법개정이었다.

2000년 법개정⁴⁸⁾은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⁴⁹⁾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특히 신문 기타 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후까지 운영하는 것이나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한 것,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2천만원·시·군·구의 장 선거의 기탁금은 1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것,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

44) [시행 1997. 11. 14.] [법률 제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45) 개정일시상으로는 1998년 4월 1일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는 은행법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했다.

46) [시행 1998. 2. 6.] [법률 제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47) [시행 1998. 4. 30.] [법률 제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48) [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49)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9만미만인 행정구역은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 35만이상인 행정구역은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26개의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하는 것.

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2001년의 2번의 법개정 중, 7월의 법개정⁵⁰⁾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과 달리 그 선거일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의 10월의 법개정⁵¹⁾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 및 제57조 기탁금의 반환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1년 7월 19일 위헌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기탁금을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하향조정하는 것이었다.

2002년 법개정⁵²⁾은,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의원선거에 1인 2표제 도입,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과 동일하게 규정, 특히 시·도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정당법에 따라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거부사유로 규정함과 동시에 후보자등록무효사유로 규정했고,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2003년 법개정⁵³⁾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로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조정하는 것이었다.

2004년 법개정⁵⁴⁾은,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50) [시행 2001. 7. 24.] [법률 제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51) [시행 2001. 10. 8.] [법률 제6518호, 2001. 10. 8., 일부개정]

52)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53)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54)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 국회의 의원정수를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규정, 예비후보자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퍼센트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저지조항을 신설한 것 등이 있었다.

(3) 통합선거법시대 II: 공직선거법(2005년~현재)

2005년 8월의 개정에서는 우선, 법률의 제명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 제명은 현행 2023년 법률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로 총 39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1) 2005년 개정법⁵⁵⁾

이 개정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설명되어 있다.⁵⁶⁾

주요내용으로는,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 부여,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55)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56)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0230&lsId=&efYd=200508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의무 부여,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 기간 축소(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않도록 한 것 등이 있다.

2) 2006년 법개정

2006년의 2번의 개정 중, 먼저 3월의 법개정⁵⁷⁾은 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고,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당시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었다.

다음 10월의 법개정⁵⁸⁾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거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 여성후보자가 추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정치참여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었다.

3) 2007년 법개정⁵⁹⁾

이 법개정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⁶⁰⁾

57) [시행 2006. 3. 2.] [법률 제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58)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59) [시행 2007. 1. 3.]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6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6689&lsId=&efYd=200701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4) 2008년 법개정⁶¹⁾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선거권행사 보장을 위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기사심의대상 확대, 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 및 운영,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 도입, 정당공천 관련 처벌 내용 규정, 당내경선 운동방법의 확대, 당내경선비용의 국고부담 확대,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의 제시,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 개선,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방법의 변경,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 보호 등,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조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5) 2009년 법개정⁶²⁾

이 개정은 선거인명부 등재, 부재자 신고와 지방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에 따라 재외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한 것이었다.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재외국민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것,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것,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국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등에 관해 새로이 규정한 내용이었다.

6) 2010년 법개정

2010년에는 2번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먼저 1월의 법개정⁶³⁾은, 당시 공직선거법이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

61)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62) [시행 2009. 2. 12.]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63)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뒤에 있었던 3월의 법개정⁶⁴⁾은,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을 반영하여,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이었다. 특히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되,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했다.

7) 2011년 법개정

2011년에는 7월, 9월, 11월, 연이은 3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먼저 7월의 법개정⁶⁵⁾은, 주로 재외선거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 9월의 법개정⁶⁶⁾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투표를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이유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었다. 11월의 법개정⁶⁷⁾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한편, 영주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다.

8) 2012년 법개정

2012년에도 3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월의 법개정⁶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당조항을 개정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보완, 재외

64)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65)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66)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67)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68)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선거의 공정성 확보, 원활한 재외선거 관리 도모,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그 밖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는 것이 개정이유였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수를 상향 조정한 것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다.

2월의 법개정⁶⁹⁾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 신설,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 여론조사제도 개선⁷⁰⁾을 통한 객관성·공정성 강화, 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및 확정된 내용이었다.

10월의 법개정⁷¹⁾은,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 외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9) 2013년 법개정

2013년 2번의 개정 중, 먼저 8월의 법개정⁷²⁾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정당의 중앙당이 당

69)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70)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②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 ④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71)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72)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며,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외에도 각급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관련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12월의 법개정⁷³⁾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이었다.

10) 2014년 법개정

2014년에는 1월, 2월, 5월, 총 3번의 개정이 있었다. 1월의 법개정⁷⁴⁾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투표편의 제고, 사전투표 절차 개선,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었다. 2월의 법개정⁷⁵⁾은,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조정, 금권선거 관련 조항 개정,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 제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그 밖에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하는 것,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5월의 법개정⁷⁶⁾은, 당시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에 대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의 명

73)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74)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75)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76)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11) 2015년 법개정

2015년에는 3번의 법개정이 있었는데, 6월의 법개정⁷⁷⁾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 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시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의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8월의 법개정⁷⁸⁾은, 재외투표의 참여율 제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는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축소, 장애인과 군인 등의 선거권 보장, 헌법재판소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내용을 반영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 기타 당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었다.

12월의 법개정⁷⁹⁾은,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

77)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78)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79)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는 것에 대한 대응규정을 두어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고,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 했으며,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 제고하려는 개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를 통한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 조성, 그 밖에 당시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12) 2016년 법개정

2016년에도 2번의 법개정이 있었는데, 1월의 법개정⁸⁰⁾은,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

3월의 법개정⁸¹⁾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당시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향후에도 국회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국회의원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개정에서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하는 명문규정이 입법되었다.

13) 2017년 법개정

2017년의 2번의 법개정 중, 2월의 법개정⁸²⁾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선

80)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81)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82)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선,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한 것등이 주요내용이었다.

3월 법개정⁸³⁾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고,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14) 2018년 법개정

2018년에도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3월 법개정⁸⁴⁾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⁸⁵⁾.

4월 법개정⁸⁶⁾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각각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추가 규정,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하였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83)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84)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85) 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별표 2)하고, ②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별표 3)한 것

86)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15) 2020년 법개정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4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1월 법개정⁸⁷⁾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대량의 사표를 발생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⁸⁸⁾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

3월의 법개정⁸⁹⁾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변경되거나 그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3월에 바로 다시 했던 3월의 또하나의 법개정⁹⁰⁾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를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었다.

12월의 법개정⁹¹⁾은, 장애인·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론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개정이었다.

87)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88)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 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89)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90)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91)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16) 2021년 법개정

2021년에는 2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3월 23일 법개정⁹²⁾은, 중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3월 26일 법개정⁹³⁾은,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정보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17) 2022년 법개정

대선이 있었던 2022년에는 4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먼저 1월 18일 법개정⁹⁴⁾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 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이었다.

같은 달에 있었던 1월 21일 법개정⁹⁵⁾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조항들의 개정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그리고 이은 2월의 법개정⁹⁶⁾은, 당시 방역 규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92)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93)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94)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95)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96)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없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4월 법개정⁹⁷⁾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⁹⁸⁾

18) 2023년 법개정

2023년에는 2번의 개정이 있었다. 3월 법개정⁹⁹⁾은,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함으로써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8월 법개정¹⁰⁰⁾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97)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98) 주요내용으로는 ①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 ②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 ③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 인상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고,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림 ④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⑤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 ⑥ 법 시행 이후 선거구의 조속한 확정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특례를 마련함.

99)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100) [시행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이었다.

3.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현황과 문제점

(1)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 형식상의 문제점

앞선 정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많게는 한 해에 두세번의 개정을 거칠 정도로 선거시기마다 변화를 이뤄왔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공직선거법은 현재까지의 여러 국내법제 중 가장 많은 개정을 거친 법률이라고 평가될 만한 정도다¹⁰¹⁾. 물론 공직선거법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 선거의 민주적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법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의 개정내용과 역사를 살펴보면, 민주적 선거제도를 구현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과 이미 기득권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주가 된 현실적 상황의 충돌과 그로 인한 갈등적 양상이 적잖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현실의 결과가 보여주는 입법적 결과는 법제의 체계성의 혼란과 유권자인 수법자를 간과한 법제내용을 산물로 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은 어떻게 국민적 정당성(légitimité nationale)의 원리에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할 것이냐에 달려있고, 이러한 선거제도의 정립과 선거권의 보장과정이 근대 민주주의의 발달사라고 할 수 있다¹⁰²⁾. 그런데 이러한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를 건너뛴 우리의 선거제도 변천과정은 제도적 이상과의 괴리를 지닌 채, 집권세력에 의한 제도의 왜곡현상과 선거 그 자체의 굴절현상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감내해야만 했다. 우리 선거법제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답을 수 없었던 것들과 부

101) 장영수, 앞 논문, 33면.

102) 성낙인, 선거법론, 법문사(1998), 3면.

족하게 담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담아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선거제도의 진정한 개혁을 만들어 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기준점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개별선거법 체제에서 통합선거법으로 합쳐진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제의 단일성은 갖추었지만, 복잡한 법률내용을 보인다. 때문에 정작 유권자인 수범자들이 일반인으로서 법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불편한 법규정이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보아도, 법률의 구성체계 자체도 잦은 개정과 따른 규정추가로 인해 법률조문의 체계가 복잡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를 예로 보면, 총17장, 279개조의 규정인데 제6장의2·제14장의2의 경우나 제6조의2·제6조의3의 경우와 같은 가지조문의 수가 많아서 법조문간의 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준다. 또한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다른 법률을 인용하는 것이 180여개를 넘는데, 인용으로 인한 법 적용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혼란스러워서 수범자들이 법 적용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다른 법률의 개정이나 관련 제도의 폐지,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으로 삭제된 조문의 호수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산재되어 있는 특례 규정들이 적지 않으며, 게다가 구성요건마저도 불명확한 벌칙규정의 규정구조 자체도 어려워 해석의 어려움 등도 존재한다. 결국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법체계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도 간명한 정리가 어려운 법구조를 지니고 있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별 선거법체들을 통합했던 이유가 국민의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의 법체계가 그 입법 목적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부정의 답을 내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다.

(2)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의 내용상 문제점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 및 구성과 관련된 내용상의 문제점은 선거제도 본질론과 관련된다. 우리의 선거역사는 부정으로 얼룩진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선거는 굉장히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¹⁰³⁾. 하지만 익히 알고 있듯이 금권·관권선거 등의 부정선거의 역사적 경험들은 선거법제의 체계적 구성을 선거의 자유 보다 선거의 공

103)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2008), 14면.

정을 우선함으로써 선거관리 중심의 그리고 규제 중심의 법제로 발전시켜 오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관을 결정·구성하는 민주적인 방법인 동시에 선출된 통치기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¹⁰⁴⁾, 국민의 의사가 대의기관의 구성에 굴절 없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국민의 대의기관 구성권은 다음 선거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러한 선거의 의미가 제도화되도록 민주적 선거원칙을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선거제도의 확립이나 그 제도실현에 있어서는 각 후보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인들의 투표가 균등한 가치를 지니도록 해야 하며, 각 선거인들이 후보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적 선거법상 선거인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란 선거의 내용과 선거의 가부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질 것을 요구하는 것¹⁰⁵⁾이고, 선거의 내용에 있어서의 자유는 선거인의 판단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거정보가 편파적이거나 일방적인 제공에 기한 습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선거환경의 보장을 담보해야 한다¹⁰⁶⁾. 물론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는 동시에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고 이 또한 선거에서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¹⁰⁷⁾이라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도 민주선거제도의 다른 하나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처럼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 조화를 꾀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선거가치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은 궁극적으로는 선거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선거환경적 가치라는 점에서 판단의 중심점은 선거의 자유의 본질에 두어야만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은 동일한 차원의 대립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차원이 다른 보완적 개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경쟁의 공정성”으로 파악하거나¹⁰⁸⁾, 선거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공정의 원칙이 선거운동의 과정을 압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의미한 형식적 자유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104)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판례집 27권 2집 308-331; 헌재 2012. 8. 23. 2009헌가27, 판례집 24-2상, 355, 365-366; 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등; 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집 14-1, 49, 58-59 참조.

10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2023), 816면;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2023), 161-162면

106) 조소영,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44집제1호(2015.10), 146면.

107)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등, 판례집 27권 2집 308-331;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370;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판례집 24-2상, 590, 608; 헌재 2014. 4. 24. 2011헌바 17, 판례집 26권 1집 628-671 등 참조.

108) 음선필, 선거과정과 헌법재판소-선거운동 관련판례의 분석-,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2011), 118면.

선거과정에서 공정은 민주적 선거의 보완장치라 할 수 있으며, 자유는 민주적 선거과정의 목적적 가치이고, 공정은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¹⁰⁹⁾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의 선거법 뿐만 아니라 현행 공직선거법의 내용도 공정한 관리를 위한 규제 중심적 구성으로 입법되어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률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체계와 구성상 선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7장에서 선거운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일단 법조문 전체 중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규정은, 총17장, 279개조의 규정 중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으로 제7장 하나의 장, 60여개 조문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법조문 구성상의 양적 기울어짐이 심한 것은 차치하고, 원칙적 제한 및 예외적 허용이라는 규정 구조의 문제가 크다.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되, 동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한되는 구체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제한 규정들의 내용이 벌칙규정을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만큼 명확하게 구성요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까지 노정하고 있다.

4.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개선방안

통합선거법제화가 된 이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이르기까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투·개표, 선거쟁송 등 선거에 관한 절차규정과 선거운동·정당활동 등에 관한 제한·금지 규정 및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적용대상 및 범위가 방대하다. 그리고 조문구조 자체도 뒤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내용도 명확하지 않아서, 다양한 선거관계자들인 수범자들이 연계된 조문을 파악하여 스스로 행위규범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제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우선 현재의 단일법률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들을 선거절차법과 선거운동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그래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 중 선거관리 및 선거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은 선거절차법으로 분류하고, 선거 참가자들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운동법으로 분류하

109) 김용철,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 자유와 공정의 관점에서, 의정연구 제17권 제3호(2011), 90면.

되, 정당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당법으로, 선거비용 관련규제는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여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도 선거와 관련된 행동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법제가 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제한규정의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재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으로는, ① 선거에 관한 기본사항, 절차관련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예를 들어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은 선거절차법으로 하여 선거절차법은 선거기본법의 역할을 하게 함 ②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은 선거운동법으로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관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재배치함 ③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이나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정당법으로 분류함 ④ 선거 비용과 관련된 사항 중 정치자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치자금법으로 분류함을 정했다.

제3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법제 이원화 제안을 위한 검토 1: 선거절차법

1. 개관

선거절차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의 절차와 그 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모아 별도의 단행 법률로 구성하게 된다. 별도로 마련되는 선거운동법의 중심을 구성하게 될 제7장 선거운동 부분을 제외한다면 공직선거법의 전체 내용은 모두 18개 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은 대체로 선거의 실시 및 운영을 위한 제도의 기본을 규정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에 이르는 내용은 대개 구체적인 선거의 시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비교적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은 여타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중 거론이 되지 않은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과 함께 위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부분은 공직선거법 체계의 정비를 위한 방안으로서 규정하는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제8장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으로, 제6장의2 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는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이상의 공직선거법 18개 장에 대하여 선거절차법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선거의 절차 내지 관리와 관련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 또한 반영하게 될 것이다.

2. 장별 분석 및 검토

(1) 제1장 총칙

이 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반에 해당하는 총론적 성격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제1조에서 제14조에 이르기까지 목적, 적용범위, 선거인의 정의, 인구의 기준, 선거사무협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선거관리, 선거구선거관리, 임기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칙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규율 전반에 걸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세분하여 관련성이 높은 부분으로 옮겨 규정하고, 더 일반적 성격의 규정을 총칙에 존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적용범위는 총칙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달리 볼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

제3조에서는 선거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법률 중 사용되는 개념의 내용을 정하는 일반적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중에는 용어의 개념을 정하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한데 모아 규정하는 것은 총칙의 성격에 걸맞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선거인을 비롯하여 선거기간(제33조 제3항), 기부행위(제112조 제1항), 동시선거(제202조 제1항) 등 용어에 대한 규정들이 신설되는 정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제4조의 인구의 기준도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무리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칙에 산재한 규정들을 관련 부문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이 좀 더 체계적일 수 있다는 점에 집중한다면 이 조문을 제5장의 선거인명부 부분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본다.

제6조에서는 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6조의3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조문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들 조문은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부분의 말미에 배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은 선거별로 후보자나 관계된 자들에게 일정한 신분상의 보장을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6장 후보자에 관한 여러 규정들과 함께 그 서두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본다.

제14조는 대통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당선인 결정 이후의 문제로서 제12장 당선인 부분의 말미에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제7조에서 제10조의3에 이르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자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문상 ‘공정’이 직접 명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에 대한 강조와 기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선거의 절차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전반에 걸쳐 의미가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문은 이 장의 후반에 모아서 규정하거나 아니면 총칙 아래에 별도로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장을 두어 규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선거절차법에서는 이 중 선거를 관리하는 측면에 대한 규정으로서 더 일반적인 성격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관한 제9조를 총칙에, 다른 조항들은 제3장에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장을 두어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선거관리에 관한 제12조와 선거구선거관리에 대한 제13조는 그대로 총칙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다만 각각의 조문 제목을 선거사무 통할·관리체계와 선거구선거사무관리로 변경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제5조의 선거사무 협조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을 정한 내용으로서 제13조 다음에 역시 총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2)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 장에서는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이 없는 자,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내용은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선거의 절차 내지 그 관리에 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거절차법에서는 여기에서 장 말미에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제6조~제6조의3이 배치되게 된다.

이어 역시 앞서 서술한 ‘제3장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제목의 새로운 장이 제2장에 이어 규정되게 된다. 여기에서는 제7조 제2항이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지원이라는 제목의 조문으로 규정되고, 제8조에서 제8조의9, 제10조에서 제10조의3에 더하여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관한 제108조에서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에 대한 제108조의3에 이르는 규정들이 배치된다.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제110조의2, 의정활동 보고에 관한 제111조, 선거일 후 답례 금지를 규정한 제118조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여기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3)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이 장에서는 제20조에서 제32조에 이르기까지 선거구, 국회의 의원정수, 시·도의회 의원정수,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시의 선거 등, 투표구, 구역의 변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와 선거구의 획정이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 시·도의회,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더하여 국회의원,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구 획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임기 중 국회의원지역구 변경 또는 임기 중 지방의회 의원정수 조정 등에 따른 선거 유예나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실시 관련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사항 등 구체적인 경우에 대한 내용 또한 정하고 있다.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중심으로 한 이 장의 규정들은 선거의 절차나 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다고 할 것이다. 규정이 너무 장황하거나 복잡한 경우 이를 간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고,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그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시간적 요건과 관련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관한 이 장의 내용이다. 여기서는 제33조에서 선거기간, 제34조에서 선거일, 제35조에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그리고 제36조에서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별로 선거기관과 선거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3조 및 제34조가 이 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제35조와 제36조에서 정한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나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에 대한 내용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처리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기간 및 선거일에 대한 이 장의 내용도 선거의 절차나 관리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제5장 선거인명부

이 장에서는 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37조에서 제46조에 걸쳐 명부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명부작성의 감독 등, 명부열람, 이의신청과 결정, 불복신청과 결정, 명부누락자의 구제, 명부의 확정과 효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명부의 재작성, 명부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데, 그 작성에 관한 세부 사항 및 감독에 관한 규정과 함께 명부의 열람,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및 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 명부에 누락된 정당한 선거권자의 구제 방법, 명부의 확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선거 실시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서 선거의 절차와 관리를 위해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장의 서두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구의 기준에 관한 제4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조문의 기술이 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의 구성도 체계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제6장 후보자

이 장은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으로서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제47조에서 제57조까지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후보자등록 등,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추가등록, 등록무효, 공무원 등의 입후보, 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기탁금, 기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선거 과정의 진행과 관련된 후보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부문별로 분리,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0조 제1항을 들 수 있다.

제47조는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규정이고, 제47조의2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두 조문은 모두 정당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제49조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역시 정당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50조는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1항에서는 정당에 대하여, 제2항에서는 선거권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제1항의 내용이 정당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면, 제2항의 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0조 제1항은 정당에 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49조의 경우 정당에 해당하는 내용은 정당법으로,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선거절차법으로 나누어 규정할 수 있다. 그밖에 제48조 및 제50조 제2항 이하의 조문들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과 그 취소 및 변경 금지, 등록의 추가 및 무효,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된 제한 사항, 기탁금 관련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선거의 절차와 그 관리에 관한 부문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제50조 제2항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 이를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제48조에서 함께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조문의 제목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및 취소·변경의 금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6장의2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57조의2에서 제57조의8에 이르기까지 당내경선의 실시, 당내경선운동,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당원 등 매수금지,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등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는 당내경선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있는 부문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그 성질상 정당법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8) 제8장 선거비용

제8장에서는 제119조에서 제122조의2에 이르기까지 선거비용 등의 정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135조에서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의2에서는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제123조에서 제134조, 제136조는 삭제되었다. 이는 규정된 내용에 비추어 정치자금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9)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제9장에서는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137조에서 제145조에 걸쳐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당원집회의 제한,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42조와 제143조는 삭제되었다. 이들 규정은 정당의 활동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법으로 옮겨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10) 제10장 투표

제10장에서는 제146조에서부터 제171조까지 선거방법,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소의 설치, 사전투표소의 설치,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투표안내문의 발송,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투표시간, 투표의 제한, 투표용지수량 및 기표절차,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기표방법, 투표참관, 사전투표참관,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투표의 비밀보장,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투표록의 작성, 투표함 등의 송부,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등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49조의2와 제160조는 삭제되었다.

이 장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투표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관한 것이다. 투표의 방법, 관리관에 관한 사항,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및 송부, 투표용지의 표시 사항, 투표안내에서부터 시간, 투표의 제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표 방법, 보안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이후 투표함 봉쇄·봉인 및 송부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선거 절차 내지 관리에 해당하는 조문들이라고 할 것이다.

(11) 제11장 개표

제10장의 투표에 이어지는 개표에 관한 사항들을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제172조에서 제186조에 걸쳐 개표관리, 개표소, 개표사무원, 개표개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투표함의 개함, 개표의 진행, 무효투표,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개표참관, 개표관람,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투표지의 구분,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 또한 제10장과 마찬가지로 개표 진행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표사무의 관장, 개표소 관련 공고, 사무원 관련 사항, 개표개시에서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무효투표 관련 사항, 이의에 대한 결정 방식, 개표 참관 및 관람, 개표소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유효·무효 투표지의 구분 및 송부, 관련 서류의 작성·송부 및 보관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 조문들로서 이는 선거 절차 또는 관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12) 제12장 당선인

이 장은 개표 결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87조에서 제194조까지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당선인 사퇴의 신고,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통령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각 경우에 대한 결정·공고·통지에 관한 규정에 더하여 당선인 사퇴의 방식, 당선무효의 경우, 당선인 결정에 대한 착오의 시정 및 재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 장의 내용은 선거의 절차나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들로서 이해되는 부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총칙 중 임기개시에 관한 제14조는 내용상 이 장의 말미에 규정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간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장 제195조에서 제201조까지의 규정은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장은 모든 조문이 선거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므로 공직선거절차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5조는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와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97조 이하에서는 재선거와 재투표, 보궐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196조는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선거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선거의 연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규정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다. 즉 제195조와 제197조 이하는 제13장의 제목과 같이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196조는 선거의 연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연기와 재선거, 보궐선거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즉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혹은 선거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일정한 이유로 다시 선거를 해야하는 경우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고, 연기된 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 전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연기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선거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선거의 연기부분을 재선거와 보궐선거와 구분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연기된 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와 다른 선거의 유형으로 본다면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도 어색하다. 제13장에서 규정된 선거의 연기와 관련한 조항인 제196조와 제199조 등을 다른 장으로 이동하거나 제13장의 제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먼저 선거의 연기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는 방안과 관련해 제36조 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1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연기와 관련하여서는 제36조의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규정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제36조는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두 규정의 구성은 제196조에서는 대통령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6조는 연기된 선거일을 이들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4~36조가 선거일과 관련된 규정이라서 체계적으로 제36조가 존치될 이유도 충분하지만, 규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규정을 합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조문을 간명화하기 위해 제36조와 제196조 등을 결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제시하는 개정안에서는 이 두 규정을 하나의 규정으로 결합하여 선거절차법 제53조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선거를 연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유를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연기의 한계일(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의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부분도 개정시 논의되면 좋겠다. 실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것이 법률규정의 해석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비록 실제로는 코로나 사태가 잠시 소강상태일 때 선거를 실시하였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기의 한계를 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제200조는 보궐선거의 일반사항에 대해,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예외적인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보궐선거라 하고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과 특례규정이 모두 적용되나,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이를 보궐선거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대통령 이외 선출직의 보궐선거와 대통령의 궐위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같은 규정으로 둘 만큼의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도 ‘대통령

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선거’(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라고 명명하며 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임기도 보궐선거와 다르게 적용(보궐선거의 경우 잔여임기지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잔여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의 시작이 됨)되므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보궐선거와 다른 조항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조항으로서,

제200조의1(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 ① 대통령에 궐위가 생긴 때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다.
-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제목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아닌 대통령의 궐위선거(제218조의 12에 대통령의 궐위선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로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제시된 선거절차법에서는 제137조에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14)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 제202조에서 제217조는 동시선거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부분은 동시선거의 절차 부분과 동시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부분 그리고 정당 관련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도록 한다.

제202조는 동시선거를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203조에서는 보궐선거 등의 동시선거 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04~217조는 동시선거에 있어서의 특례, 즉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이다. 제204조는 선거인 명부에 관한 제44조 규정의 특례에 대해 규정한다. 제211조는 투표용지에 관한 제151조의 특례, 투표안내문에 관한 제153조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12조는 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제158조와 158조의2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123조는 투표참관인선정과 지정에 대한 제161조와 제16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214조는 개표에 관한 제175조의 특례를, 제215조는 개표참관인에 관한 제181조와 제182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216조는 동시선거 중 4개 이상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 제217조는 제169조, 제185조의 투표록, 개표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중 먼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제202조는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에 대해, 제203조는 선거범위와 선거일, 제204조는 선거인명부에 대해, 제205조는 선거운동기구와 선거사무관계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선거절차법으로 분류한다. 또한 제211조에서 제217조는 투표용지,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개함, 투표록 등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으로 전체 선거절차에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절차법으로 분류한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조항을 살펴보면 제205조~제209조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원래의 규정은 선거운동관련규정에서 규율하므로 선거운동 규정으로 분류한다. 제205조는 61~63조에 대한 특례, 206조는 64조에 대한 특례, 207조는 65조에 대한 특례, 209조는 79조에 대한 특례규정이다. 따라서 이들 규정을 선거운동법에서 규율하기로 하고 조문 위치는 각 특례규정의 원래 규정 다음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제216조는 각 조항이 운동부분과 절차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각 조항을 운동과 절차부분으로 구분한다. 제1항은 4개이상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제79조의 공개장소에의 연설·대담 등을 위한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부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특히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건¹¹⁰⁾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2022.01.18. 개정된 바 있다. 제2항과 제5항은 제178조에 대한 특례규정 및 투표함, 투표와 개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선거절차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제217조는 제169조, 제185조의 투표록, 개표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차규정으로 분류한다.

제210조는 제9장의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9장 전체를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제210조도 정당법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 있다. 다만 실제 제210조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에서 규율하는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조항들이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선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관련한 규정이다. 이 조의 제목은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있고, 내용적으로는 제9장이 동시선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정당과 밀접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를 정하는 규정이고, 준용규정도 절차규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35조, 제36조이기 때문에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라는 장의 전체체계에 비추어보면 선거절차규정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10)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15)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는 재외선거에 관하여 규정하는 부분으로 제218조 내지 제218조의 35까지 총 3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7. 6. 28. 선고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¹¹¹⁾에서 선거인명부 등재, 부재자 신고와 지방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에 따라 2009년 2월 12일 개정된 장이다. 이 장에 규정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2009년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재외국민 등의 선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거절차법으로 분류한다.

다만 제218조의14는 재외선거 중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규율하는 규정으로 선거운동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고, 제218조의15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제119조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은 제119조의 선거비용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규정으로 보아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입법기술적으로는 이 조항을 따로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제119조가 정치자금법에 편입되면 선거비용에 대한 단서조항 또는 제120조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부분에 삽입하여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16)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5장은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 제219조~제229조까지 10개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의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당선소송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5장 전체를 선거절차규정으로 분류한다.

(17) 제16장 벌칙

제16장은 제230조에서 제262조의3까지 37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벌칙을 규정하는 장이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 등

111) 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의 형벌과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의 집행력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구성요건에 따라 벌칙규정을 두고있는 조항도 있지만 제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의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의 경우 선거절차와 선거운동 부분이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거나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조항이 벌칙규정에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벌칙규정은 위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하나의 조나 장 전체를 선거운동, 선거절차로 일괄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운동법과 공직선거절차법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우 벌칙부분도 운동부분에 대한 벌칙규정과 절차부분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나누어 각 법률안에 그에 맞는 벌칙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벌칙규정은 현재의 규정체계를 유지한 채 절차와 운동부분에 적용될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벌칙 부분이 두 부분에 중복되게 적용되는 경우 각 법률안에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벌칙규정이 법규정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서술하지는 않고, 따로 부록에 제시된 법률안 규정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경우 한 조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으로,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의 경우 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조문 전체를 선거운동법이나 선거절차법의 벌칙규정으로 하고,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나 제262조의2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62조의3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규정은 선거운동법과 선거절차법 둘에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으로 공통으로 두 법률에 규율하기로 한다.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규정은 제1항은 운동부분으로, 제2항은 절차부분으로 각 항마다, 또는 제3항의 제1호와 제5호는 절차규정으로, 제2호와 제3호는 운동규정으로 각 항, 목 마다 운동과 절차부분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8) 제17장 보칙

제263조부터 공직선거법의 마지막 조항인 제279조는 공직선거법 보칙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63조~제265조는 선거비용초과,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당선무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선거절차규정으로 본다. 제265조의2는 당선무효로 반환받

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선무효와 연결된 조치로 선거절차규정으로 본다. 제266조는 선거범죄자의 공무담임 제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도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의 제한 사유와 기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선거절차 규정으로 분류한다.

제267조~제270조의2는 재판절차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관련자가 기소하거나 확정판결을 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송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선거법 등에 관한 재판의 관할과 재판기간에 대한 규정, 재판시의 피고인의 출석과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궤석재판 등 선거와 관련한 재판에 있어서의 특별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선거절차와 관련된 규율로 분류할 수 있겠다.

제268조의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현행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일에 임박하여 발생하거나 인지한 사건의 경우 이를 조사하거나 단속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1년 이상으로 늘일 필요가 있다. 이를 선거절차법틀안에 반영하여 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1년(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제271~272조는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나 선관위의 불법선거에 대한 대응에 관한 권한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아 선거절차로 분류한다.

제271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벽보나 시설, 조직등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중지·철거 등의 명령권한과 대집행 권한을 각급선관위가 행사할 수 있음과 제56조 제3항과 관련하여 그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71조의2는 선거와 관련한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선관위에 부여하고, 불응하는 경우 수사의뢰나 고발하도록 선관위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선거절차로 분류한다.

제272조는 불법선거선전물의 우송과 관련하여 각급선관위가 우체국장에게 우송의 금지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조사의뢰, 고발, 압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선거절차로 분류한다.

제272조의2~제272조의3은 각급선관위가 선거범죄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 조사·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절차에서 규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류한다.

제273조는 선거범죄에 대해 고발한 경우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수사와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으로 선거절차로 분류한다. 제274조는 선거와 관련한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의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선거절차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75조는 후보자가 사퇴·사망 등의 사유로 그 선거구에서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규정으로 선거과정에 관한 규정이므로 선거절차에서 규율한다.

제276조는 선거일 후 선거를 위한 선전물이나 시설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규정으로 선거절차에 대한 규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운동을 규율한 조항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만약 이를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정으로 본다면 제118조 전후에 배치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거후 선거관련 시설물 철거의 경우 선거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에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보아 이를 선거절차에서 규정하기로 한다.

제277조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선거와 관련한 경비나 비용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만, 이 조항은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규정으로 선거절차로 분류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선거관리경비 부분은 선거절차 중 총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보칙부분보다는 제1장 총칙부분으로 옮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고, 그 위치를 제13조 다음조항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다만 제277조 조항의 내용이 너무 길어 선거관리경비를 총칙에서 규정하게 되면 개론, 개괄적 내용이 규정되어야 하는 총칙부분이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게 되어 총칙으로서의 특성이 희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277조의 내용을 나누어 총론적 선언규정을 총칙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칙이나 다른 부분에서 규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제277조를 나누게 되면 선거관리경비에 대한 내용에 통일성이 사라지고 조문을 간명화하고자 하는 연구의 목적과 반대로 조문이 더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칙 부분에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한다.

제277조의2는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를 위한 자가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사망한 경우의 보상금을 지급과 관련한 조항으로 선거절차로 분류한다. 제278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한 사무전산화 추진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거절차로 규정한다. 제279조는 공직선거법의 마지막 조항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벽보·인쇄물 등의 선전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촉됨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도 선거운동을 위해 제출한 자료이므로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지만 제출된 자료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조항으로 선거의 일반적 내용에 대한 규정으로 보아 선거절차규정으로 분류한다.

제안하는 선거절차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제17장 보칙’을 별칙에 앞서 ‘제15장 기타(보칙)’으로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에서 규정되었던 제112조에서 제117조에서는 기부행위의 정의 등,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항은 그 내용에 비추어 선거절차법의 이 장으로 옮겨 규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제4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의 법제 이원화 제안을 위한 검토 2: 선거운동법

1. 현행 선거운동 관련 조문의 체계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7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 관련 조문을 주제별로 나누면 ① 선거운동기간 및 주체(제58조~제60조), ②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60조의2~제60조의4), ③ 선거운동기구(제61조~제63조), ④ 선거홍보물(제64조~제68조), ⑤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제69조~제74조), ⑥ 연설·대담·토론회(제79조~제82조의3), ⑦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제83조), ⑧ 주체에 따른 제한(제84조~제88조), ⑨ 설치·이용의 제한(제89조~제92조), ⑩ 언론·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제93조~제100조), ⑪ 집회·연설회 등 제한(제101조~제105조), ⑫ 호별방문 및 공표의 제한(제106조~제111조), ⑬ 기부행위의 제한(제112조~제118조), ⑭ 각종 특례규정(제206조, 제207조, 제209조, 제218조의1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선거운동법의 체계정비

(1) 선거운동법 조문의 재분류

선거운동법은 주제별, 행위별, 성질별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배치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58조는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인 만큼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다음 규정으로 배치하였다. 그리고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주체에 따른 제한의 내용이지만 그 주체가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여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함께 규정하였다. 또한 제82조의7(인터넷광고)의 경우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점에서 제69조(신문광고), 제70조(방송광고)와 함께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선거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수범자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알기 쉽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58조(정의 등)는 각 선거별로 금지된 선거운동방법을 정리하였고,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함을 표방하는 행위’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는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가 가능한 방법을,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는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나 만약 삭제되지 않는 경우 연설·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는 변화된 정보통신수단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를 열거하였다.

3. 선거운동 규제 완화

(1)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조화

선거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한 국민의 주권적 의사표현이다. 이에 따라 그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누리며,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헌법 제24조에서 보장하는 선거권의 구현이다. 국민의 관점에서 선거는 선거권으로 구체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대의기관의 입장에서는 한시적 기간 동안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과정이다.¹¹²⁾

민주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폭넓게 보장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요청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의 선거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

112) 손인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24권 제2호(2018.6), 127면.

여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선거과정에서의 참여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¹¹³⁾

다만 선거운동의 자유는 다른 한편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와의 균형이 요구된다. 즉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운동의 지나친 자유는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이 요망된다.¹¹⁴⁾ 즉 민주정치는 선거를 바탕으로 유지·발전되는 것이고,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선거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선거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는 한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고, 그 시대에 있어서의 국민총체의 정치·사회발전단계, 민주시민의식의 성숙도, 종래에 있어왔던 선거풍토 기타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자유·공정의 두 이념이 슬기롭게 조화되도록 정하여야 한다.¹¹⁵⁾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선거부정 방지에 노력한 결과,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이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 선거운동 규제 완화의 구체적 내용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 허용하되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연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등의 광고를 허용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신분증명서 등 인쇄물의 발급·배부·징

113)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114) 성낙인, 헌법학, 박영사(2021), 210-211면.

115)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구를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며, 선거벽보 첩부와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회 등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지방공사·공단과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실명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모든 선거에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를 매체(옥외광고물 제외) 및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후보자등의 방송 연설에 관한 방송시설 제한을 완화하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였다.

또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4. 선거운동법 조문별 체계정비안

위에서 설명한 선거운동법 조문의 재분류, 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선거운동 규제의 완화 등을 반영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 선거운동법 조문별 체계정비안 >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요건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58조(정의 등)	<p>- 구성요건의 명확화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제58조 제2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60조의5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제3조(정의)</p> <p>제4조(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0조의5(후보자의 선거운동) 후보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3.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4.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광고, 경력방송, 공개장소 연설·대담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의견	법 개정시 규정형식
		<p>6.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p> <p>7.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p> <p>8.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p>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1항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제85조와 제86조의 내용으로 충분하므로 제9조는 삭제	삭제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사·공단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염호초생산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57조의 6 ①) -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차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헌재 2021.4.29. 2019헌가11) - 위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허용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의견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2장 선거운동의 방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에게도 후보자에 준하여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	<p>①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설치·게시·첩부하는 행위</p> <p>2. 삭제</p> <p>4. 내용 중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삭제</p> <p>5.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p> <p>③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삭제</p>
제60조의4(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에게도 후보자에 준하여 선거운동을 확대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	① 삭제
제60조의5(후보자의 선거운동)		신설
제218조의14(국외선거 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요건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64조(선거벽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벽보의 효용성이 크게 줄었음에도 첩부 매수가 과다하여 자원낭비, 폐기물 대량 발생 등 환경문제 발생 - 인구 5천 명에 1매의 범위에서 읍·면·동별 첩부 매수를 조정 - 첩부 작업기간을 1일 연장함으로써 벽보 누락, 이중 투입, 지정된 장소 외 첩부 등을 최소화 - 거짓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통합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0명에 1매 ②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첩부한다. ⑥ 제110조의2와 통합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p>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203조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2분의 1
제65조(선거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2면으로 작성 -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공보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 - 대통령선거에서 전단형 선거공보를 폐지 - 선거공보 규격을 단일화하여 후보자 등이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발송하지 아니함 -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까지 제출 - 거짓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와 통합하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2면으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⑬ 제110조의2와 통합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의견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제69조(신문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용 광고가 허용되는 후보자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각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광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는 횟수 제한 없이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매체 제한 폐지 	① 횟수 삭제
제70조(방송광고)	상동	① 횟수 삭제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지역방송시설 또는 종합유선방송으로 매체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구를 권역으로 하는 방송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방송시설 제한 규정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방송시설’ 삭제 ② 삭제 - 부칙(2000.2.16.) 제5조 삭제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경력방송)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 의견	법 개정시 규정 형식
제79조(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		
제209조(공개장소에서 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상시 입후보예정자가 유권자와 대면접촉이나 언론을 통하여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	제1항에서 대담·토론회가 상시 가능함을 명시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동	① 단서 조항 삭제
제82조의2(선거방송토 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82조의3(선거방송토 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선거운동정 보의 전송제한)	조문의 제목 변경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요건)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의견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3장 선거운동의 제한		
제80조(연설금지장소)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구성요건의 명확화	3호 추가 3. 특정 정당을 지지함을 표방하는 행위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구성요건 명확화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구성요건 명확화	제88조(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1.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2.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3.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의견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p>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를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기간 중에는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요건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진열·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함(헌재 2022. 7. 21. 2017헌가1등)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2023.8.30. 개정으로 선거일 전 180일이 120일로 변경됨 - ② 삭제 	<p>제90조(시설물설치 등)</p> <p>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p>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구성요건의 명확화	<p>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p>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p>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 의견	법 개정시 규정 형식
<p>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p>	<p>○ 제1항 -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를 금지하는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헌재 2022. 7. 21. 2017헌바100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 - 2023.8.30. 개정으로 선거일 전 180일이 120일로 변경됨</p> <p>○ 제2항 - 물품 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면 가벌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각 금지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광고를 허용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에 한하여 금지함</p> <p>○ 제3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인쇄물을 폭넓게 허용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도 허용되는 인쇄물에 해당하며, 국민 의식의 성숙으로 신분증명서 발급·배부·징구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구속되어 유권자의 판단의 자유 및 선택의 자유 등 선거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p>	<p>제93조(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p> <p>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p> <p>③ 삭제</p>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 의견	법 개정시 규정 형식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p>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 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 2.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4.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5.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창당 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6.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 광고.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은 제외.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제96조(왜곡·허위보도 등 금지)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의견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구성요건의 명확화	<p>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3.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4.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의 경력방송 5.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p>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2.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p>- 법 제103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와 모임이 언제든지 허용되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집회·모임의 경우 법 제103조 제3항 및 제256조 제3항 카목에 따라 규제할 수 있음</p> <p>- 구성요건의 명확화</p>	<p>삭제 필요. 만약 삭제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개정</p> <p>제101조(연설·대담·토론회 등의 개최) 연설·대담·토론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4.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5.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6.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요건	법 개정시 규정형식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에서 '이름' 삭제	<p>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p>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p>-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결정함(헌재 2022. 7. 21. 2018헌바357 등)</p> <p>-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더라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모임은 상시 허용</p>	<p>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있다.</p> <p>③ 삭제</p>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p>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p> <p>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p> <p>②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p>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 의견	법 개정시 규정 형식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p>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②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②는 금지규정, ③은 허용규정이므로 두 조항의 순서를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순서(현행 조문 기준)	개정 의견	법 개정시 규정 형식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구성요건의 명확화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9조(서신·정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날 통신·연락수단의 다양화로 서신을 비롯한 전보, 모사전송(FAX)은 전기통신을 활용한 방법인 전자우편,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대체하고 있고,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선거운동 기회 불균형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용 -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에 따라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구성요건의 명확화 	제109조(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수신대상자의 수에 관계없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장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에서의 기타 법조문 정비 방안

1. 정당법 관련

공직선거법을 재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이나 정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은 정당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먼저 개별 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공직선거법 중 제6장의2와 제9장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1)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6장의2는 정당에서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57조의2에서 제57조의8까지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7조의2는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과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제57조의3은 이러한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내경선을 위한 선거운동(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4는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투표·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과 그 비용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5는 당내경선을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정당에 제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5와 제57조의6은 당내경선운동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7조의8은 정당은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서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에서의 중요한 과정으로 실제의 공직선거에서의 공정성 요구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민주주의가 발달한 현재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결한 중요한 선거절차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당내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요청도 실제 선거에 못지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당내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함에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유권자의 실제 의사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생성한 가상번호(안심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의2에 규정된 모든 조항은 실제 공직선거 전 단계인 정당에서의 후보자 공천을 위한 정당 내 선거운동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므로 정당 내의 선거운동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이 장에서 규정된 당내경선의 실시에서부터 관련 운동, 사무의 위탁, 금지되는 행위에서부터 이의제기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 구체적인 절차와 세칙에 이르는 내용은 실제 공직선거가 아닌 당내에서 실시되는 당내경선 중심의 규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규정의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리·조정하는 관점에 의거할 때 이들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정당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 다만 정당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 비로소 선관위의 관리하에 있는 선거가 되므로 이를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제2조)이라고 할 것이다. 정당의 정의가 이러하다면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는 정당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활동의 핵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을 실시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당법의 목적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6장의2에 해당하는 조문들은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제9장은 제137조에서 제145조까지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즉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37~139조는 정강·정책 등의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홍보물배부, 정책공약집, 기관지의 발행이나 배부를 제한하는 등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제137조에서는 선거가 임박한 경우와 선거기간 중 정당이 정기간행물에 정강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비나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등의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제137조의2는 방송에서의 연설을 제한하고 있다.

제138조는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배부하는 정강정책 홍보물에 대한 제한, 제138조의2는 정책공약집의 판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9조는 선거기간중 정당의 기관지 발행과 배부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40조와 제141조는 선거에 임박한 경우나 선거기간 동안의 정당에 의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창당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제한과 당원수련회 등의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142~143조는 삭제되었고, 제144조는 선거기간 중 당원모집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모두 선거기간 혹은 선거에 임박한 기간에 있어서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선거운동에 대한 규율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선거운동 중 특별히 정당에게만 해당되어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정당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정당법 제37조 제1항),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제37조 제2항). 그러나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활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들을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애초에 이 장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강·정책 등을 신문, 방송이나 홍보물, 공약집, 기관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널리 알리는 활동이나 당원들이 모이게 되는 일정한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일정한 경우에 있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문들이 정당의 활동에 대한 것인 이상 또한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제145조의 경우 정당은 선거기간 중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당해 당사의 외벽면이나 옥상에 설치·게시가 가능하게, 또한 후원회 사무소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90조 등에 규정된 선거운동 금지사유의 예외사유로 정당의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게시물이나 시설물을 설치,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원래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당법에 이러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앞의 조항들은 모두 일정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정당법에 두어

도 어색하지 않음) 이 조항의 경우 선거운동 부분에서 규율할 필요도 있다. 만약 선거운동 부분으로 제145조를 이동하여 규정하는 경우 제90조 다음이나 제90조의 한 개의 조항으로 삽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안하는 법률안에서는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한 조항으로 삽입하여 규정한다.

(3) 기타 정당법으로 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앞의 두 장의 경우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 사항으로서 장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정당법으로의 이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두 장에 규정된 정당관련 내용 외에 각 조나 항에 정당법으로 이관할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석해본다.

제6장의 경우 후보자의 추천·등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민주주의가 확립된 현재 정당에서의 후보자 추천은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최근 2020년 5월 27일 선고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¹¹⁶⁾에서 “현대 대중민주주의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導管)의 기능을 수행하여 주체적·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적 정치의사를 유도·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은 정치권력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의 다양한 주장과 견해들을 취합·선별하여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형성한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의 입후보자 추천과 선거활동, 주요 핵심 공직의 임명 절차에의 관여, 의회에서의 입법활동, 정부의 정치적 중요결정에의 영향력 행사, 대중운동의 지도 등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사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제8조 제1항),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보호하며,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정당을 일반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의 기능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정신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국회 활동은 앞서 본 정당의 공적 기능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정당이 장기적인 정책구상을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에게 제시하면,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그 정당의 정책을 법안으로 형성한 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게 된다. 현대 정당민주주의 하에서는 국회의원 개인이 정당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116) 이날 두 건의 중요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판결이 있었다. 하나는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헌재 2020. 5. 27. 2019헌라1)이고 다른 하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헌재 2020. 5. 27. 2019헌라3등)이다.

선택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당이 입법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을 하는 한편, 현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의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정치의사 형성에 대한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에 영향을 받아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라고 판시하여 정당민주주의 국가를 인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정당의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는 선거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47조와 제47조의2를 살펴본다. 이 두 조항의 경우 선거에 있어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부분은 선거절차에 있어서도 중요한 규정이지만, 정당본연의 기능이자 정당등록의 유지요건인 선거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거나 일정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정당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적당한 후보자를 추천하는 규정은 정당법에서도 중요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조항을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49조의 경우 후보자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추천관련 조항에서의 논의를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조항의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후보자 등록절차의 경우 선거절차에서도 중요한 조항이지만 정당추천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경선 규정을 정당법으로 이관하고 후보자의 추천관련 규정도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경우,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절차 조항도 정당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정당법의 목적에 더 부합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49조 제2항 등의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은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아니면 필요한 경우 정당법과 선거절차법에 같이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률안에서는 제49조 제2항을 정당법으로 옮기고 나머지 부분은 선거절차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제50조의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경우에도 제1항의 정당의 후보자추천 취소변경 금지 조항은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제49조와 같이 고려해야 한다. 만약 제50조 제1항을 정당법으로 옮기는 경우 제2항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만 남게 되는데 이 항을 제50조로 두어 제50조를 존치시키는 방법도 있고, 제48조로 옮기고 제50조를 삭제하

는 방법도 있다. 법률안에서는 제50조 전체를 삭제하고, 제1항은 정당법으로 제2항은 제48조 제6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51조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 추가등록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제61조는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사무소에 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정당 관련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므로 정당법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제61조의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볼 때 이 조항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하여 선거운동 부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의2는 선거운동기구 중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는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중 정당 부분에 국한하여 선거에 있어서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제62조와 제63조는 정당에 국한하여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거나 정당과 밀접한 내용을 담고있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거사무소의 실질적인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제61조의2를 정당법으로 옮기는 경우 제62조와 제63조도 같이 옮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제62조와 제63조는 정당후보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규정이므로 정당법으로 옮기지 않고 선거운동법에서 규율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치자금법 관련

공직선거법을 재분류하기 위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선거와 관련된 사항 중 선거비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정치자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치자금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정당법에서의 서술방식과 마찬가지로 개별 조항을 살펴보기 전에 공직선거법 중 제8장은 선거비용에 대한 규정으로 정치자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본다.

(1) 제8장 선거비용

제8장은 원래 제119조에서 제136조에 이르는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장이었지만 2005년 8월 4일 개정에서 회계책임자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에 관한 제123~제134조와 제136조가 삭제되어 현재 제8장의 조문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제8장은 특히 선거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19조와 120조는 선거비용을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21조는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방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제122조의2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 후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35조의2는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 보전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리고 제135조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과 그 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선거절차와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선거에 있어서 지출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제한, 국가 등에 의한 선거비용의 보전 등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선거 비용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하여 정치자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정치자금이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과 더불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그리고 위에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제3조 제1호), 이는 정당 내지 선거와 분리하여 별도로 생각하기 어려운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비용 등의 정의와 범위, 선거비용제한액 관련 사항, 선거비용의 보전 및 제한 등 선거비용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장의 조문들은 관련성이 높게 인정되는 정치자금법으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환경 변화로 선거운동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동영상, 이미지 등과 같이 제작 형태와 방식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편차가 매우 큰 항목의 경우 실질적인 가격기준을 산정하기 어렵고, 개별 항목에 대해 실질적인 지출한도 설정의 효과로 인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창의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후보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따른 보전을 예외로 하되, 예외로 하는 항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식으로 제122조의2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제122조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별로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선서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제8장과 함

게 정치자금법으로 통일성 있게 이관될 수도 있지만, 제8장의 다른 조항들이 실제 선거비용의 산정과 지출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비용보다는 선거절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있어야 하는 사항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절차 규정으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선거비용관 관련한 사항을 모두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면 조문전체의 체계성을 고려하여 제122조만 따로 선거절차법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제8장 전체를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여 제122조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기타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해야 할 공직선거법 조항

선거 비용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정치자금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고자 한다면 우선 제7조 제2항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제7조 제2항은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한 선관위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 후문에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치자금의 지출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조문 전체의 내용과 그 취지를 볼 때 이를 전체적으로 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선거절차로 분류하여 규율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절차법에서 규율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112~117조는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등 선거관련자가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12조는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있는 자가 선거구 안팎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조에 정의된 정당, 후보자 등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정치자금법으로 옮겨 규율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비용관련 사항은 선거나 정치를 위해 후원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치자금(금전)을 획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 등이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를 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에서 아직 정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

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는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 법률에서 정의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기부에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보자 또는 정당이 선거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광의의 정치자금법에서의 기부로 의제하여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이 적절할 수도 있겠으나(이도 결국 정치자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이하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기부의 제한과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기부는 그 입법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기 보다는 선거와 관련한 기부제한으로 보아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112조에서 제117조의 기부와 관련된 조항은 선거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112조에 규정된 통상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위임금지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하면서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성있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 이 조항의 개정은 2010년에 이루어졌는데, 최근의 물가상승이나 수입정도를 고려하여 이 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제218조의15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규정인 제119조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가 정치자금법으로 이관되는 경우 이 조항도 정치자금법으로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공직선거법의 개정필요 규정

(1) 정의규정의 정리

보통의 일반법의 경우 법률체계를 보면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이 규정된다. 보통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나 제3조에서 법률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대해 정의하는 규정을 두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의 경우 총 279조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이고,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률용어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은 제3조에서 선거인에 대한 정의 규정만 두고 있고, 나머지 법률용어는 각 조항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어, 법의 전면개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35조 제4항에서 보궐선거를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제71조 제2항에서는 지역방송시설을,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제11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제2항은 수입을, 제3항은 지출을, 제4항은 회계책임자를, 제202조 제1항은 동시선거를 명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각 개별 조항에서 정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를 개정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는 방안을 법개선적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을 공직선거운동법과 공직선거절차법 두 개의 법률로 나누는 경우 각 법률안에 각각 정의규정을 두고자 한다.

(2) 한문혼용 관련

법률 한글화 정책에 따라 많은 법률들이 한글화되었고 공직선거법도 많은 부분 한글화되었다. 특히 법률 조항의 제목의 경우 모두 한글화되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조항의 제목이 모두 한글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각 개별 조항에서 다른 조항을 준용하면서 조항 제목을 병기하는 경우나 법조항에서 아직 한문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8조의 경우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또는 제8조의3 제1항의 ‘선거기사(社說·論評·廣告 그 밖에 選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 등 국한문이 혼용되어 있고, 법의 마지막 부분인 제277조까지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법률 전체에서 개별 조항의 본문에서 한문의 한글전환에 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아 국민의 입장에서 법을 읽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이를 차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8조의3 제1항의 ‘언론중재위원회(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 규정은 이하에서 言論仲裁委員會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라고 기술하는 등으로 잘못 오기되어 있으므로 이는 법의 규정형식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의미로 이미 제8조의2의 제목이 한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고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3 제6항은 ‘제8조의2(選舉放送審議委員會)’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마지막 부분인 제277조에서 ‘제197조(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로 표기되어 있는 등 법 전체에서 본문에 법률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한글로 개정된 제목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의 한자제목이 규정되어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없는 법률을 준용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제시하는 공직선거절차법과 공직선거운동법안에는 한문을 한글화하여 한글로 된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개별 개정의견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와 제272조의3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를 조사한 후 관련 선거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수사가 종결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의하면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해 불송치결정이 통보된 경우 선관위는 고발인으로서 이의를 신청할 수 없어 해당 경찰의 판단이 종국판단이 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선관위가 검찰항고·재정신청을 통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발인인 선관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처할 수 있는 후속 불복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범죄의 경우 선관위가 고발인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안하는 법률안에서는 선거절차법 보칙부분 마지막에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제0조(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와 제272조의3에 의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한 후 관련 선거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선거범죄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2) 공무원 등의 입후보 관련 제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53조, 선거절차법안 제71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한에 관한 제1항 제8호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에는 뉴스를 포함한 전 분야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지상파방송이나 보도전문편성채널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2조의2(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위 규칙 같은 조 제2호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3) 그 밖의 개정 사항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향의 개정 소요 사항이 산재해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해당 부분을 통하여 조문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수당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아, 제시된 선거절차법안에서는 제77조 제4항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은 24만원,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은 18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174조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역시 수당과 관련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제시된 선거절차법안 제108조에서 제4항으로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선거 관련 조항으로서 필요하지만 아직 규정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제시된 법률안에 이를 반영하였다.

제6장 결론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여러 부문의 규율을 담은 규정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이는 선거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 중요한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있는 단일한 법률로서 이러한 규정 방식은 그 적용과 집행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규율이 관계하게 되는 여러 분야에 대한 규정들이 한데 모여 있음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지나치게 방대해지고 복잡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다채로운 여러 사정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며 이를 제도화하고 규제를 가중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상황을 규율하는 장황한 규정들이 산만하게 집적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계기를 통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 있는 국민들과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규정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법 준수와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체계를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크게 이분하여 선거절차법과 선거운동법의 개별 법률로 만들고, 정당활동이나 선거자금과 관련된 규정들은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옮겨 정함으로써 선거 관련 법제의 구조와 그 표현 방식을 간명하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다.

이에 우선 선거절차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7장 선거운동부분을 제외한 공직선거법의 전체 내용은 모두 18개 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 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제6장의2, 제8장, 제9장은 규정 내용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관계 법률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8장은 정치자금법, 제6장의2와 제9장은 정당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된다.

선거절차법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의 선거절차 내지 관리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선거절차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이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그 목적과 취지를 다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어서 개별 조항의 표현 방식과 전반적인 조문 체계의 구성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하여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용이한 법률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개별 조항들의 표현을 수정하고 위치를 변경하며 새로운 장을 도입하는 등의 여러 작업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장 총칙에서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선거관리에 대한 일반적 의미의 조항들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에 더하여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배치하여 그 제목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권리 행사로 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법 전반에 산재해 있었던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모아서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이어지는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6장 선거인명부, 제7장 후보자, 제8장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5장 기타(보칙), 제16장 벌칙에 이르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기존 조항의 내용을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거나 규정 체계를 변경하고, 개별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관계 법률로 이전하는 등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정비를 위한 수정 내지 보완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선거운동법으로 규정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7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중 선거운동 관련 조문을 주제별로 나누면 선거운동기간 및 주체(제58조~제60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60조의2~제60조의4), 선거운동기구(제61조~제63조), 선거홍보물(제64조~제68조),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제69조~제74조), 연설·대담·토론회(제79조~제82조의3),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제83조), 주체에 따른 제한(제84조~제88조), 설치·이용의 제한(제89조~제92조), 언론·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제93조~제100조), 집회·연설회 등 제한(제101조~제105조), 호별방문 및 공표의 제한(제106조~제111조), 기부행위의 제한(제112조~제118조), 각종 특례규정(제206조, 제207조, 제209조, 제218조의1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크게 분류하여 제1장 총칙(선거운동기간 및 주체, 선거운동기구), 제2장 선거운동의 방법((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홍보물,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연설·대담·토론회,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장 선거운동의 제한(주체에 따른 제한, 설치·이용의 제한, 언론·방송을 이용한 제한, 집회·연설회 등 제한, 호별방문 및 공표의 제한, 기부행위의 제한)으로 나누고 제4장 벌칙을 두었다.

선거운동법의 체계정비는 선거운동법 조문의 재분류, 행위 구성요건의 명확화,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조문의 재분류는 주제별, 행위별, 성질별로 유사한 조문들을 재배치하였다. 그리고 선거법규에 대한 전문지식

이 없는 수범자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알기 쉽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운동의 자유와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였는데, 최근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이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을 정한 공직선거법이 과도하게 비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선거 과정 중 국민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규제되고 무엇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리고 선거를 관리하고 필요한 규제를 해야 하는 담당 기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법 집행과 제도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겪게 되었다. 선거절차법 및 선거운동법의 별도 정립 및 그 체계의 정비를 통해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는 물론 선거 관련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이전보다 선거법규를 좀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거 법제의 개선 방안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욱 외 9인, 대한민국선거60년: 이론과 실제,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보고서
-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역사비평사, 2008
- 성낙인, 선거법, 법문사, 1998
- , 헌법학, 법문사, 2023
- 손재권(편저), 공직선거의 이해, 도서출판 동양미디어, 2016
- 이상윤 외 4인, 공직선거법 체계정비를 위한 연구,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최재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 몇 가지 쟁점, 피플뱅크사, 1993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3
-
- 강승식, 정당공천의 입법적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3권 1호,
2012.
- 고문현, 선거제도의 기본원칙과 공직선거법의 개혁방안, 토지공법연구, 90집,
2020.
- 김도협, 공직선거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소고, 세계헌법연구, 22권 1호, 2016.
-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50집, 2010.
- 김용철,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 자유와 공정의 관점에서, 의정연구 제17권
제3호, 2011
- 김중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헌법학연구, 18권 2호, 2012.
- 김학성,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 저스
티스, 170-2호, 2019.
- 김현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헌법적 문제 - 현재 2021. 1. 28. 2018
헌마456등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50집 2호, 2021.
- 김효연, 선거와 방송의 공정성, 헌법학연구, 27권 1호, 2021.
- 나달숙, 정치관계법의 현황과 쟁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41권 3호,
2017.
- 도회근,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 개선방안 연구, 헌법학연구, 17권 2호,
2011.
- 박명호, 개정 정당법의 검토-지구당과 당내경선제의 보완을 중심으로-, 헌법학연
구, 10권 2호, 2004.
- 방승주,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헌법학연구, 23권 3호,
2017.

- 배정훈, 한국에서의 유권자 선거운동 규제 of 도입과 전개, 공법연구 제50집 제4호, 2022.
- 성낙인,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헌법학연구, 18권 2호, 2012.
- 손인혁,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8. 26.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4권 2호, 2018.
- 송기춘, 선거과정에서의 유권자의 참여, 공법연구, 34집 4호 1권, 2006.
- 유승익,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 유럽헌법연구, 20호, 2016.
- 윤영미,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검토, 헌법학연구, 16권 3호, 2010.
- 음선필, 선거의 평은 및 공정성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한 검토, 헌법재판연구, 6권 2호, 2019.
- 이부하, 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세계헌법연구, 18권 2호, 2012.
- _____,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권 2호, 2020.
- 이종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당원모집과 공직선거법의 관계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953 판결 -, 법조, 68권 5호, 2019.
- 음선필, 선거과정과 헌법재판소-선거운동 관련판례의 분석-, 홍익법학 제12권 제1호, 2011
- 임종훈, 인터넷과 공직선거법, 인터넷법연구, 1호, 2002.
- 장영수,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27권 1호, 2021.
- _____,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공법학연구, 21권 2호, 2020.
- 정연주,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32호, 2020.
- _____, 정당민주주의와 정당개혁, 법조, 69권 1호, 2020.
- 조소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13권 1호, 2007.
- ,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연구 제44집제1호, 2015
- 조영승, 선거운동의 자유의 보장체계에 관한 소고 -헌법적 근거와 보호영역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9권 2호, 2018.
- 조재현, 가짜뉴스와 공직선거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21권 1호, 2020.
- 최희경, 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3권 1호, 2018.
- 홍석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19권 4호, 2013.

- 황정훈, 정치자금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9권 3호, 2019.
- 황창근, 인터넷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제체계 연구, 홍익법학, 13권 1호, 2012.

〈 참고자료 1: 공직선거법의 변천 〉

I. 통치기관별 선거법의 제정 및 시행의 변천

1. 국회의원 선거법

(1) 1948년 국회의원선거법¹¹⁷⁾

상술한 바와 같이 제헌국회 구성의 근거가 되었던 미군정법령 제175호인 국회의원 선거법은 1948년 헌법 부칙 제100조¹¹⁸⁾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후로도 이 법의 내용은 1948년 12월 23일 투표의 종료시각인 오후 7시(단 그때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이던 선거인은 8시까지 투표소 입장가능)를 오후 4시(위 단서 해당자는 5시까지 입장가능)로 단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12일 비로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총9장, 본문 55개조항과 부칙 2개조항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 총칙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 없는 자와 피선거권 없는 자, 겸직금지 규정, 선거비용 국고부담제를 규정했다. 제2장은 선거구역과 의원수, 제3장은 선거인명부, 제4장은 선거위원회, 제5장은 의원후보자와 선거운동, 제6장은 선거방법과 당선인, 제7장은 국회의원의 임기와 보궐선거, 제8장은 선거에 관한 쟁송(선거심사위원회), 제9장은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948년 국회의원 선거법이 미군정법령을 그대로 지속했던 것과 달리 개정했던 유일한 조항은 ‘투표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개정이유는 당시의 법 제31조에 의하면 투표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는 바, 1949년 1월에 시행예정인 보궐선거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일부취약지구에서는 공비의 습격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¹⁹⁾.

(2)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¹²⁰⁾

117) [시행 1948. 12. 23.] [법률 제17호, 1948. 12. 23., 일부개정]

118)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11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48&lsId=&efYd=194812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20) [시행 1950. 4. 12.] [법률 제121호, 1950. 4. 12., 폐지제정]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은 종전의 국회의원선거법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임시조치법을 폐지한 개정법이라는 점에서, ‘폐지제정’이라는 설명이 따르는 법률이다. 법령연혁사에서 밝히고 있는 법률 제개정이유로는, 과정시대의 선거법령을 새 국가이념에 입각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선거의 공정성을 유지·육성하여 선거의 명랑화를 기하고 선거비용을 최소로 축소시키며 선거지반이 없는 월남동포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¹²¹⁾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① 만 21세이상인 자에게 선거권을, 만 25세이상인 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 ②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 ③1인 1선거구제도 채택 ④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 ⑤ 투표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규정 ⑥ 당선인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⑦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의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총 13장, 본문 119개 조항 및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장 선거구과 투표구, 제3장 선거인명부, 제4장 선거위원회, 제5장 의원후보자, 제6장 선거공보기타,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의원의 임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3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3)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¹²²⁾

1951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은 ① 국무위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제7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에서 ‘국무위원’을 삭제 ② 제6장의 명칭을 선거공보기타에서 ‘합동연설회’로 변경 ③ 의원후보자의 선거인 개별방문 금지 규정 신설 ④ 선거인에게 답례 목적의 축하연이나 위로연 금지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한 일부 개정이었다.¹²³⁾

그러나 이 법은 1952년 7월 7일 헌법개정으로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게 됨에 따라 1958년 1월 25일 폐지되었고¹²⁴⁾, 같은 날 민의원선거법과 참

12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49&lsId=&efYd=195004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22) [시행 1951. 6. 23.] [법률 제204호, 1951. 6. 2., 일부개정]

12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50&lsId=&efYd=195106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24) [시행 1958. 1. 25.] [법률 제470호, 1958. 1. 25., 타법폐지]

의원선거법이 각각 제정되었다.

(4)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

1) 민의원의원선거법

1952년 헌법개정에 따른 양원제국회 구성변경을 위해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법 제가 1958년 마련되었고, 양법은 같은 해 일부개정이 있긴 했지만 1960년 폐지되었다. 먼저 1958년 1월에 제정된 민의원의원선거법¹²⁵⁾은 ① 선거권은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이상의 자에게 부여함 ② 선거구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되, 인구 15만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매10만마다 1선거구를 증설함 ③ 구·시·읍·면의 장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3월 2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토록 함 ④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선거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급선거위원회위원에는 원내에 의석을 가진 등록된 정당이 추천한 자중에서 2인을 참가시키되 여야 1인씩으로 함 ⑤ 의원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내의 선거권자 100인이상 200인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50만환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6분의 1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⑦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⑧ 총선거는 의원임기만료 60일부터 20일전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그 3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함 ⑨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은 총 14장, 본문 180개 조항 및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목적 규정을 둠),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선거위원회, 제6장 의원후보자(기탁금 규정¹²⁶⁾을 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일과 투표, 제10장 개표, 제11장 당선인, 제12장 재

125) [시행 1958. 1. 25.] [법률 제470호, 1958. 1. 25., 제정]

126) 제29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민의원의원은 30만환, 참의원의원은 50만환을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조 (기탁금의 귀속)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때 또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선거구의 유효투표수의 5분의1,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수를 의원정수로 제하여 얻은 수의 7분의1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당선인은 예외로 한다.

제31조 (기탁금반환)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선거와 보궐선거, 제13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4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958년 같은 해 3월에 민의원의원선거법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 중 일부사유를 삭제하고 총선거에서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을 했다.¹²⁷⁾ 주요 내용은 ①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제한규정을 삭제함 ② 총선거에 있어서 임기만료일전 1년으로부터 후보자등록이 끝날 때까지의 사이에 선전문서의 배포, 선전시설의 이용등에 관한 이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타인으로 하여금 하게 한 자가 후보자로 된 때에는 그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토록 한 내용이다.

2) 참의원의원선거법

1958년 1월에 민의원의원선거법과 같이 제정된 참의원의원선거법¹²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게 함 ② 선거권은 만 21세이상, 피선거권은 만 35세이상의 자에게 부여함 ③ 선거인명부는 민의원의원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의하도록 함 ④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급선거위원회를 설치함 ⑤ 의원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내의 선거권자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신청토록 함 ⑥ 공무원과 선거위원회위원으로서 후보가 되려는 자는 당해위원의 임기만료일 180일전에 그 직에서 사임되어야 함 ⑦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50만환을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유효투표수의 6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⑧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⑨ 국민학교·중고등학교의 생도 또는 미성년자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⑩ 벽보는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로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작성, 첨부하되 비용은 자기부담으로 함 ⑪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합동정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함 ⑫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자유로이 개인정견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함 ⑬ 합동연설회와 개인연설회이외에는 확성기, 녹음기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⑭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할 수 없게 함 ⑮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어떤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수 없게 함 ⑯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함 ⑰ 선거의 당락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를 금지함 ⑱ 후보자,

127) [시행 1958. 3. 11.] [법률 제475호, 1958. 3. 11., 일부개정]

128) [시행 1958. 1. 25.] [법률 제469호, 1958. 1. 25., 제정]

선거사무장, 출납책임자,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중 기부를 하거나 받을 수 없게 함 ⑲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공고후 3일이내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하여야 함 ⑳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이를 증명할 서면을 비치하도록 함 ㉑ 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60일부터 20일전까지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40일전에 공고토록 함 ㉒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2인의 참관인중 1인씩 교대로 투표소내에서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함 ㉓ 검찰관, 경찰관이나 현역군인은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함 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함 ㉕ 후보자등록마감일에 후보자수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함 ㉖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게 함 ㉗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하도록 함 ㉘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함 등이다. 이 법은 총 14장, 본문 170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목적 규정을 둠),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선거위원회, 제6장 의원후보자(기탁금 규정¹²⁹)을 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일과 투표, 제10장 개표, 제11장 당선인,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4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참의원의원선거법은 위 민의원의원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1958년 3월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 중 일부 사유를 삭제하고, 총선거에 있어서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¹³⁰)을 했고, 내용은 동일하다.

(5) 다시, 국회의원선거법 제정¹³¹): 1960년 국회의원선거법

4.19 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1960년 헌법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와 국회의 민의원·참의원 양원제를 채택했는데, 1960년 6월 23일 국회는 이전에 구분되어 존재했던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양의원에 관한 선거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한 형태로 새로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하여, 제

129) 제29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민의원의원은 30만원, 참의원의원은 50만원을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조 (기탁금의 귀속)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때 또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선거구의 유효투표수의 5분의1,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수를 의원정수로 제하여 얻은 수의 7분의1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당선인은 예외로 한다.

제31조 (기탁금반환)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130) [시행 1958. 3. 11.] [법률 제476호, 1958. 3. 11., 일부개정]

131) [시행 1960. 6. 23.] [법률 제551호, 1960. 6. 23., 제정]

5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였다¹³²⁾.

1960년 국회의원선거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을 제정이유로 하고,¹³³⁾ 주요내용으로는 ①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인구조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통계에 의하도록 함 ② 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부터 개시하며 다만, 민의원해산에 의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민의원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함 ③ 만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만 25세이상의 국민은 민의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함 ④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22조에 의한 선거인명부확정일 현재로,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함 ⑤ 민의원 의원의 선거구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다만, 인구 15만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까지마다 1선거구를 증설하되 각선거구의 인구가 비등하도록 이를 획정하도록 함 ⑥ 선거인명부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를 병용하도록 함 ⑦ 후보자 또는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선거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⑧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로부터 1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그 30일전에 국무원이 공고하여야 하며 민의원의 해산에 의한 선거일은 늦어도 그 20일전에 국무원이 공고하도록 함 ⑨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하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함을 규정하였다.

이 법은 총 13장, 본문 167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목적 규정을 둠),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의원후보자(기탁금 규정¹³⁴⁾을 둠),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3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32) 손재권(편저), 공직선거의 이해, 도서출판 동양미디어(2016), 46면

13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52&lsId=&efYd=196006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34) 제29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1인당 민의원의원은 30만원, 참의원의원은 50만원을 국무위원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조 (기탁금의 귀속)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로 된 때 또는 민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선거구의 유효투표수의 5분지1,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수를 의원정수로 제하여 얻은 수의 7분지1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당선인은 예외로 한다.

제31조 (기탁금반환)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국무위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이 법은 이후 1961년 법률 제605호¹³⁵⁾, 제606호¹³⁶⁾로의 두 번의 개정을 거쳤고, 5·16 군사정변 발생으로 단원제 국회로 변경됨에 따라 1963년 다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6)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¹³⁷⁾과 1972년 이전까지의 국회의원선거법

1)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

제5차 개정헌법이 대통령제 정부형태와 단원제 국회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양원제 국회를 전제로 했던 기존의 선거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정한 것이 1963년 선거법이다. 당시의 법제정이유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4·19의거이후 1960년 6월 23일에 제정공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양원제의 국회 구성과 내각책임제의 권력구조를 전제로 하였고 정당중심의 선거운동이 아니고 후보자본위였으므로 후보자 난립의 폐를 막을 길이 없었고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되었으며 지연·혈연 등의 정실에 좌우되는 폐단이 있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개정헌법과 8·12성명의 취지에 따라 정국의 안정을 얻고 지연·혈연의 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선거구에 다수대표제와 전국선거구에 비례대표제를 병용하고 입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추천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선거관리의 공정과 선거비용의 경감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제를 철저히 하고 선거운동원을 전폐하고 주로 연설회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었다.¹³⁸⁾

주요 내용으로는, ① 20세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25세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인정함 ② 선거구는 전국선거구와 지역선거구로 구분함 ③ 1지역구에서는 1인의 의원을 선거함 ④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의원으로 입후보하려고 할 때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 180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⑤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도록 함 ⑥ 1인 1투표제로 하고,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 ⑦ 당선인결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135) 1961년 4월 28일, 명량한 선거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을 악용하여 현역군인이 신성한 군복무의무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후보하는 사례가 많아 현역군인은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려는 개정으로, 공무원 입후보 관련 규정인 제28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136) 1961년 4월 28일, 한 선거구에서 제1부의원과 제2부의원의 보궐선거를 동시에 시행할 때의 제1부와 제2부 당선자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참의원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기표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법이었다. 그래서 보궐선거조항인 제132조에 ①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동일선거구에서 임기가 다른 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당선된 의원의 임기의 구분은 득표순차에 의하도록 함 ②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선출할 의원수 이하를 기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137) [시행 1963. 1. 16.] [법률 제1256호, 1963. 1. 16., 폐지제정]

13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55&lsId=&efYd=196301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함 ⑧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무효 등의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역구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등을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총 13장, 본문 175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의원후보자(기탁금 규정 삭제),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3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2) 1963년 두 번째 개정 국회의원선거법¹³⁹⁾

위 국회의원선거법은 같은 해 8월 한번 더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선거일 현재로 산정하게 함 ② 선거인명부의 효력은 당해 선거에 한하게 함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함 ④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3) 1966년, 1969년 국회의원선거법

1966년 국회의원선거법¹⁴⁰⁾ 개정내용은, ①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사본교부제도 신설 ② 전국구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수 30인을 35인으로, 지역구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원수 7인을 12인으로 각각 증원 ③ 정당 및 후보자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벽보제한매수 30매를 50매로 증가 ④ 선거공보의 발행송부회수 1회를 2회로 함이었다.

1969년 국회의원선거법¹⁴¹⁾은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명문화하고, 일부선거운동제한규정을 완화하여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보강함과 동시에 일부 지역선거구를 재조정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명문화 ② 일부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완화 ③ 연설회 고지벽보의 매수를 100매로 늘림 ④ 선거공보의 제한자수를 4,000자로 늘리고 일면만 동색으로 인쇄하게 함 ⑤ 벽보·선거공보·신문 및 방송시설의 이용에는 당해 지역구내의 극히 한정된 지역에만 이익을 주

139) [시행 1963. 8. 6.] [법률 제1383호, 1963. 8. 6., 일부개정]

140) [시행 1966. 12. 14.] [법률 제1849호, 1966. 12. 14., 일부개정]

141) [시행 1969. 1. 23.] [법률 제2088호, 1969. 1. 23., 일부개정]

는 사업의 공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 ⑥ 지역선거구를 15구 증설 ⑦ 예비선거인명부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1970년 국회의원선거법¹⁴²⁾은 개정이유로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운동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타락선거를 최대한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들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① 인구의 기준을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도록 함 ② 선거인명부로서,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초선거에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타의 선거에는 그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수시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③ 선거인명부의 열람장소와 기일을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 또는 수시선거인명부와를 구별하여 규정함 ④ 선거인명부의 등재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조정함 ⑤ 추가등록제 폐지 ⑥ 국회의원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도 그 직에 있으면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⑦ 정부투자기업체의 임·직원, 향토예비군소대장 이상의 간부 및 이·통·반장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 ⑧ 후보자와 소속정당을 제외하고는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정부업적의 찬양 또는 비방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⑨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국·공의 예산으로 행하는 공사의 기공식 또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행하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⑩ 선거일공고기일을 재조정 ⑪ 투표시간 재조정 ⑫ 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자를 입회시키도록 하고, 그 교부절차를 보완함 ⑬ 정당추천위원회에 의한 투표용지에의 가인절차를 규정하고,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의 발송준비기일을 재조정함 ⑭ 교육공무원도 개표사무종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개표사무종사원이 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수는 당해 종사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⑮ 전국구의의석의 배정을 받을 정당의 자격으로서의 지역구의의석수를 3석에서 5석으로 함 ⑯ 보궐선거실시에 관하여만 규정하였던 예외규정은 삭제하고, 재선거등에 관한 특례를 일괄 규정함 ⑰ 대법원은 선거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게 함 등이다.

1963년 1월 16일 제정된 이래로 4번의 개정을 거친 국회의원선거법은 유신이 있었던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출하는 국회의원 규정이 새로이 도입된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폐지되었다.

142) [시행 1970. 12. 22.] [법률 제2241호, 1970. 12. 22., 일부개정]

(7)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¹⁴³⁾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 폐지제정은 유신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종래와 같은 선거의 과열화와 타락상을 일소하고 돈 안들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을 그 이유로 들었다.¹⁴⁴⁾ 주요 개정내용은 ①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정당이 해산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는 당원 아닌 자의 자유스러운 입후보가 보장되게 하고,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자신이 하도록 하며, 당원인 의원도 당적의 자유스러운 이탈·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② 종래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당 1인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선거구를 새로 조정하여 선거구당 2인의 의원을 선출하게 함 ③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의원선거제를 신설 ④ 선거인명부에 관하여는 선거 때마다 작성하는 수시작성제로 통일하는 한편, 종전에 인정되던 선거인명부사본교부제도를 폐지하고 후보자에 의한 선거인명부열람제도로 이를 대체함 ⑤ 종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온 선전벽보의 작성·첩부, 선거공보의 발행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만을 선거운동으로 허용하되, 이러한 선거운동도 앞으로는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하기로 함 ⑥ 후보자에 대한 기탁금제를 채택하고 낙선자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함 ⑦ 선거구의 입후보자의 수가 2인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함 ⑧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고, 이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함은 물론, 투표·개표참관인도 될 수 없게 함 ⑨ 국회해산시에 실시될 선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 등이다.

이 법은 총 14장, 본문 194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의원정수 규정¹⁴⁵⁾ 등),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의원후보자(기탁금 규정¹⁴⁶⁾ 등), 제6장

143) [시행 1972. 12. 30.] [법률 제2404호, 1972. 12. 30., 폐지제정]

14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60&lsiId=&efYd=1972123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45) 제3조 (의원의 정수) 의원의 정수는 선거구에서 선거하는 의원과 국민회의에서 선거하는 의원을 합하여 219인으로 한다.

146) 제32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300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2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채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조 (기탁금의 국고귀속)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더라도 당선된 자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기탁금의 반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일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3장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국회의원선거¹⁴⁷⁾, 제14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했다.

(8) 1973년, 1978년 국회의원선거법

1973년 국회의원선거법¹⁴⁸⁾은 행정구역의 일부개편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하려는 개정이었고, ① 서울특별시 제4선거구의 관할구역안에 도봉구 일원을 삽입하고, 서울특별시 제7선거구 관할구역을 관악구 일원으로, 서울특별시 제8선거구의 관할구역을 영등포구 일원으로 함 ② 경기도 제4선거구의 관할구역안에 성남시 일원을 삽입하고, 경기도 제6선거구의 관할구역을 안양시 일원, 부천시 일원, 시흥군 일원, 용진군 일원으로 함 ③ 경상남도 제4선거구의 관할구역중 동래군 일원을 삭제한 내용이다.

1978년 국회의원선거법¹⁴⁹⁾은 ① 국회의원의 정원을 219인에서 231인으로 증원 ②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참관인제도 신설 ③ 기탁금 인상¹⁵⁰⁾ ④ 선거사무원의 교체금지조항 삭제 ⑤ 인구 30만이상의 구·시와 12개이상의 읍·면으로 이루어진 군의 경우 합동연설회회수를 1회 증회 ⑥ 현수막의 게시, 작성 등을 정함 ⑦ 정당추천투표참관인제도 신설 ⑧ 선거구를 분구·조정하는 개정을 했다.

(9)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¹⁵¹⁾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에 의한 제8차 헌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폐지됨에 따라 1972년 국회의원선거법도 폐지되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선거법이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이다.

147) 제147조 (후보자추천) 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국민회의에 일괄추천한다.

제148조 (후보자명부) ①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할 후보자명부는 제3조의 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주소·직업·경력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대통령이 제147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국민회의에서 선거할 의원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며, 그 작성은 제1항의 후보자명부에 준한다.

제151조 (선거) ① 국민회의에서 의원을 선거할 때에는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무기명투표에 부쳐 재적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148) [시행 1973. 7. 1.] [법률 제2603호, 1973. 3. 12., 일부개정]

149) [시행 1978. 2. 15.] [법률 제3093호, 1977. 12. 31., 일부개정]

150) 제32조 (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500만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300만원을 기탁하여야 한다.

151) [시행 1981. 1. 29.] [법률 제3359호, 1981. 1. 29., 폐지제정]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은 제5공화국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제의 도입 등 새로운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지역구 및 전국구선거의 관리와 이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정선거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제정이유로 밝혔다.¹⁵²⁾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의 2종으로 하고, 1지역구의 의원정수를 2인으로하며, 전국구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2분의 1로 함 ② 지역구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의 추천장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권자 500인이상 700인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 전국구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이 후보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③ 공무원 등은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그 직이 해임된 자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④ 후보자등록시에는 무소속후보자는 1,500만원, 정당추천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함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자, 동·리·통·반의 장은 선거사무원등이 될 수 없도록 함 ⑥ 합동연설회는 구·시에서 2회, 군에서는 3회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1인당 30분이내로 하며, 인구 30만이상의 구·시와 읍·면수 12개 이상의 군에서는 추가로 1회씩 개최하도록 함 ⑦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은 국회의원임기만료일전 180일로부터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⑧ 투표참관인은 지역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각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각 1인을 선정하되 선정한 인원수가 8인을 초과하는 때에는 정당이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이 있는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8인을 지정, 4인씩 교대참관하도록 함 ⑨ 전국구의석은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배분하되, 지역구선거에서 의석수가 제1위인 정당에 전국구의원정수의 3분의 2를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제2당 이하의 정당에 그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함 ⑩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지역구의 의원 전원(2명)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⑪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법은 총 13장, 본문 187개 조항 및 부칙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의원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3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52)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63&lsId=&efYd=19810129&chrClsCd=010202&urlMode=lsE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0) 1994년 이전의 국회의원선거법

1981년에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1994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으로 통합된 단일선거법이 등장할 때까지 3번의 개정을 거쳤다.

먼저 1984년 국회의원선거법¹⁵³⁾은 선거인명부, 의원후보자, 선거운동, 투·개표 참관등에 관한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권자의 명부열람기간 2일을 3일로 함 ② 전국구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과 동시에 공무원등의 직에서 해임하면 되도록 함 ③ 전국구후보자에 대해서도 정당추천 지역구후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함 ④ 선전벽보는 군에 있어서 인구 100인에 1매를 2매로 함 ⑤ 합동연설회를 구·시 및 군별로 3회 개최하되, 인구 30만이상의 구·시와 읍·면수 10개 이상의 군에 있어서는 1회에 한하여 추가하도록 함 ⑥ 합동연설회의 고지벽보는 연설회 1회에 100매를 200매로 함 ⑦ 현수막은 시당 2매를 3매로 하고, 인구 25만이상의 시와 인구 3만이상의 읍·면에 있어서는 1매를 각각 추가하도록 함 ⑧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와 선박의 한도를 2대·2척에서 3대·3척으로 함 ⑨ 투표참관인은 8인에서 12인으로 하며, 정당 및 후보자의 필요에 따라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수시교체할 수 있도록 함 ⑩ 투표함을 송부할 때 후보자가 지정하는 투표참관인 1인씩 동반할 수 있도록 하되, 동반하는 투표참관인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함 ⑪ 개표참관인은 8인에서 12인으로 하며, 후보자의 필요에 따라 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후 수시교체할 수 있도록 함 ⑫ 별표의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중 일부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다.

1988년 국회의원선거법¹⁵⁴⁾은 ① 지역구후보자의 선거운동원수를 선거사무소에 40인, 선거연락소에 20인, 투표구에 3인씩을 두도록 함 ②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표시한 소형인쇄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내용을 표시할 수 없도록 금지시킴 ③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수용시설에 기표소를 설치하여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함 ④ 종전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총 224개 지역구에서 224인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었다. 또한 편제도 제14장 보칙(10개 조항)이 새로 규정됨으로써 총14장 193개 조항, 부칙7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153) [시행 1984. 7. 25.] [법률 제3731호, 1984. 7. 25., 일부개정]

154) [시행 1988. 3. 17.] [법률 제4003호, 1988. 3. 17., 전부개정]

1991년 국회의원선거법¹⁵⁵⁾은 "돈 안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거사범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기부행위제한규정의 강화, 유급선거운동원제도의 폐지, 수동적으로 금품을 수령한 유권자의 자수시 특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연장, 선거사범재판기간 단축등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는등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¹⁵⁶⁾. 주요 내용은 ① 의원의 정수를 현행의 지역구 및 전국구의원정수를 합한 299인으로 정수화함으로써 전국구의원정수를 지역구의원정수의 증감에 비례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함 ③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단축하고, 후보자의 등록기간을 5일이내에서 3일이내로 단축함 ④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을 종전에는 정당추천후보자는 1천만원, 무소속후보자는 2천만원으로 하던 것을 균등하게 1천만원으로 함 ⑤ 기탁금의 국고귀속사유를 후보자의 득표수가 종전에는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의 3분의 1을 유효투표총액률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로 완화함 ⑥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함 ⑦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⑧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연설회를 선거구당 1회(2이상의 區·市·郡의 경우에는 區·市·郡마다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함 ⑨ 소형인쇄물의 후보자 4종, 정당 2종으로 하고 그 내용제한을 완화하여 후보자와 정당의 알릴 기회를 확대함 ⑩ 소형인쇄물의 배포방법에 호별투입에 의한 배포(戶別訪問은 禁止)를 허용함 ⑪ 지역구후보자가 당선된 때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이상을 득표한 때에는 선전벽보의 작성·첨부·철거비용, 선거공보의 작성비용 및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함 ⑫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 도로, 시장, 점포, 차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⑬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화환, 달력등의 제공과 입당원서와 교환하는 금품, 관광의 편의제공 등을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허용되는 의례적, 직무상 행위를 의례적 범위내의 축·조의금,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등에서의 통상적 범위내의 차과나 음료접대(酒類 제외), 장학재단에 의한 정기적 장학금등을 예시하고 그 범위를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155) [시행 1991. 12. 31.] [법률 제4462호, 1991. 12. 31., 일부개정]

156)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966&lsId=&efYd=199112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후보자와 정당이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강화함 ⑭ 유급선거운동원제도를 자원봉사선거운동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관계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실비만을 보상하도록 함 ⑮ 투표참관인을 정당추천후보자는 2인, 무소속 후보자는 1인씩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는 모두 2인씩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정당추천후보자는 8인, 무소속후보자는 4인씩 선정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는 모두 8인씩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의 차등을 없앴 ⑯ 부재자투표함을 분리개표하도록 함 ⑰ 종전에는 제1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구의 의석의 2분의 1을 제1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던 것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제 제고를 위하여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구에서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도 당해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때에는 1석의 전국구의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소수당의 의회진출기회를 보장함 ⑱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선거범죄화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등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알선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기타 공명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함 ⑲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등을 범한 자중 금품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선거인(候補者와 그 家族 및 選舉運動員등을 제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함 ⑳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종전에는 선거일후 3월(犯人 逃避時 1年)로 하던 것을 선거일후 1년(犯人 逃避時 3年)으로 연장함 ㉑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이내에 하도록 함 ㉒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가치의 증가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그간의 행정구역개편에 맞추기 위하여 지역구 13개를 증설함 등이다. 편제는 1988년 국회의원선거법의 총 14장 구조이지만, 본문의 조항총개수는 194개 조항으로 한 개의 조항이 늘었다.

2. 대통령선거법

(1) 대통령·부통령선거법¹⁵⁷⁾

1948년 헌법은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정부통령 간선제 선출방법을 규정했으나, 1952.7.7.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의 직

157) [시행 1952. 7. 18.] [법률 제247호, 1952. 7. 18., 제정]

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입법된 법률이 1952년의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었다. 이 법은 다시 제2공화국에서의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로 바뀐에 따라 대통령 간선제 정국 하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1963년 대통령 직선제를 실행하기 위한 대통령선거법이 새로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952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총 11장, 본문 98개 조항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1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을 인정함 ②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특별시의 구·시·군을 개표구로 함 ③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일전 4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 30일까지 작성토록 함 ④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참의원의장이 위촉토록 함 ⑤ 각급선거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각 1인을 두도록 함 ⑥ 선거비용에 관하여는 중앙선거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실시상 지장이 없도록 국고에서 지급토록 함 ⑦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 500인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⑧ 공무원과 선거사무소에 종사하는 위원·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⑨ 선거일은 선거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토록 함 ⑩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입회토록 하고,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인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하도록 함 ⑪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당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인계하여 대통령 및 부통령의 임기중 보관하도록 함 ⑫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득표수가 선거인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도록 함 ⑬ 당선인이 없을 때, 선거전부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또는 당선인이 임기개시전 사퇴·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하도록 함 ⑭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을, 당선을 실한 자가 당선외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된 대통령을 피고로 하여 당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이 법의 편제 내용은 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피선거권에 국내거주요건을 둠¹⁵⁸⁾), 제2장 선거구역, 제3장 선거인명부, 제4장 선거위원회, 제5장 후보자(추천의 자유 보장 규정 둠¹⁵⁹⁾),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일과 투표, 제8장 개표, 제9장 당선인과 재선거, 제10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1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58) 제2조 국민으로서 만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159) 제20조 추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추천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심문할 수 없다.

(2) 1963년 대통령선거법¹⁶⁰⁾

1963년 이전의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 대통령선거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법률 제247호로 공포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소위 발췌개헌안이 통과된 복잡한 정국 하에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1952년 7월 18일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미비점이 허다하였으나 개정함이 없이 시행되어 왔던 바 4·19이후 1960년 6월 15일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선출방식이 간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은 사실상 정지되어 왔고 새로 개정된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 개정된 헌법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도를 확립하고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명선거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¹⁶¹⁾

이 법은 총 12장, 본문 162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①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피선거권자는 국민으로서 선거일현재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의 자로 함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되며 당해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함 ③ 대통령후보자의 등록은 정당이 선거일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후보자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④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정당연설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⑤ 정당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도와 개표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도록 함 ⑥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막론하고 이에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⑦ 후보자는 선전문을 각 일간신문지에 5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고, 정당은 후보자와 정강·정책·선거강연 등의 선전문을 각 일간지에 10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⑧ 연설회는 개최시각전 48시간부터 24시간까지에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병원·진료소·도서관등 연설통금지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⑨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40일까지에 실시하고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일 40일전에 각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함 ⑩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전에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도록 함 ⑪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투표함을 혼합하여 행하되 교통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의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⑫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

160) [시행 1963. 2. 1.] [법률 제1262호, 1963. 2. 1., 제정]

16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54386&lsId=&efYd=1963020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하지 아니한 것 등 무효투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⑭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이 법의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피선거권에 국내거주요건 강화¹⁶²⁾),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규정 둠¹⁶³⁾),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과 재선거, 제11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2장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3) 1966년 대통령선거법¹⁶⁴⁾

국외체류중인 선거권자로서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구제하여 우편으로 투표하는 부재자투표에 관한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선거의 민주화를 기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1963년 대통령선거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1966년에 개정된 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인명부작성을 선거일 30일전까지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25일전까지 작성하도록 함 ②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에 기거하는 선거권자인 군인과 병원·수용소·교도소등에 장기기거하는 선거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국외체류중인 선거권자로부터 부재자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 ③ 선거연락소 책임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신청기한은 선거인명부 확정일전 10일까지로 함 ④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7일에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신고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되도록 함 ⑤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는 투표를 우편으로 하게 함 ⑥ 우편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우편투표는 선거일 하오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62) 제9조 (피선거권)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이상의 자는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163) 제25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64) [시행 1966. 12. 14.] [법률 제1848호, 1966. 12. 14., 일부개정]

(4) 1969년 대통령선거법¹⁶⁵⁾

1969년 법개정은 주로 대통령선거절차 및 관리에 관련된 일부 규정들의 변경을 내용으로 했다. 즉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일부선거운동제한규정을 완화함과 동시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보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① 이 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② 대통령선거시 선거인명부작성을 선거일 30일전까지 작성하도록 함 ③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는 당해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함 ④ 선거인명부확정은 선거일전 7일을 선거일전 14일로 함 ⑤ 군의 연설회는 읍·면수를 초과할 수 없게 함 ⑥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했을 때에는 그 인쇄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체없이 공고하게 함 ⑦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못하게 함 ⑧ 개표참관인을 정당마다 4인에서 8인으로 함 ⑨ 무효표의 범위를 축소함(무효표로 보지 않는 6가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함¹⁶⁶⁾) ⑩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것 등이다.

(5) 1970년 대통령선거법¹⁶⁷⁾

1970년의 법개정은 공정한 선거 보장이라는 목적을 두고, 선거관리와 관련한 규정들을 개정한 내용들이었다. 이 법은 유신개헌으로 대통령 선출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간선제로 바뀐에 따라 1972년 12월 6일 폐지되었다.

1970년 개정은 공정한 선거를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간과 그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거에 이용될 요소를 규제하여 선거운동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① 종래에는 선거법상의 인구의 기준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었던 것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② 선거인명부를 기본선

165) [시행 1969. 1. 23.] [법률 제2087호, 1969. 1. 23., 일부개정]

166) 제109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 1. 23.>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내공이 메어도 당해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후보자란에만 두개이상 기표되거나 중첩기표된 것
3. 기표난외에 기표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의 구분난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6. 인육으로 오손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가가 명확한 것

167) [시행 1970. 12. 22.] [법률 제2240호, 1970. 12. 22., 일부개정]

거인명부·보충선거인명부·수시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로 나누어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를 작성·사용하고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수시선거인명부를 사용하도록 한 바, 기본선거인명부는 종래의 예비선거인명부에 대체된 것으로 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작성하게 하고, 다시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를 보충하는 보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명부의 정확을 기하려는 것임 ③ 정부가 주식의 과반수를 가지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및 리·통·반의 장은 의원의 임기만료일 3월전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選舉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舉公告日 1월전)에 그 직을 사임하지 않고는 선거사무원·연설원·투표소참관인등이 될 수 없게 함 ④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로부터 40일까지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선거일전 35일에 공고하도록 한 바, 이와 같이 선거일과 선거일공고일 사이를 짧게 잡은 것은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하려는 것이었다.

(6) 다시, 1980년 대통령선거법¹⁶⁸⁾

10.26 이후 새로이 등장한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통령선출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선거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부터는 선거법 규정구조가 장·절·조로 다시 편제되었고, 총5장, 본문 204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총칙(대통령 선거방법과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규정을 둠¹⁶⁹⁾), 제2장 대통령선거인선거(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2절 선거구역과 대통령선거인정수, 제3절 선거인명부, 제4절 대통령선거인후보자, 제5절 선거운동, 제6절 선거일과 투표, 제7절 개표, 제8절 대통령선거인당선인, 제9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장 대통령선거(제1절 대통령선거인, 제2절 대통령후보자, 제3절 선거운동, 제4절 선거의 관리, 제5절 투표, 제6절 개표와 집계, 제7절 대통령당선인, 제8절 재선거), 제4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5장 벌칙의 구성이다.

새로운 제정 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함 ② 대통령선거인의 피선거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3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그 선거구 안에서 6월이상 계속 거주하

168) [시행 1980. 12. 31.] [법률 제3331호, 1980. 12. 31., 제정]

169) 제2조 (대통령의 선거)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라 함은 대통령선거인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2. “대통령선거인”이라 함은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하여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말한다.
3.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는 자로 하고, 대통령선거인이 정당에 소속될 수 있게 함으로써 덕망있는 지역대표가 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함 ③ 대통령선거인선거구를 구·시·읍·면단위로 하여 총 1천905구를 설정하고, 대통령선거인정수는 인구 2만까지를 기준으로 1선거구당 2인으로 하되, 인구가 2만을 초과할 때에는 5인에 달할 때까지 1만까지마다 1인을 추가 선출하여 총 5천278인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골고루 선출될 수 있도록 함 ④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록시에는 그 선거구안의 선거권자 200인이상 3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도록 함 ⑤ 대통령선거인선거는 대통령선거일전 20일로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실시하도록 함 ⑥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전벽보·선거공보 및 합동연설회의 방법으로 하고 그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선거공영제를 마련함 ⑦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단합대회·향민회·야유회등의 집회를 할 수 없고, 대통령후보자·대통령선거인후보자 또는 그 가족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함 ⑧ 대통령선거와 대통령선거인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2인씩 선정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을 기하도록 함 ⑨ 대통령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선거인 300인이상 5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하도록 함 ⑩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90일로부터 30일까지(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⑪ 대통령후보자나 그 선거사무장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선거기간중 현행범인이 아닌 한 선거법위반이나 포행·체포·감금죄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⑫ 대통령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신문광고·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연설원의 방송시설이용 등 매스컴을 통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비용의 절감과 국력낭비방지등 간선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⑬ 대통령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외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선거일후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¹⁷⁰⁾.

1980년 대통령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수를 완화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인후보자의 등록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대통령선거인후보자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수 "200인이상 300인이하"를 "100인이상 150인이하"로, 인구 5천미만 선거구에서의 "100인이상 150인이하"를 "50인이상 70인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개정¹⁷¹⁾을 1981년에 했다. 하지만 다시 1987년 헌법개정에 따라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선거인단에 기한 간선제 선출방식을 규정한 이 대통령선거법은 1987년에 폐지되었다.

17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05&lsId=&efYd=198012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71) [시행 1981. 1. 24.] [법률 제3355호, 1981. 1. 24., 일부개정]

(7) 직선제 도입 1987년 대통령선거법¹⁷²⁾

1987년 10월 29일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법을 제정하여 공정한 선거의 관리와 그 절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제정이유를 밝힌 것이 1987년 대통령선거법이다.

이 법은 총 13장, 본문 172개 조항 및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성,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과 재선거, 제11장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제12장 벌칙, 제13장 보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신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대통령 선거권자를 20세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피선거권자를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선거일 현재 4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②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하고 개표구는 구·시·군으로 하며,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함 ③ 대통령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일공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투표구별로 작성하도록 함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사본교부제도를 채택함 ⑤ 장기 여행자나 영내 또는 함정에 기거하는 군인등은 부재자신고를 하여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⑥ 선거입명부작성후에도 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소이전신고를 하여 전입한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⑦ 정당이 추천하는 대통령후보자 1인은 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고 5천만원을 기탁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중 5이상에서 선거권자 5천인이상 7천인이하가 기명·날인한 추천서를 첨부하고 1억원을 기탁하도록 함 ⑧ 선거운동은 대통령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함 ⑨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서울특별시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개표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에는 100인, 선거연락소에는 40인, 투표구에는 3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⑩ 후보자와 연설원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은 각각 5회이내, 대담 및 토논은 각각 3회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함 ⑪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연설회는 시·도별 3회이내, 연설원연설회는 구·시의 동과 군의 읍·면마다 1회씩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⑫ 선거비용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⑬ 후보자의 기호 및 인쇄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먼저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추천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172) [시행 1987. 11. 7.] [법률 제3937호, 1987. 11. 7., 폐지제정]

정당 명칭의 가, 나, 다순으로 하며 그 다음에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순으로 정하도록 함 ⑭ 투표통지표를 교부할 때와 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지명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함 ⑮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4인, 개표참관인은 8인씩 선정하도록 함 ⑯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고,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자로 함 ⑰ 선거와 당선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8) 1992년 대통령선거법¹⁷³⁾

제6공화국 직선제 대통령의 선출은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의 의미를 중시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제도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은 더욱 컸다. 1987년 선거법을 다시 개정한 1992년 선거법의 개정방향은 선거의 자유 보장 보다는 선거공영제 실현에 더 주목한 개정이었다고 할 만 했다. 그리고 이 개정법은 개별법들의 통합으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된 1994년 폐지되었다.

개정이유도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후보자·정당 및 국민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선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은 정견·정책의 대결이 되도록 그 방법을 개선하고 부재자투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그밖에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 가운데 지금까지의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¹⁷⁴⁾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되는 선거법의 벌금형양요건을 현행 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② 선거인명부작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부작성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외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각 후보자측에서 1인씩 지명한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함 ③ 구·시·읍·면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시·읍·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함 ④ 후보자의 기탁금을 정당추천후보자는 5천만원, 무소속후보자는 1억원으로 하던 것을 균등하게 3억원으로 하고, 선거인명부 사본교부비용과 불법선전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함 ⑤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⑥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의 장이 선거운

173) [시행 1992. 11. 11.] [법률 제4495호, 1992. 11. 11., 일부개정]

17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08&lsId=&efYd=1992111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동원등이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임기만료일 100일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후 6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함 ⑦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가에서 부담하는 횡수를 텔레비전과 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1회, 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후보자연설 3회, 연설원연설 2회로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함 ⑧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시간을 40분이내에서 2시간이내로 연장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별로 각 5회이내에서 후보자의 경력·정견 또는 정당의 정강·정책등을 1분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함 ⑨ 연설회장에서는 녹음기·녹화기 사용행위,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행위, 표식판·어깨띠·수기를 착용·휴대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및 정지된 자동차위에서의 연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⑩ 연설회의 횡수를 후보자연설회는 시·도별 3회이내, 연설원연설회는 읍·면·동마다 1회이내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연설회와 연설원연설회를 합하여 개표구마다 5회이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한 2이상의 개표구의 연설회를 한 장소에서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함 ⑪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정견·정책집 1종과 소형인쇄물 4종(傳單型 1種과 冊子型 3種)을 각각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함 ⑫ 공무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의 임·직원, 통·리·반의 장과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시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선거기간중에는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 ⑮ 기부행위제한규정을 강화하여 기부행위제한의 주체와 객체를 확대하고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운동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입당원서와 교환한 금품제공, 연설회 참석조건의 금품제공, 관광편의의 제공, 화환·달력제공, 종교·사회단체등에의 금품제공등의 행위를 추가함 ⑯ 유급선거운동원제도를 자원봉사선거운동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관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보상만 하도록 함 ⑰ 선거일공고는 선거일전 30일에 하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전 28일에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30일에서 28일로 2일을 단축함 ⑱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책으로서 부재자신고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정당추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행한 후 이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우편발송하도록 하며, 부재자투표기간(10日)중 특별한 사유로 계속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부재자신고

인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기관·시설내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정당추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가 행하여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나 격·오지등에서 근무하는 군인등 부재자투표소에 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거소에서 기표하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송중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송용 외봉투의 봉합부분에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가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거소투표인이 서명 또는 사인을 날인하도록 함 ①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을 후보자부담에서 국고부담으로 변경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표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이를 보도할 수 없도록 함 ② 선거소송의 처리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180일이내로 단축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등을 범한 자중 금품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선거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선거범의 공소시효기간을 선거일 후 3월에서 6월로(犯人逃避時는 1年에서 3年으로) 연장함 ③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제1심은 6월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각각 전심선고후 3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여 1년이내에 재판이 종결되도록 함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선전물을 발견하였을 때에 중지·철거·수거·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3. 기타 통치기관별 개별 선거법

(1)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48년 제헌헌법 제97조는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어 1950년 12월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가 예정되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연기되었다. 이후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같은 해 5월 10일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1956년에는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서울특별시·도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¹⁷⁵⁾, 제2공화국 들어서 당시의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전면 중단됨으로써 지방의회는 해산되었고 지자체장은 다시 임명제로 바뀌었고, 이런 정국은 1987년 헌법이 시행된 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988년 지방의회의원법과 1990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입법될 때까지 위 선거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실행되었다.

175)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했다.

1)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¹⁷⁶⁾

1987년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한 논의가 입법화된 것이 1988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다. 총 제14장, 본문 181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벌칙, 제14장 보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지방의회의원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도록 함 ②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자는 20세이상인 자로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피선거권자는 25세이상인 자로서 선거일 현재 90일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③ 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되, 시·도의원의 경우는 700만원, 구·시·군의원의 경우는 2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조항은 오히려 부칙조항이었다. 즉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를 규정한 부칙 제2조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부터 구성하되, 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과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시·도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규정했었기 때문이다.

2) 1990년 지방의회의원선거법¹⁷⁷⁾

1990년 선거법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지방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불법타락선거를 방지하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두 종류이상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선거업무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일부 내용을 개정·보완하려는 취지¹⁷⁸⁾로 개정된 법률내용이었다.

총 제15장, 본문 195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성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176) [시행 1988. 5. 1.] [법률 제4005호, 1988. 4. 6., 제정]

177)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11호, 1990. 12. 31., 전부개정]

178)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44&lsId=&efYd=1990123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4장 벌칙, 제15장 보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①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②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25세이상인 자로 함 ③ 시·도의회의원정수는 구·시·군마다 3인으로 하고 하나의 구·시·군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로 되어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가 30만을 초과하는 지역은 매 20만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인구 7만미만의 지역은 2인으로 하되, 정수하한을 직할시는 23인, 제주도는 17인으로 함 ④ 구·시·군의회의원정수는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초과시는 매 2만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정수하한을 7인, 상한을 45인으로 함 ⑤ 시·도의회의원선거구는 구·시·군을 분할하여 1선거구 1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는 읍·면·동을 단위로 1선거구 1인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가 과다한 읍·면·동은 2인이상 선출이 가능하도록 함 ⑥ 시·도의회의원선거구역은 이 법으로, 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역과 선거구별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⑦ 후보자 추천은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함 ⑧ 기탁금의 귀속사유를 완화하여 그 사유를 종전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당해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의원정수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수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로 하였던 것을 후보자의 득표수와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로 함 ⑨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⑩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소형인쇄물, 현수막을 허용토록 함 ⑪ 호별방문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의식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역광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을 허용토록 함 ⑫ 총선거와 증원선거 및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18일에 공고하되 총선거는 대통령이, 보궐선거 및 증원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도록 함 ⑬ 선거사범의 벌금형을 2배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이상으로, 당선무효사유인 벌금형을 100만원이상으로 함 ⑭ 광역자치단체선거와 기초자치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한 것 등이다.

이 선거법에 따라 1991년 3월 26일과 6월 20일 2번에 걸쳐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는 1960년 이후 31년만에 부활된 지방선거였다. 다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한 날이 달랐다는 점이 특기할 만 했던 선거였다.

다만 1991년에 이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이 된 몇 조

문이 개정되었다.¹⁷⁹⁾ 농·수·축협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기탁금에 관한 규정 기존의 규정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관계조문을 보완하는 개정이었다. ①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함 ②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 신청시에 기탁하는 기탁금을 7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하향조정함 ③ 후보자등록신청시의 기탁금이 공영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1994년 이 법은 폐지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¹⁸⁰⁾

1990년 12월 31일의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선거를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로 탄생한 것이 1990년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이다. 이 법은 총15장, 본문 194개 조항과 부칙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에 관한 구역, 제4장 선거인명부, 제5장 후보자, 제6장 선거운동, 제7장 선거비용,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4장 벌칙, 제15장 보칙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일 현재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를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시·도지사후보자의 경우에는 35세, 구·시·군의 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30세이상인 자로 함 ③ 후보자추천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을 허용하되, 구·시·군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추천제를 배제함 ④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일정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득표수를 얻지 못할 때는 선거공영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함 ⑤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함 ⑥ 선거운동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전벽보·선거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현수막·방송연설회·경력방송 및 신문광고의 방법을 이용토록 하고,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선전벽보·선거

179) [시행 1991. 5. 23.] [법률 제4368호, 1991. 5. 23., 일부개정]

180) [시행 1990. 12. 31.] [법률 제4312호, 1990. 12. 31., 제정]

공보·합동연설회·소형인쇄물 및 현수막등의 방법을 이용하도록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지역내에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게 함 ⑧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각종 집회를 금지하되 정당 활동은 허용토록 함 ⑨ 다른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호별방문금지를 일부 현실화하여 관혼상제의식장소와 시장·백화점·상가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하도록 함 ⑩ 시·도지사선거의 무소속후보자와 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 및 현수막등에 특정정당에 소속하거나 특정정당의 지지·추천등에 관한 내용을 표기할 수 없게 함 ⑪ 선거일공고는 임기만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대통령이 공고하고, 보궐선거 및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토록 하도록 함 ⑫ 선거쟁송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쳐 관할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함 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정지사유인 벌금형을 50만원이상으로 하고 당선무효사유인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함 ⑭ 광역단체선거와 기초단체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것에 대비하여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규정을 정한 것 등이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하게 되면 한 해에 너무 많은 선거가 실시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1995년에서야 선거를 하게 되었다¹⁸¹⁾. 1995년 5월에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때문에 1990년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은 실제 선거에 적용되지 못한 채, 1995년의 동시지방선거는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적용된 선거였다.

(3)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대통령 선거는 국민에 의한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제4공화국 시기 유일하게 국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회의출석수당과 여비만 지급받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심의권, 헌법개정확정권, 대통령 선임권 및 일부 국회의원 선임권 등의 권한이 주어졌다. 헌법개정사항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181) 손재권, 앞의 책, 48면

률제정이 19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¹⁸²⁾이었다.

이 법은 총13장, 본문 137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관리, 제4장 선거구역과 대의원정수,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대의원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일과 투표, 제9장 개표, 제10장 당선인,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2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13장 벌칙 순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거권은 20세이상, 피선거권은 국민회의의 피선거권이 있는 30세이상의 국민으로 함 ②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각각 명시함 ③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관리하도록 함 ④ 선거구는 구, 시, 읍, 면을 단위로 하며 1선거구에서 1인을 선거하되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2만단위를 초과하는 만큼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하도록 함 ⑤ 동과 리에 투표구를 두도록 함 ⑥ 대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본선거인명부와 보충선거인명부를 병용하고 그밖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수시선거인명부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⑦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그 선거구역내의 선거권자 300인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⑧ 국회의원, 정당원, 공무원등이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 60일 전에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함 ⑨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도록 함 ⑩ 후보자는 내란, 외환, 방화, 살인등 형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등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함 ⑪ 합동연설회는 1회 개최하되 연설시간은 1인당 20분이내로 하며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 입후보의 취지와 유신과업에 관한 주견만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⑫ 선전벽보, 선거공보의 작성비용과 합동연설회의 개최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⑬ 총선거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전 60일로부터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실시하도록 함 ⑭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하며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1표로 하며 무기명으로 하도록 함 ⑮ 후보자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 4인을 선정하여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⑯ 개표사무는 개표관리위원회가 행하며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⑰ 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며 개표관리위원회는 참관인6인을 선정하여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함 ⑱ 투표의 무효와 유효의 식별방법을 예시함 ⑲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당선인으로 결정되며 후보자가 대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 ⑳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관하여 규정함 ㉑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안에 관할선거관리

182) [시행 1972. 11. 25.] [법률 제2352호, 1972. 11. 25., 제정]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 ② 당선외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안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함 ③ 선거에 관한 모든 벌칙을 규정한 것 등이다.

1972년 선거법은 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강하고 새로 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맞추어 대의원선거시에도 수시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도록 하며 기타 종전의 대의원선거시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73년 개정을 했다¹⁸³⁾. 주요 내용은, ① 대의원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추가 -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자, 선거일전 3년간에 일정한 종목의 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세한 실적이 없는 자, 선거일전 3년간에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와 선거일전 최후로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와 그 이후에 실시한 선거에서 낙선된 자 ② 투표구는 대의원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하도록 함 ③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같이 후보자등록마감일후 선거전일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변동 등의 사유로 후보자수가 대의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투표당선이 되도록 한 것 등이다.

이후 1978년에 다시한번 더 개정¹⁸⁴⁾을 했는데, 이 개정은 대의원선거구 및 정수를 현재 1,630개 선거구 2,359명에서 1,665개 선거구 2,58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었다. 1980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폐지되었지만¹⁸⁵⁾, 정작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2017년에 와서야 폐지되었다.¹⁸⁶⁾

(4)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¹⁸⁷⁾

1960년의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 구성 및 법관인사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새로이 도입했다. 1960년 헌법 제78조 제1항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써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이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는 1960년 7·29 총선에 따른 입법부 개편, 같은 해 8월 의원내각제 원리에 따른 국무원 창설에 이어 3권 중 마지막으로 남은 사법부 개조를 목표로 하는 “제2공화국 권력구조 개편의 최종단계”, “4월 혁명 완수의 최후의 피니쉬”라는 평가

183) [시행 1973. 2. 7.] [법률 제2500호, 1973. 2. 7., 일부개정]

184) [시행 1978. 2. 15.] [법률 제3013호, 1977. 12. 19., 일부개정]

185) 그러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은 제5공화국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의 선거인으로 참여하였고,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원의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장민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호 (2018), 345면].

186)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328호, 2017. 12. 26., 폐지]

187) [시행 1961. 4. 26.] [법률 제604호, 1961. 4. 26., 제정]

를 받았었다¹⁸⁸⁾. 동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1961년 4월 26일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이 제정되었고, 5월 7일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인 후보자등록까지 마무리되어 5월 17일과 25일의 예비선거와 본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5월 16일의 군사쿠데타로 실제 이 선거법은 실행되지 못했다.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폐지한 제5차 개정헌법의 시행(1963.12.17.)에 따라 이 법은 상위법과의 저촉규정이 되어 실효되었고, 형식 자체는 2007년에서야 폐지되었다.

이 선거법의 제정이유는 “과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법관을 임명하던 것을 사법권독립의 정신을 존중하여 대법원장, 대법관은 선거인단에서 선거하고 기타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인사권을 통한 행정부의 사법부 간섭을 배제한 헌법 제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선거에 관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으로 설명된다¹⁸⁹⁾. 총23개 조문으로 구성된 바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인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법관자격이 있는 자를 선거인으로 하는 예비선거에서 선출하도록 함 ② 선거인단의 정수는 100인으로 하되, 예비선거의 공고일 현재 법관으로 재직중에 있는 자중에서 50인, 기타의 자중에서 50인으로 하도록 함 ③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후보자는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등 법률에서 정한 자들로 후보자추천단을 구성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선출하여 추천하도록 함 ④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후보자는 10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직에 있었던 자로 함 ⑤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중 5인은 선거당시 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중에서, 나머지는 기타의 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⑥ 선거사무는 법원행정처장이 행하도록 함 ⑦ 선거는 선거인단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하에 대법원장은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대법관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함 ⑧ 선거운동은 일체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사상의 처벌을 과하도록 함 ⑨ 선거인의 선거를 위한 제비용은 일체 국고부담으로 함 ⑩ 이 법에 의한 선거소송에는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토록 한 것 등이다.

II. 통합 선거법 시대의 변천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88) 문준영,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도입과 변호사회의 동향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62호(2020), 48-49면

18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1&lsId=&efYd=1961042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994년 새로운 선거제도의 일대개혁적 조치라는 명분 아래 개별적으로 존재해 오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의 4개 선거법을 통합한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이 통합선거법은 2005년 법률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고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¹⁹⁰⁾

1994년 이 법의 제정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각종 선거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선거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하고 있다.¹⁹¹⁾

이 법은 총17장, 본문 277개 조항과 부칙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관한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제17장 보칙 순으로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①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함 ②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하도록 하되, 선거일이 공휴일이거나 선거일전일 또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각각 그 다음주의 목요일로 하도록 함 ③ 공무원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및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함 ④ 선거운동 공영제를 확대하여 선거벽보 비용, 합동연설회 개최비용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연설회원은 선거운동기간중에 각각 자동차와 확장장치를 사용하여 도로변,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횡수에 제한없이 연설을 하거나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함 ⑥ 사단·재단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모든 단체는 선거기간중 그

190) [시행 1994. 3. 16.] [법률 제4739호, 1994. 3. 16., 제정]

19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350&lsId=&efYd=19940316&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⑦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 또는 입당권유를 위한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관혼상제의 장소나 시장·대합실등에는 방문할 수 있도록 함 ⑧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⑨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그 평균제한비용을 대략 대통령선거 193억원, 시·도지사선거 7억2천만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천700만원, 구·시·군의 장선거 5천6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천8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천100만원 정도가 되도록 함 ⑩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그 수입·지출명세서를 3개월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 공개하도록 함 ⑪ 전국구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⑫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죄를 범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함 ⑬ 유권자매수죄나 이해유도죄 또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⑭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에 만료되도록 한 것 등이다.

(2) 1995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4번의 개정

1995년 4월의 법개정¹⁹²⁾은 광역자치단체의회에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그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일부 관련제도를 개선·정비하는 내용이었다.

1995년 5월의 법개정¹⁹³⁾은 다가오는 4대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 과도한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의 행정구역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선거구역을 조정하는 개정이었다.¹⁹⁴⁾ 주요내용은 ① 동시선거에 있어

192) [시행 1995. 4. 1.] [법률 제4947호, 1995. 4. 1., 일부개정]

193) [시행 1995. 5. 10.] [법률 제4949호, 1995. 5. 10., 일부개정]

194)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353&lsId=&efYd=1995051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

서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에의 가인은 정당대리인이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참여·입회하는 것으로 같음하도록 함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 투표참관인의 정수를 12인이내로 한정하고, 부재자 개표참관인의 정수를 축소조정함 ③ 외국인·노동단체·학교법인등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은 몰수하도록 함 ④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자치구의 분구 또는 인구의 변동에 따라 선거구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 시·도의회의원선거구의 구역을 조정함 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으로 선출되기 위하여서는 선거일 현재 90일이상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이번 선거에 한하여 선거기간개시일 현재 당해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출될 수 있도록 함 ⑥ 동시선거에 있어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1개 개표소의 개표사무를 관리하도록 한 것 등이다.

1995년 8월의 법개정¹⁹⁵⁾은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하는 개정이었다.

1995년 12월의 법개정¹⁹⁶⁾은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며,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하려는 개정이었다.

(3) 1996년~2000년 이전까지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996년 법개정¹⁹⁷⁾은,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결정취지에 맞게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② 선거구밖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를 기부행위금지위반으로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둠 ③ 1996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

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95) [시행 1995. 8. 4.] [법률 제4957호, 1995. 8. 4., 일부개정]

196)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27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7) [시행 1996. 2. 6.] [법률 제5149호, 1996. 2. 6., 일부개정]

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 임원 등이 조정된 선거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직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개정이었다.

1997년엔 2번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1월의 법개정¹⁹⁸⁾은,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배로 늘려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각종 공직선거시의 유급사무원의 수를 2배로 증원하는 등 선거공영제를 일부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¹⁹⁹⁾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 ② 국회의원선거에만 허용되었던 공직자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모든 선거에 허용하도록 함 ③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현행의 2배로 증원 ④ 유급선거사무원외의 선거운동원을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없도록 함 ⑤ 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함 ⑥ 선전벽보를 읍·면의 경우 현행의 2배로 늘리고,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수량을 현행의 2배로 늘려 선거권자 수의 2배수에 상당하는 수로 함 ⑦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신문광고 150회중 50회의 비용에 한하여 기탁금을 반환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 ⑧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광고의 횟수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0회이내로 늘리고, 방송광고비용을 기탁금을 반환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함 ⑨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에 있어서 대통령선거의 경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7회이내로 늘리도록 함 ⑩ 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경력방송시간을 2분이내로 늘리도록 함 ⑪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⑫ 투·개표참관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과 비용의 금액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실비 금액으로 조정 ⑬ 법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함 ⑭ 허위사실을 기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 등이었다.

1997년 11월의 법개정²⁰⁰⁾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혁·선거공영제 확대·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공정성 제고·기타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제도적 미

198) [시행 1997. 1. 13.] [법률 제5262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2487&lsId=&efYd=1997011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200) [시행 1997. 11. 14.] [법률 제5412호, 1997. 11. 14., 일부개정]

비점을 보완하여 당시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각 입법취지별로 설명되는데, 먼저 ‘고비용 정치구조개혁’을 위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대통령선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과 전단형 각 1종으로 축소,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폐지, 대통령선거시 표찰·수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에서 선거관계자로 제한함 ② 대통령선거시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회는 옥내집회로 제한하고, 그 횟수도 시·도마다 2회이내와 구·시·군마다 1회로 축소함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여 당가나 정강·정책 또는 후보자의 활동상황 등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함 ④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의 이용을 금지함 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을 착용하거나 기타 표지물을 휴대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 중 자필서신과 자동송신장치의 전화설치를 금지함 ⑥ 선거구내의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축의·부의금품도 일정 금액 이내로 제한하며,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함 ⑦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임기만료시 50회 이내, 대통령궐위에 따른 선거나 재선거시 20회 이내로 축소하고, 대통령선거시 소속당원에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의 종류를 전단형은 폐지하고 책자형도 1종으로 축소했던 내용이다. 다음으로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대통령선거시 현수막의 수량을 현행 읍·면·동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 이내에서 구·시·군마다 3매 이내로 축소하되,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자의 현수막 제작·게시비용은 국고보전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시 신문광고 횟수를 70회이내로 축소하되,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자에 대하여 70회 모두 국고보전하도록 하며, 대통령선거시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득표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을 선거후 국고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선거관련 행위금지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부터로 통일하고, 행위금지기간 중 허용되는 행위를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당의 지구당이상의 공개행사에의 의례적인 방문이나 법령·조례에 근거한 직무수행행위, 재해의 복구행위, 직업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등으로 명시함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 등의 지급은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도록 함 ③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을 후보자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까지로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권을 명시한 내용이다.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와 그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은, ① 선거일전 120일(이번 大統領選舉는 選舉期間開始日前 10日)까지 방송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 및 정기간행물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 청

구권을 신설함 ②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체도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함 ③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의 방송광고 횟수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별 30회이내로 확대하고, 경력방송의 횟수도 KBS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8회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연설 횟수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각 11회이내로 확대함 ④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도 대담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대담기간을 연장함 ⑤ 공영방송사는 공동으로 대담·토론회를 3회이상 개최·보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선거일전 60일(이번 大統領選舉는 選舉期間開始日前 10日)까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개선사항’과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① 선거법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하고, 부채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거하는 자에 대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퇴기한을 선거일전 60일까지로 완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③ 대통령선거 기탁금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등을 위한 신문광고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자금모금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④ 선전벽보 등 자동차부착 선전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등에 관한 비방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제한하되, 의의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⑤ 선거용자동차나 확장장치 등을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에도 시중의 통상가액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도 2번²⁰¹⁾의 개정이 있었다. 2월의 법개정²⁰²⁾은, 그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일이 그 임기만료일전 6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되어 있어서, 선거후 50여일이 지나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가 개시되어 그동안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변경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행정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했던 개정이었다.

201) 개정일시상으로는 1998년 4월 1일의 개정이 있었지만, 이는 은행법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에 불과했다.
202) [시행 1998. 2. 6.] [법률 제5508호, 1998. 2. 6., 일부개정]

1998년 4월의 법개정²⁰³⁾은, 1998년 6월 4일 실시예정이었던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유급선거사무원수를 축소하고, 선출직공직자의 축의·부금품 제공과 주례행위를 제한하는 등 고비용정치구조를 개혁하고,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 인쇄물을 폐지하는 등 비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 사퇴하여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하되,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시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의원정수 축소조정을 위한 개정인데, ① 지역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의회의원정수는 당해 자치구·시·군(이하 "基礎自治團體"라 한다)별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2인으로 축소하고, 동 정수의 하한선을 광역시와 도의 경우를 동일하게 14인으로 함 ②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의원선출시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인미만의 동은 인접하여 위치한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했고, 둘째, 고비용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유급선거사무원의 수를 국회의원 및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의 경우 읍·면·동 수의 3배수이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선거인 경우 당해 시·군·구의 수이내로 축소함 ② 모든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폐지하고, 시·도지사선거의 방송광고를 폐지함 ③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정당·후보자 등의 연설회를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1회이내로 축소함 ④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지구당대표자, 후보자 등의 주례행위와 친족외의 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제공을 금지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범위의 경조품 제공은 허용했다. 셋째,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한 개정내용으로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신문광고비용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여 주도록 했으며, 넷째, 방송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방송연설의 횟수를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TV·라디오별 각 2회이내로 확대함 ②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하고 보도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섯째, 선거운동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정내용으로는, ①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행위에 업무에 관한 활동보고를 추가함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중 직무수행에 관한 홍보물외에는 그 발행을 분기별로 1종 1회로 제한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의 발행·배포와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의 참석을 금지함 ③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신문·방송·잡지의 광고출연을 금지함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광고물에 대한 광고중지를

203) [시행 1998. 4. 30.] [법률 제5537호, 1998. 4. 30., 일부개정]

요청할 수 있고, 광고중지를 요청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개정내용은, ①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거주요건을 선거일 전 60일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일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봄 ②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완화하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일 이내에 사퇴하여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함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중에 사퇴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 ④ 노동조합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2000년~2004년 이전까지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0년 법개정²⁰⁴⁾은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등 정치개혁에 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총 17장 278개조로 구성된 동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① 신문 기타 간행물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후까지 운영함 ②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함 ③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후보자정보공개대상에 현행 재산사항 외에도 병역사항과 최근 3년간 납세실적을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④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2천만원으로, 시·군·구의 장 선거의 기탁금은 1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⑥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9만미만인 행정구역은 선거구를 통합하고, 인구 35만이상인 행정구역은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함으로써 26개의 국회의원선거구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2001년에도 2번의 개정이 있었다. 7월의 법개정²⁰⁵⁾은,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

204) [시행 2000. 2. 16.] [법률 제6265호, 2000. 2. 16., 일부개정]

205) [시행 2001. 7. 24.] [법률 제6497호, 2001. 7. 24., 일부개정]

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의 경우 종전과 달리 그 선거일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1년 10월의 법개정²⁰⁶⁾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국회의원후보자의 기탁금 및 제57조 기탁금의 반환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1년 7월 19일 위헌결정에 따라 10월 2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기탁금을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함 ② 기탁금반환요건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로 하향조정함 것이다.

2002년 법개정²⁰⁷⁾은, 1인 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의원선거에 1인 2표제를 도입하고,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종전과 달리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부터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하여 1인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함 ④ 지방의회의원 선거기간을 17일로 연장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기간과 동일하게 함 ⑤ 시·도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정당법에 따라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되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의 수리거부사유로 규정함과 동시에 후보자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함 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⑦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금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⑧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금반환요건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로 정함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206) [시행 2001. 10. 8.] [법률 제6518호, 2001. 10. 8., 일부개정]

207) [시행 2002. 3. 7.] [법률 제6663호, 2002. 3. 7., 일부개정]

일후 보전하여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현수막제작비용·전화홍보비용 및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함 ⑩ 시·도의원선거에서 지역구후보자와 비례대표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한 것이다.

2003년 법개정²⁰⁸⁾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로 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조정하려는 것이었다.

2004년 법개정²⁰⁹⁾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러지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등에 의한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신문·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을 확대하며, 고비용 선거구조를 혁신하고 선거비용 지출을 투명화 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를 선진화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언론조사의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②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도록 함 ③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죄 등을 범한 자는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 ④ 국회의 의원정수를 종전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하되 그중 지역구국회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하고, 각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함 ⑤ 후보자등록시 첨부하는 서류중 납세실적 증명서의 경우 5년간 후보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하고 체납실적을 추가함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시에 후보자의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받아 투표안내문 발송시 그 자료를 유권자에게 함께 발송하도록 함 ⑦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명함형인쇄물의 직접 제공, 이메일 발송,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⑧ 정

208) [시행 2003. 10. 30.] [법률 제6988호, 2003. 10. 30., 일부개정]

209) [시행 2004. 3. 12.]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⑨ 합동연설회와 정당·후보자 등이 개최하던 연설회를 폐지하도록 함 ⑩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에 위법한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중인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정보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전송을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스팸메일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도록 함 ⑪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 ⑫ 1회 2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 지출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수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시 관계인에게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도록 함 ⑮ 경미한 금품수수등에 있어서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액의 50배의 부과 전환하도록 함 ⑯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⑰ 종전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 ⑱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궤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2. 공직선거법

2005년 8월의 개정에서는 우선, 법률의 제명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이 제명은 현행 2023년 법률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으며, 2005년 이후로 총 70번의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1) 2005년 개정법²¹⁰⁾

이 개정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210)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이었다고 설명되어 있다.²¹¹⁾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권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함 ②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함 ③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은 삭제하도록 함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 ⑤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원에 임기만료일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다.

(2) 2006년 법개정

2006년에도 2번의 개정이 있었다. 먼저 3월의 법개정²¹²⁾은 관계 법률의 제·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되고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후보자 등록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고,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당시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었다.

다음 10월의 법개정²¹³⁾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거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 여성후보자가 추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여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에 실질적인 생활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21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0230&lsId=&efYd=200508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212) [시행 2006. 3. 2.] [법률 제7850호, 2006. 3. 2., 일부개정]

213) [시행 2006. 10. 4.] [법률 제8053호, 2006. 10. 4., 일부개정]

(3) 2007년 법개정²¹⁴⁾

이 법개정은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책공약 또는 선거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자치구·시·군의 장선거까지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선거관리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다.²¹⁵⁾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공약서의 작성 및 배부 내용으로 ① 선거공약서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 등과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사항은 2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도록 함 ② 선거공약서의 규격은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기준일 현재 예상부재자 신고인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하도록 함 ③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되,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함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관해서 지역방송시설의 범위에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 포함하도록 했으며, 셋째, 시·군·자치구의 장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에 관해서는, 언론기관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책공약집의 발간 및 배부 내용으로는 ①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②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

214) [시행 2007. 1. 3.] [법률 제8232호, 2007. 1. 3., 일부개정]

215)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76689&lsId=&efYd=2007010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

락소와 소속 정당추천후보자 등이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③ 정당이 정책공약집을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의 당사 등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판매 전까지 판매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도록 함 ④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도록 했다. 다섯째, 특정직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4) 2008년 법개정²¹⁶⁾

이 개정은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개선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유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권행사 보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선거기사심의대상 확대: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 이외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③ 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④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⑤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⑥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⑦ 당내경선 운동방법의 확대: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중앙선

216)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9호, 2008. 2. 29., 일부개정]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⑧ 당내경선비용의 국고부담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⑨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의 제시: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함 ⑩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함 ⑪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 및 발송: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함 ⑫ 선거공약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하며,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 등 외에 후보자의 가족과 연설회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⑬ 어깨띠를 착용하는 선거운동원의 수: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시·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5인 이내로 정함 ⑭ 방송연설의 중계방송: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함 ⑮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

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 ⑩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함 ⑪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하고,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봄 ⑫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함 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방법의 변경: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3억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함 ⑭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함 ⑮ 정책공약집의 판매방법: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함 ⑯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 보호 등: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며,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

법률을 포함함)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 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정: 인구등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총 279개조문으로 늘어남)

(5) 2009년 법개정²¹⁷⁾

이번 개정이유는 선거인명부 등재, 부재자 신고와 지방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는 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 사건 등)에 따라 재외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 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를 신고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함 ②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25세 이상의 재외국민에게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부여함 ③ 재외선거의 도입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국외부재자로 신고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둘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셋째 재외국민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것으로,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선

217) [시행 2009. 2. 12.] [법률 제9466호, 2009. 2. 12., 일부개정]

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함 ③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함 ④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은 각각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으로 함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에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⑥ 작성된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하여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같이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절차를 두도록 함 ⑦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기간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은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로 각각 단축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하도록 함 ⑧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고,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을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함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도록 함, 넷째, 재외국민 대상의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는, ① 재외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의한 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방법,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되,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②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다섯째,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② 재외투표소는 공관에 설치하되,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과 회송용 봉투를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모두 없는 재외국민에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하도록 함 ④ 재외투표소의 투표절차는 국내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절차와 같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

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식으로 함 ⑤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 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 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 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재외투표를 외교통상부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록 함, 여섯째는 국외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이 지나면 완성되도록 한 것이었다.

(6) 2010년 법개정

2010년에는 2번의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먼저 1월의 법개정²¹⁸⁾은, 당시 공직 선거법이 선거관련 부정의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정치·선거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거 운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유권자의 후보자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는 한편, 투표비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등 선진화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법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② 시·도 지역구시·도의원의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③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④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⑤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와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 ⑥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

218) [시행 2010. 1. 25.]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⑧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⑨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 ⑪ 방송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⑫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 ⑬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 ⑭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 ⑮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 ⑯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함 ⑰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 ⑱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뒤에 있었던 3월의 법개정²¹⁹⁾은,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을 반영하여,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며, 그 밖에 일부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되,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② 별표 2에 따른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별표 2의 개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한 것이었다.

(7) 2011년 법개정

2011년에는 7월, 9월, 11월, 연이은 3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먼저 7월의 법개정²²⁰⁾은, 선거권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개정과 재외선거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관계자와 신분보유기간이 짧은 연설회 등은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②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이 끝나기 전에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변경된 후보자등록기간에 맞추어 선거벽보 제출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함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도록

219) [시행 2010. 3. 12.]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20) [시행 2011. 7. 28.] [법률 제10981호, 2011. 7. 28., 일부개정]

함 ④ 영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공관 등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의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이 겹치거나 인접한 경우에는 하나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만 설치하도록 함 ⑤ 총영사를 두는 공관은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⑥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경우 가장 나중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도록 함 ⑦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관에서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도록 함 ⑧ 재외선거의 투표도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9월의 법개정²²¹⁾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때 불법적 복수국적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투표를 오전 8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투표참여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이유를 기반으로 한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여권 사본과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되 그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함 ② 재외선거의 투표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함 ③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거범죄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한 것이었다.

11월의 법개정²²²⁾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영주권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한편, 영주권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221) [시행 2011. 9. 30.] [법률 제11070호, 2011. 9. 30., 일부개정]

222) [시행 2011. 11. 7.] [법률 제11071호, 2011. 11. 7., 일부개정]

(8) 2012년 법개정

2012년에도 3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1월의 법개정²²³⁾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해당조항을 개정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보완,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원활한 재외선거 관리 도모, 금품선거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그 밖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거사무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개선하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 ②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선거일 전 7일”에서 “선거일 전 9일”로 2일 앞당기고, 이와 연계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제출시기도 앞당김으로써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곧바로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선거공보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매세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함 ③ 대통령선거의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인 수를 상향 조정함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향토예비군 간부를 소대장급 이상에서 중대장급 이상으로 하고,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송할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함 ⑥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선거공보에 추천 후보자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선거공약서의 공약을 게재하는 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함 ⑦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답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때에도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 사용금지시간을 현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1시간 축소함 ⑧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⑨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금지규정에 첩부·살포·게시행위도 포함되도록 함 ⑩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후에 국회교섭단체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을 정원으로 보도록 하고, 재외투표관리를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재외선거경비의 출납절차를 재외공관의 관서운영경비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함 ⑪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⑫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금전을 제공받은 경우 금전을 제공받은 사유에 관계없이 모두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223)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207호, 2012. 1. 17., 일부개정]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⑬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월의 법개정²²⁴⁾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선상부재자투표제도 도입,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 신설로 투표편의의 제고,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인구수,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획정하여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개정이유로 설명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확대 등의 내용으로 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② 후보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③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대가를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선상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했는데, ①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원양어업·외항여객운송사업·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함 ②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선장이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④ 선상투표기간은 선장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도록 함 ⑤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

224) [시행 2012. 2. 29.] [법률 제11374호, 2012. 2. 2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도록 함 ⑥ 선상투표와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도록 했다. 셋째,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등의 내용으로는,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②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하며, 선거인은 누구든지(거소투표대상자, 기관·시설거주자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은 제외한다)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넷째,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에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도록 하고, 여권의 발급·재발급 제한기간 또는 반납된 여권의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함 ②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함 ③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재외공관에 출석한 선거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여론조사제도 개선을 위해,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등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 ②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③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함 ④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하는 요소를 같이 공표·보도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섯째,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현행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했고, 일곱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별표 1)했다.

10월의 법개정²²⁵⁾은,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방법과 관련하여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및 전자우편을 통한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재외선거인 등의 등록신청편의를 제고하고,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부재자투표자의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재자투표의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며,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당 외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도 1개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9) 2013년 법개정

2013년에는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먼저 8월의 법개정²²⁶⁾은 ①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②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③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선거범죄에 대하여 질문·조사하는 경우 질문·조사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며,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도록 한 개정이었다.

225) [시행 2012. 10. 2.] [법률 제11485호, 2012. 10. 2., 일부개정]

226) [시행 2013. 8. 13.] [법률 제12111호, 2013. 8. 13., 일부개정]

12월의 법개정²²⁷⁾은, 국회 회의 방해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에서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10) 2014년 법개정

2014년에는 3번의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 개정인 1월의 법개정²²⁸⁾은,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투표편의 제고, 사전투표 절차 개선,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거소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역구국회의 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 ②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과 확정일을 현행보다 각각 3일씩 앞당겨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선거일 전 10일까지 조기에 발송하도록 함 ③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출력한 선거인명부는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봉합·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할 수 없도록 함 ④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설치하는 선거대책기구의 선거운동을 허용함 ⑤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선거일 전 10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함 ⑥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거소투표용지와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발송하도록 함 ⑦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을 사전투표소로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두어 투표를 관리하도록 함 ⑧ 거소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은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고, 선거인에게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함 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하고,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전투표함을 인계하도록 함 ⑪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사전투표함을 직접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함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

227)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49호, 2013. 12. 30., 일부개정]

228) [시행 2014. 1. 17.] [법률 제12267호, 2014. 1. 17., 일부개정]

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2월의 법개정²²⁹⁾은,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금권선거 관련 조항 개정,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 제고,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그 밖에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함 ③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④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⑦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⑧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

229) [시행 2014. 2. 13.] [법률 제12393호, 2014. 2. 13., 일부개정]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⑨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투표소 등 장소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 등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⑩ 사전투표의 투표종료 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⑪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⑫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⑬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함 ⑭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함(별표 2) ⑮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정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표를 조정(별표 3)한 것이다.

5월의 법개정²³⁰⁾은, 당시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칭이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이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자 등에 대하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11) 2015년 법개정

2015년에는 3번의 법개정이 있었는데, 6월의 법개정²³¹⁾의 개정이유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시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

230) [시행 2014. 5. 14.] [법률 제12583호, 2014. 5. 14., 일부개정]

231) [시행 2015. 6. 19.] [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일부개정]

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선거구가 정당 간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③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함 ④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은 명예직으로 함 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⑦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함 ⑧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함 ⑨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함)을 제안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1회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⑩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함 ⑪ 선거구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함 ⑫ 당시 제24조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함께 규정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8월의 법개정²³²⁾은, 재외투표의 참여율 제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는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축소, 장애인과 군인 등의 선거권 보장, 헌법재판소의 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내용을 반영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 기타 당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별자치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③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④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⑤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232) [시행 2015. 8. 13.] [법률 제13497호, 2015. 8. 13., 일부개정]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함 ⑥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함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만 공개함 ⑨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⑩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⑪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⑫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 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 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함 ⑮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⑯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 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 ⑱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 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 ⑲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⑳ 2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

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일괄하여 공고하도록 함 ㉑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있도록 함 ㉒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㉓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 ㉔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㉕ 이 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2월의 법개정²³³⁾은,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응규정을 두어 건전한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고,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및 노약자의 투표편의를 높이고 통신장애나 해킹 등에 의한 안정성 및 보안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 했으며,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율 제고하려는 개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 조성, 그 밖에 당시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① 선거여론조사가 상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신고 및 등록의무를 상시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②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③ 선거권자가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날인 외에 서명을 허용함 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을 송부하도록 함 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233) [시행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 2015. 12. 24., 일부개정]

에 처함 ⑥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이의제기 확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함 ⑦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부대 등 밀집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함 ⑧ 재외선거인명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되, 2회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미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함 ⑨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함 ⑩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⑪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에 관한 사항 외에 가족관계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함 ⑫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의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언론인 등의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 보도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12) 2016년 법개정

2016년에는 2번의 법개정이 있었는데, 1월의 법개정²³⁴⁾은,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을 개정이유로 설명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

234) [시행 2016. 1. 15.] [법률 제13755호, 2016. 1. 15., 일부개정]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姓)·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②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③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재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에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3월의 법개정²³⁵⁾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당시의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향후에도 국회의원지역구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이었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이 경과되어 국회의원지역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입법공백 상태인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지역구 부재라는 비정상적 사태를 해소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 ②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함 ③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인구로 하되,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함 ④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

235)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 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함 ⑤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⑥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지연에 따라 필요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안심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및 예비후보자의 등록·홍보물 발송·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별표 1 등)한 것이다.

(13) 2017년 법개정

2017년에는 2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2월의 법개정²³⁶⁾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유권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②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함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⑤ 여론조사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⑥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함 ⑦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등을 금지함 ⑧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 중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삭제함 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⑩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⑪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⑫ 공무

236)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56호, 2017. 2. 8., 일부개정]

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3월의 법개정²³⁷⁾의 주요내용은, 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함 ②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범위를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로 한정함 ③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에도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민원상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④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한 것이었다.

(14) 2018년 법개정

2018년에도 2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3월 법개정²³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별표 2)하고, ②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총정수표를 조정(별표 3)한 것이다.

4월 법개정²³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각각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

237) [시행 2017. 3. 9.] [법률 제14571호, 2017. 3. 9., 일부개정]

238) [시행 2018. 3. 9.] [법률 제15424호, 2018. 3. 9., 일부개정]

239) [시행 2018. 4. 6.] [법률 제15551호, 2018. 4. 6., 일부개정]

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 ②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 ③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및 선상투표지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되도록 함 ④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 ⑤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 ⑥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⑦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 ⑧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⑨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⑩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⑪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 ⑫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 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⑭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 ⑮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 ⑯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 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 것이었다.

(15) 2020년 법개정

총선이 있었던 2020년에는 4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1월 법개정²⁴⁰⁾은, 당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

240) [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대량의 사표를 발생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함 ②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했다.

3월의 법개정²⁴¹⁾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인구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변경되거나 그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행법의 원활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례,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은 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별표 1) ②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거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 지역을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③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마련했다.

같은 3월에 바로 다시 했던 3월의 또하나의 법개정²⁴²⁾은,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 액수와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유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

241) [시행 2020. 3. 11.] [법률 제17070호, 2020. 3. 11., 일부개정]

242) [시행 2020. 3. 25.] [법률 제17127호, 2020. 3. 25., 일부개정]

는 자의 범위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②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 ③ 당시 현행법은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됨을 명시함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제외함 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게시물 삭제 등의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를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송하여야 함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도록 개정했다.

12월의 법개정²⁴³⁾은, 장애인·이동약자의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언론인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하는 개정이유가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함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 총 2회 실시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동시선거 규정을 정비함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 법정화를 폐지함 ④ 언론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포괄위임한 규정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은 규정을 정비함 ⑤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⑥ 병원·종교시설·극장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의 옥외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주거나

243)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 ⑦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⑧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함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16) 2021년 법개정

2021년에는 2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3월 23일 법개정²⁴⁴)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3월 26일 법개정²⁴⁵)은,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정보통신망에 정보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하고, 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전 투표절차 전반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17) 2022년 법개정

대선이 있었던 2022년에는 4번의 법개정이 있었다. 먼저 1월 18일 법개정²⁴⁶)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 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 했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은 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

244)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80호, 2021. 3. 23., 일부개정]

245) [시행 2021. 3. 26.]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일부개정]

246) [시행 2022. 4. 1.]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②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③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1월 21일 법개정²⁴⁷⁾은, ① 재외선거의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의 경우 재외투표소 방문이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외투표사무가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3.8퍼센트라는 역대 최저 재외선거 투표율을 기록한 점, ② 행정구역이 통합·개편되어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 수가 감소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전투표소의 수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제한액 등도 낮아져 후보자의 선거운동 측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지적 ③ 그동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시·군의 장의 선거인명부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일련의 개인정보를 처리·제공하고 있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 ④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고,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당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 민영방송사업자에게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의 제기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당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의무적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③ 2018년 6월 13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개편으로 인하여 읍·면·동의 수가 감소한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개편 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수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범위에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함 ⑤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아니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명 이상 때 4만명까지마다 1개

247)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791호, 2022. 1. 21., 일부개정]

소씩 최대 2개소에서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매 3만명까지마다 최대 3개소로 확대함 ⑦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2월의 법개정²⁴⁸⁾은, 당시 방역 규정상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고, 거소투표의 대상 및 방법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격리 중인 유권자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그래서 코로나19 격리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거소투표의 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격리자 등에 한정하여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하되,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법개정²⁴⁹⁾은,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고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정수와 그 선거구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의 미비점과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격리자 등의 투표관리를 위한 준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에도 선거일 당일과 마찬가지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개선을 위한 개정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함 ②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인하하고, 기탁금 반환기준을 완화함 ③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일괄 인상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고,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등에 대한 수당도 2배로 인상하며,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림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에 한정하여 사전투표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선거일의 투표소는 오

248) [시행 2022. 2. 16.]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249)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일부개정]

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 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함(별표 2) ⑥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2,978명으로 총 51명 증원하고, 이에 맞추어 총정수표를 조정함(별표 3) ⑦ 법 시행 이후 선거구의 조속한 획정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 내 예비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경과조치와 특례를 마련했다.

(18) 2023년 법개정

2023년에는 현재까지 2번의 개정이 있었다. 3월 법개정²⁵⁰⁾은,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의 투표시간을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정함으로써 격리자 등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에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8월 법개정²⁵¹⁾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상근직원의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게시판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하여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모두 금지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개정이었다.

250) [시행 2023. 3. 29.] [법률 제19325호, 2023. 3. 29., 일부개정]

251) [시행 2023. 8. 30.] [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

〈참고자료 2: 현행 공직선거법의 분류안〉

현행 공선법 조문	분류(새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절차 제1조+운동 제1조
제2조(적용범위)	절차 제2조+운동 제2조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절차 제3조(정의) 제1호
제4조(인구의 기준)	절차 제54조 (제6장 선거인명부 제54~65조)
제5조(선거사무협조)	절차 제6조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절차 제13조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 보장)	절차 제14조
제6조의3(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절차 제15조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1항은 선거운동법 제5조 제2항 절차 제16조(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지원) (제3장 선거의 공정관리 제16~34조)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절차 제17조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절차 제18조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절차 제19조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절차 제20조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절차 제21조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절차 제22조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절차 제23조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절차 제24조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절차 제25조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절차 제7조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절차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각호 삭제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절차 제30조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절차 제31조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절차 제66조 (제7장 후보자 제66~75조)
제12조(선거관리)	절차 제4조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절차 제5조
제14조(임기개시)	절차 제131조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선거권)	절차 제8조(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권리행사 제8~15조)
제16조(피선거권)	절차 제9조

제17조(연령산정기준)	절차 제10조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절차 제11조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절차 제12조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20조(선거구)	절차 제35조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35~49조)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절차 제36조
제22조(시·도회의 의원정수)	절차 제37조
제23조(자치구·시·군회의 의원정수)	절차 제38조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제39조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절차 제41조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절차 제42조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절차 제40조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절차 제43조
제27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절차 제44조
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절차 제45조
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절차 제46조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절차 제47조
제31조(투표구)	절차 제48조
제32조(구역의 변경 등)	절차 제49조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33조(선거기간)	절차 제50조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0~53조) *제3항 삭제
제34조(선거일)	절차 제51조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절차 제52조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절차 제53조 (선거의 연기와 선거일)로 제목 변경
제5장 선거인명부	
제37조(명부작성)	절차 제55조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절차 제58조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절차 제59조
제40조(명부열람)	절차 제60조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절차 제61조
제42조(불복신청과 결정)	절차 제62조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절차 제63조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절차 제64조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절차 제56조
제45조(명부의 재작성)	절차 제57조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절차 제65조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정당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절차 제67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및 취소·변경의 금지) *조문 제목 변경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절차 제69조(기존 제49조 제2항은 정당, 나머지는 수정)
제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삭제 기존 제50조 제1항은 정당, 제2항은 절차 제67조 제6항
제51조(추가등록)	정당법
제52조(등록무효)	절차 제70조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절차 제71조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절차 제72조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절차 제73조
제56조(기탁금)	절차 제74조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절차 제75조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정당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익제기)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정의 등)	제1항은 운동 제3조 제2항은 운동 제4조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운동 제6조
제59조(선거운동기간)	운동 제7조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운동 제8조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절차 제68조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운동 제13조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운동 제14조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운동 제9조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정당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운동 제10조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운동 제11조
제64조(선거벽보)	운동 제17조
제65조(선거공보)	운동 제19조
제66조(선거공약서)	운동 제21조
제67조(현수막)	운동 제22조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운동 제23조
제69조(신문광고)	운동 제24조
제70조(방송광고)	운동 제25조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운동 제27조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운동 제28조
제73조(경력방송)	운동 제29조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운동 제30조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운동 제31조
제80조(연설금지장소)	운동 제40조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운동 제33조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운동 제34조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운동 제35조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운동 제36조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운동 제37조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운동 제38조
제82조의7(인터넷광고)	운동 제26조
제83조(교통편의의 제공)	운동 제39조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운동 제41조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운동 제64조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운동 제65조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운동 제42조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운동 제43조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운동 제44조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운동 제45조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운동 제46조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운동 제47조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운동 제48조
제94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운동 제49조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운동 제50조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운동 제51조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운동 제52조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운동 제53조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운동 제54조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운동 제55조
제101조(타연설회 등의 금지)	삭제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운동 제56조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운동 제57조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운동 제58조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운동 제59조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운동 제60조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운동 제61조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절차 제26조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절차 제27조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 등의 공표제한 등)	절차 제28조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운동 제62조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운동 제63조
제110조의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익제기)	절차 제32조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절차 제33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절차 제193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법안 중 제1항은 정의 조항으로 삭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절차 제194조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절차 제195조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절차 제196조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절차 제197조
제117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절차 제198조
제118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절차 제34조
제8장 선거비용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정치자금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정당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제138조(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제140조(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5조(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운동 44조 제2항
제10장 투표	
제146조(선거방법)	절차 제76조 (제8장 투표 제76~105조)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절차 제77조 제4항에 수당규정 신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절차 제78조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절차 제79조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절차 제80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	절차 제81조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절차 제82조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절차 제83조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절차 제84조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절차 제85조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절차 제86조
제155조(투표시간)	절차 제87조
제156조(투표의 제한)	절차 제88조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절차 제89조
제158조(사전투표)	절차 제90조
제158조의2(거소투표)	절차 제91조
제158조의3(선상투표)	절차 제92조
제159조(기표방법)	절차 제93조
제161조(투표참관)	절차 제94조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절차 제95조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절차 제96조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절차 제97조
제165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절차 제98조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절차 제99조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절차 제100조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절차 제101조
제168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절차 제102조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절차 제103조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	절차 제104조
제171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절차 제105조
제11장 개표	
제172조(개표관리)	절차 제106조 (제9장 개표 제106~120조)
제173조(개표소)	절차 제107조
제174조(개표사무원)	절차 제108조 제4항에 수당규정 신설
제175조(개표개시)	절차 제109조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절차 제110조
제177조(투표함의 개함)	절차 제111조
제178조(개표의 진행)	절차 제112조
제179조(무효투표)	절차 제113조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절차 제114조
제181조(개표참관)	절차 제115조
제182조(개표관람)	절차 제116조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절차 제117조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절차 제118조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절차 제119조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절차 제120조
제12장 당선인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절차 제121조 (제10장 당선인 제121~131조)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절차 제122조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절차 제123조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절차 제124조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절차 제125조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절차 제126조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절차 제127조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절차 제128조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절차 제129조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절차 제130조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95조(재선거)	절차 제132조
제196조(선거의 연기)	절차 제53조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절차 제133조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절차 제134조
제199조(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절차 제53조
제200조(보궐선거)	절차 제136조 4항의 대통령이 궐위된 때를 새로운 조문으로 하여 절차 제136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신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37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절차 제138 (동시선거의 선거기간) * 기존 제202조 제1항은 절차 제3조에 규정되었으므로 삭제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절차 제139조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0조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운동 12조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운동 제18조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운동 제20조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운동 제32조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절차 141조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2조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3조
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4조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5조
제215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6조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1항은 운동 제32조 2항 2, 5항은 절차 제147조

제217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절차 제148조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절차 제149조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절차 제150조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절차 제151조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제152조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 제153조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절차 제154조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절차 제155조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절차 제156조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절차 제157조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절차 제158조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익 및 불복신청 등)	절차 제159조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절차 제160조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절차 제161조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운동 제15조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정치자금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절차 제162조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절차 제163조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절차 제164조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절차 제165조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절차 제166조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절차 제167조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절차 제168조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절차 제169조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절차 제170조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절차 제171조
제218조의26(국외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절차 제172조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절차 제173조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절차 제174조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절차 제175조

제218조의30(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절차 제176조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절차 제177조
제218조의32(국외선거법에 대한 영사조사)	절차 제178조
제218조의33(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절차 제179조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절차 제180조
제218조의35(시행규칙)	절차 제181조
제15장 선거에 관한 소송	
제219조(선거소청)	절차 제182조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	절차 제183조
제221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절차 제184조
제222조(선거소송)	절차 제185조
제223조(당선소송)	절차 제186조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절차 제187조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절차 제188조
제226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절차 제189조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절차 제190조
제228조(증거조사)	절차 제191조
제229조(인지 첩부 및 첩부에 관한 특례)	절차 제192조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⑤ 운동 제66조 ① 4. 정치자금법 ⑥~⑦ 정당법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운동 제67조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운동 제68조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절차 제223조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절차 제224조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운동 제69조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운동 제70조 절차 제225조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④ 운동 제71조 ⑤~⑥ 정당법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이~하거나: 운동 제72조 특정한~하게 한 때에는: 절차 제226조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절차 제227조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절차 제228조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② 운동 제73조 ③ 절차 제229조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절차 제230조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절차 제231조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절차 제232조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절차 제233조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① 절차 제234조 ② 정당법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절차 제235조 ② 운동 제74조 ③ 절차, 운동 공통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절차 제236조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절차 제237조
제248조(사위투표죄)	절차 제238조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절차 제239조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② 운동 제75조 ③ 정당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운동 제76조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운동 제77조 (다만 ④의 제137조의2는 정당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운동 제78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운동 제79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운동 제80조 ② 7. 절차 제240조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운동 제81조를 기준으로 하고 아래 절차로 표시한 조항은 절차 제241조 ① 1.~3. 5. ② 절차 ③ 1. 파.~너. 절차 ③ 2. 절차 ③ 4. 벌칙 ④ 정당법 ⑤ 1., 11~12. 절차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절차 제242조+운동 제82조 ① 1., ③ 절차 ① 2. 운동 ② 조문별 분류 ④ 공통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정치자금법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절차 제243조 + 운동 제83조
제260조(양벌규정)	절차 제244조 + 운동 제84조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운동 제85조+절차 제245조 ① 운동 ② 절차 ③ 1. 5. 절차 ③ 2.~4의2. 운동 ④ 절차 ⑥ 조문별 분류 ⑦ 1. 2. 다. 마. 운동 ⑦ 1. 2. 가.~나. 사~아. 4.~6. 절차 ⑧ 1~1의2. 2.바., 3. 5~6. 절차 ⑧ 2.가. 다~마., 2의2 운동 ⑧ 2.나., 4. 정당법 ⑨ 1., 6. 절차 ⑨ 2. 운동 ⑩~⑫ 공통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절차 제246조 + 운동 제86조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절차 제247조 + 운동 제87조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절차 제248조 + 운동 제88조
제17장 보칙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절차 제199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절차 제200조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절차 제201조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절차 제202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절차 제203조
제267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절차 제204조

제268조(공소시효)	절차 제205조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
제269조(재판의 관할)	절차 제206조
제270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절차 제207조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절차 제208조
제271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절차 제209조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절차 제210조
제272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절차 제211조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절차 제212조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절차 제213조
제273조(재정신청)	절차 제214조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절차 제215조
제275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절차 제216조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절차 제217조
제277조(선거관리경비)	절차 제218조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절차 제219조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절차 제220조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절차 제221조
	절차 제222조(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신설

부록 1. 공직선거법개정안(공직선거절차법)

<조문목록>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범위)
- 제3조(정의)
- 제4조(선거사무 통할.관리체계)
- 제5조(선거구선거사무관리)
- 제6조(선거사무협조)
- 제7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권리행사

- 제8조(선거권)
- 제9조(피선거권)
- 제10조(연령산정기준)
-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13조(선거권행사의 보장)
- 제14조(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제3장 선거의 공정관리

- 제16조(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지원)
- 제17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제18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제19조(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20조(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제21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제22조(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제23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24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25조(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제2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27조(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28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제29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제30조(공정선거지원단)
- 제31조(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제32조(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33조(의정활동 보고)
- 제34조(선거일후 답례금지)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제35조(선거구)
- 제36조(국회의 의원정수)
- 제37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38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39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40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41조(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제4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43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제44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 제45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 제46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제4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 제48조(투표구)
- 제49조(구역의 변경 등)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50조(선거기간)
- 제51조(선거일)
- 제52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53조(선거의 연기와 선거일)

제6장 선거인명부

- 제54조(인구의 기준)
- 제55조(명부작성)

- 제56조(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57조(명부의 재작성)
- 제58조(거소·선상투표신고)
- 제5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 제60조(명부열람)
- 제61조(이의신청과 결정)
- 제62조(불복신청과 결정)
- 제6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 제6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65조(명부사본의 교부)

제7장 후보자

- 제66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제67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및 취소·변경의 금지)
- 제68조(예비후보자등록)
- 제69조(후보자등록 등)
- 제70조(등록무효)
- 제71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72조(후보자사퇴의 신고)
- 제7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제74조(기탁금)
- 제75조(기탁금의 반환 등)

제8장 투표

- 제76조(선거방법)
- 제7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제78조(투표소의 설치)
- 제79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80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 제81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제82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83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제84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85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86조(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87조(투표시간)
- 제88조(투표의 제한)

제89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90조(사전투표)
제91조(거소투표)
제92조(선상투표)
제93조(기표방법)
제94조(투표참관)
제95조(사전투표참관)
제96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97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제98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제99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00조(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01조(투표의 비밀보장)
제102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제103조(투표록의 작성)
제104조(투표함 등의 송부)
제105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제9장 개표

제106조(개표관리)
제107조(개표소)
제108조(개표사무원)
제109조(개표개시)
제110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제111조(투표함의 개함)
제112조(개표의 진행)
제113조(무효투표)
제114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15조(개표참관)
제116조(개표관람)
제117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18조(투표지의 구분)
제119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제120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제10장 당선인

제121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22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23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2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25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2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27조(당선인 사퇴의 신고)
제12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29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130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131조(임기개시)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2조(재선거)
제133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1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제135조(보궐선거)
제136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제137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8조(동시선거의 선거기간)
제139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140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141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제142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제143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제144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145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제146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제147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148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49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50조(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제151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152조(국외부재자 신고)
 제153조(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154조(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제155조(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제156조(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57조(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제158조(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제159조(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제160조(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161조(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제162조(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163조(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164조(투표용지 작성 등)
 제165조(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제166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제167조(재외투표의 회송)
 제168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제169조(재외투표의 접수)
 제170조(재외투표의 개표)
 제171조(재외투표의 효력)
 제172조(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제173조(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제174조(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제175조(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제176조(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제177조(외국인의 입국금지)
 제178조(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제179조(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제180조(준용규정 등)
 제181조(시행규칙)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82조(선거소청)
 제183조(소청에 대한 결정)
 제184조(「행정심판법」의 준용)
 제185조(선거소송)
 제186조(당선소송)

제187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188조(소송 등의 처리)
제189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제190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제191조(증거조사)
제192조(인지 첩부 및 첩부에 관한 특례)

제15장 기타(보칙)

제193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제194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95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96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97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제198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99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00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01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02조(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제203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04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제205조(공소시효)
제206조(재판의 관할)
제207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제208조(피고인의 출정)
제209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제210조(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제211조(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제212조(선거범죄의 조사등)
제213조(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14조(재정신청)
제215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제216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제217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제218조(선거관리경비)
제219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220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221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제222조(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6장 벌칙

- 제22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24조(당선무효유도죄)
- 제22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226조(군인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제227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제228조(선장 등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 제229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230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31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32조(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제23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 제23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 제23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23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제23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 제238조(사위투표죄)
- 제23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240조(부정선거운동죄)
- 제24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42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43조(선거범죄선동죄)
- 제244조(양벌규정)
- 제2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제2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247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248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제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 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3.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 통할·관리체계)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49조에 따른 제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150조에 따른 제외투표관리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선거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선거구선거사무관리) ①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제46조 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구안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할 선거사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또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그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할 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를 대행하거나 대행하게 한 때에는 대행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업무의 범위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사무협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 및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권리행사

제8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9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지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법,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법”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199조 및 제201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13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

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하 “격리자등”이라 한다)은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격리자등의 선거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의 공정관리

제16조(정책선거 촉진을 위한 지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

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 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③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실·논평·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기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

1.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 게재
2. 경고결정문 게재
3. 주의사실 게재
4. 경고, 주의 또는 권고

④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제18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0조(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당해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

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 보도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방송에 있어서는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 다음 발행호가 선거일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등이 배부된 지역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당해 언론사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당, 후보자, 방송사 또는 언론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와 방송사 또는 언론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반론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 기타 반론보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④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21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

제23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선거운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3.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④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조치
3. 제25조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등 처리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 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한다.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제68조 제1항에 따른 해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한다.

4.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2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선거범죄” 또는 “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로 본다.

⑫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여론조사 기관·단체(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⑥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서식,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절차, 등록변경·등록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④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체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6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24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⑩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 ⑪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화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 제24조 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가 부담한다.

⑭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여론조사의 목적·내용 및 기간
2. 여론조사 대상 지역 및 대상자 수
3.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성별·연령별·지역별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 이 경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총수는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수의 30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선거운동법 제34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선거운동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 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 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공정선거지원단)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의 구성·활동방법 및 수당·실비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 제3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본다.

제32조(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소속정당, 이의제기자,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증명서류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와 제출받은 서류·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집·수정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서의 양식, 제출 서류·자료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첨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⑤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35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36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37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한다. 다만,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38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39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 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

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1조(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제39조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40조 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국회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제4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43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제39조 제8항 및 제9항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제44조(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국회의원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으로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구역이 속하게 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지방의회가 종전의 지방의회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재임기간에는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당해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3.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은 후보자등록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되어 잔임기간 재임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각각 의원정수로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시·

도의원은 당해 시·도가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시·도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시·도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의원수가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의원정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의원정수에 미달하는 수만큼의 증원선거를 실시한다.

4. 시가 광역시로 된 때에는 종전의 시의회의원과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도의회의원은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각각 상실하고 광역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도의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그 잔임기간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를 의원정수로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① 제45조 제3호 단서·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원선거는 제37조·제38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의하되,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③ 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시의 선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한다.

1.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2.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되며,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제정시 새로 선거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폐지된 때에는 그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변경 당시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③ 이 법에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제1항에 의한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8조(투표구) ① 읍·면·동에 투표구를 둔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읍·면·동에 2 이상의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의 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투표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③ 투표구를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구의 명칭과 그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구역의 변경 등) ① 제55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0조(선거기간)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제51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52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5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53조(선거의 연기와 선거일)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를 연기하는 때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는 가능한 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5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제55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8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8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161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1조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수 없다.

④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하나의 투표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천인을 넘는 때에는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을 구·시·군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선거인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79조 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합·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7조(명부의 제작성) ①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 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제작성·열람·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제8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③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

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원치료, 시설치료 또는 시설격리 중인 사람은 해당 시설의 장의, 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사유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7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6. 격리자등
7.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⑤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해당 신고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정당한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인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라 한다)를 각각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각 1통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5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⑧ 거소투표신고서·선상투표신고서의 서식,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서식, 거소투표·선상투표 사유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①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한다.

②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면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면사항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명부열람)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제1항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2조(불복신청과 결정) ① 제61조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6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 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후 3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당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

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교부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후보자

제66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선거운동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및 동법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 제223조와 제224조 및 제226조부터 제24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67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및 취소·변경의 금지)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4.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⑤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선거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68조(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6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③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02조 제2항·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69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

⑨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

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69조 제1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예비후보자가 제6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한다.

⑫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재산·병역·세금·전과기록·학력·후보자 등록경력에 관한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행정정보 또는 증명서류의 전자적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선거운동법 제13조 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동법 제14조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17조의 선거벽보, 제19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를 포함한다), 제21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⑥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서를 포함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

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현행~~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현행~~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6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 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75조 제2항 또는 제203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법 제18조 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현행~~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현행~~공직선거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3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4.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5.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 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45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09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8조 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23조 및 제125조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74조 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9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투표

제7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7조(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수당은 24만원,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수당은 18만원으로 한다.

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투표소의 설치)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⑥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기표소의 설치 및 이를 이용한 투표절차,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78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7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80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관·시설”이라 한다)로서 제58조 제1항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 후 3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 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직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인으로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

다.

⑧ 기관·시설의 거소투표신고인수 공고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기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기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기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기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기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기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기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 제5항의 경우에 같은 기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추첨개시시각에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자가 그 정당 또는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기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기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⑧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⑨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현행~~공직선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경우에 그 정당의 후보자의 기재순위는 이미 결정된 종전의 당해 정당추천후보자의 기재순위로 한다.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제82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 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이하

“우편투표함”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⑨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합·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3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투표안내문의 작성은 전산조직에 의할 수 있다.

④ 투표안내문의 서식·규격·계재사항 및 우편발송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거소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거소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거소투표자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소투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소투표자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소투표발송록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격리자등이 제5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후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

제된 경우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거소투표자와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소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기타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거소투표용지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⑥ 거소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계제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하 “선상투표자”라 한다)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86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계제사항, 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준용한다.

③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닫으며, 사전투표소(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오후 8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10조 제4항, 제162조 제2항 및 제1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본다.

제88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61조 제2항·제62조 제2항 또는 제63조 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거소투표자는 제91조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제85조 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4. 제3자의 대리투표로 거소투표신고인이 실제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할 수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85조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89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교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자를 투표보조인으로 신고 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 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89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1조(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2조(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일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

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합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⑪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⑭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제94조(투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⑥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⑦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미성년자·제1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7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⑧ 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⑨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⑩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⑪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⑬ 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5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제 90조 제6항제1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소마다 8명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94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⑤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6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의 출입을 허가한 투표협조요원,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국제선거참관단 등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③ 제2항의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④ 사전투표소(제80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투표관리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제98조(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① 제97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② 사전투표소(제80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9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④ 제9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이를 준용한다.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00조(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101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또는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102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103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04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제105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제106조(개표관리) ①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는 각각 당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행한다.

③ 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13항 및 동법 제5조(위원장)제4항의 규정은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선거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개표소)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④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8조(개표사무원)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개표사무원은 제78조 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78조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제109조(개표개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제110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90조 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투표함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1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12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3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합되지 아니한 것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9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摺印)을 제외한다]의 날인·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

표

9.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114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115조(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⑥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⑫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6조(개표관람)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람증의 배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

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의 출입을 허가한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 국제선거참관단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양여할 수 없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다.

제118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119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집계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⑥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0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투표함·투표록·개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2조·제185조 및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장 당선인

제121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임을 통지한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

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2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21조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23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을 배분한다.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begin{array}{l} \text{연동배분} \\ \text{의석수} \end{array} = \left[\left(\text{국회의원정수} - \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수} \right)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right] \div 2$$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text{잔여배분의의석수} = (\text{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text{각 연동배분의의석수의 합계}) \times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회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text{조정의회석수} = \text{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times \text{연동배분의의석수} \div \text{각 연동배분의의석수의 합계}$$

-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⑤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⑧ 제121조 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24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제121조 제4항 및 제122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제125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21조 제4항, 제123조 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제12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127조(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8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9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0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의 재배분) ① 제121조·제122조·제124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의 배분 및 그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33조의 사유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의석을 재배분하고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34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임기개시) ①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47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32조(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 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6. 제199조 내지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제133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③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⑤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2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3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재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30의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재배분을 위한 득표수의 계산은 그 후보자의 합당전 정당의 득표수에 합산한다.

⑤ 제133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제135조(보궐선거) ①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④ 국회의원이 궐원된 때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당해 지방의회의장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6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① 대통령에 궐위가 생긴 때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7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2조 제2항 또는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④ 보궐선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제1항 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고, 국회의원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의회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52조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52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 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서 제58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보궐선거등이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신청을 하고 제191조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2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38조(동시선거의 선거기간)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139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①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② 제5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중에 그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있는 보궐선거 등
2.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후에 해당되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된 보궐선거 등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52조 제2항제1호에 따라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52조제2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⑤ 제52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140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제6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② 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1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舉 등의 選舉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된 選舉 등의 選舉日)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142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84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설치·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3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1.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2.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

제144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94조 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

③ 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95조 제2항에 따른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81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제145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제146조(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개표참관인은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마다 8인을,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정당은 4인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한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147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12조 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② 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제13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49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 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제150조(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1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제152조(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153조 제2항 제4호에서 같다)

5. 여권번호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재사항 중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53조(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애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5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으로, “여권번호”는 “여권번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 또는 모의 성명”으로 본다.

제154조(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1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15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55조(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시·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보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6조(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그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해당 선거 직전에 실시한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1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1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7조(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

제158조(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59조(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153조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53조 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⑤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제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명부작성권자가 제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제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제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서에 따라 제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

제160조(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제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1. 제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제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161조(제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제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는 해당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제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155조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제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제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제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2조(제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제외선거의 투표는 제93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제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③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제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제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3조(제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제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제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조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제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제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투표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제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사유로 추가하여 설치하는 제외투표소의 경우에는 제외국민수가 3만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명까지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운영하되, 추가되는 제외투표소의 총 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1. 관할구역의 제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2. 공관의 관할구역 또는 관할구역의 인접한 지역에 제외선거인등이 소속된 국군부대가 있는 경우

③ 제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하여금 투표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 투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의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국군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지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⑨ 제96조·제99조·제100조 및 제101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로, “선거일”은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

제164조(투표용지 작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또는 재외투표소관리자(이하 “책임위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82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82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 이 경우 제1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⑤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5조(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은 제153조 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합·봉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6조(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3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할 때에는 군인이 아닌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외투표의 회송)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외투표소는 공관과의 거리 등의 사유로 매일의 재외투표를 인계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투표소 운영기간 종료 후 그 기간 중의 재외투표를 일괄하여 인계할 수 있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합·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외투표의 인계,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8조(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등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이 제167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제169조(재외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170조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0조(재외투표의 개표) 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16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소별로”는 “개표소별로”로,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1조(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13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 제164조 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

제172조(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① 제205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3조(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4조(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12조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5조(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167조 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3조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6조(국외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제177조(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제178조(국외선거법에 대한 영사조사) ①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

다.

④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9조(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80조(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선거관리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는 “선거관리경비”로 본다.

제181조(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82조(선거소청) 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

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소청인으로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피소청인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3. 소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소청장 부분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장 부분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수에 상응하는 부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분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83조(소청에 대한 결정) ① 제182조 제1항 또는 같은조제2항의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참가인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주문
4. 소청의 취지
5. 이유
6. 결정한 날짜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청의 결정은 소청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4조(「행정심판법」의 준용) ① 선거소청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선거소청”으

로, “청구인”은 “소청인”으로, “피청구인”은 “피소청인”으로, “심판청구 또는 심판”은 “소청”으로, “심판청구서”는 “소청장”으로, “재결”은 “결정”으로, “재결기간”은 “결정기간”으로,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재결서”는 “결정서”로 본다.

② 소청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5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183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18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18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186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 제1항·제3항 또는 제1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21조 제1항·제2항, 제1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123조 또는 제1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183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18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18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182조 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18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제187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188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89조(소송 등에 관한 통지)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이 제기된 때 또는 소청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0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선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및 제26조(직권심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191조(증거조사) ①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에 필요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증거보전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여법원의 입회하에 증거보전물품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처분은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185조 및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192조(인지 첨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제15장 기타(보칙)

제193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

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조·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과외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거.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 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다. 제195조 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짠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료(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95조 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94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95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

· 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 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196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94조 또는 제19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197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98조(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제199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0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01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2조(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75조와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3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3조 내지 제224조 및 선거운동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226조부터 제243조까지 및 선거운동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241조제1항에서 제3항 및 선거운동법 제81조 제1항·제2항, 제242조·제243조(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및 선거운동법 제82에서 제83조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71조 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선거운동법 제8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제199조 또는 제201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199조 또는 제201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04조(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①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법 제66에서 제69조 및 제223내지 제224조, 선거운동법 제71조 내지 제83조 및 제226조 내지 제243조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행한 재판장은 그 판결서등본을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5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1년(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선거운동법 제8조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06조(재판의 관할)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207조(선거법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법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제208조(피고인의 출정) ① 선거법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9조(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정당의 당사게시선전물을 포함한다)이나 유사기관·사조직 또는 시설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절차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불법시설물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시설물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③ 제74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8항을 준용한다.

제210조(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광고”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특정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11조(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체국장이 제1항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우편물의 우송을 즉시 중지하고, 발송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발송우체국 게시판에 우송중지의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의 기간내에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여부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및 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압수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우체국장은 즉시 그 우편물의 우송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이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우체국장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물의 우송을 중지하거나 선전물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 거부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죄)·제51조의2(비밀 누설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중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불법선전물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제1항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선거범죄의 조사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는 경우 질문·조사를 하기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문답서에 이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절차·방법, 증거자료의 수거, 증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3조(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4조(재정신청) ① 선거운동법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제223조·제224조, 선거운동법 제71조 내지 제72조 및 제226조 내지 제227조, 제238조 내지 제239조 및 선거운동법 제75조, 선거운동법 제80조 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제5항, 제242조 및 선거운동법 제82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서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5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6조(선거운동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운동은 이를 중지한다.

제217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18조(선거관리경비)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33조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경비
2. 선거에 관한 소청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청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경비를 배정 또는 납부한 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배정 또는 납부한 경비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제4항의 구분에 따른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경비로서 이 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중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도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따른 경비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부터 15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산출기준·납부절차와 방법·집행·검사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9조(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원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0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0조 제2항·제3항 및 제16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1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22조(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와 제272조의3에 의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선거범죄를 조사한 후 관련 선거범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선거범죄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장 벌칙

제223조(당선인에 대한 배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4조(당선무효유도죄) 제199조 또는 제201조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선거운동법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제223조·제243조 제1항 및 선거운동법 제82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5조(배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선거운동법 제66조 내지 제69조, 제223조 내지 제224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26조(군인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27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제228조(선장 등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9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9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92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92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92조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229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선거운동법 제17조의 선거벽보·동법 제19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84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01조(제163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 개표소에서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2조(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검사·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35조 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8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3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34조 내지 제235조 및 선거운동법 제74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② 제234조 내지 제235조 및 선거운동법 제74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90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8조(사위투표죄)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0조(부정선거운동죄)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계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7항제3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9항제1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9항제2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10항~~(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5항 및 제6항(제19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19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20조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의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나.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8제7항제1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27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다. 제28조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라. 제3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59조 제8항(제15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나. 제6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다. 제45조 제4항[제33조 제4항 및 선거운동법 제13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94조제7항(제9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5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제96조(제163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8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99조(제165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00조 제1항(제163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아.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제24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7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12조 제3항(제24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242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제194조·제195조 제1항 또는 제19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4조·제195조 제1항 또는 제1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98조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45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43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운동법 제66조 내지 제69조 및 제223조·제224조, 선거운동법 제71조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4조, 제236조제2항, 제237조제1항, 제238조제1항, 제241조, 제2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23조, 제224조, 제231조제1항·제2항, 제233조제1항, 제235조제1항, 제236조제1항, 제239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 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26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③ 제78조 제3항(제79조 제4항 및 제107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3조 제4항 또는 제2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12조 제4항(제24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4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나. 제14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다. 제77조 제3항이나 제79조 제10항(제80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0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라. 제80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4. 제2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5. 제2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4조 제3항 단서, 제95조 제3항, 제115조 제3항 또는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 제9항, 제79조 제3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4.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12조 제4항(제24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제197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197조를 위반하여 제195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⑧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75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242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247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45조 제7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

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8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부록 2. 공직선거법개정안(공직선거운동법)

<조문목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제5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제6조(투표참여 권유활동)

제7조(선거운동기간)

제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9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10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11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12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2장 선거운동의 방법

제13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4조(예비후보자공약집)

제15조(후보자의 선거운동)

제16조(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17조(선거벽보)

제18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제19조(선거공보)

제20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제21조(선거공약서)

제22조(현수막)

제23조(어깨띠 등 소품)

제24조(신문광고)

제25조(방송광고)

제26조(인터넷광고)

제27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28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제29조(경력방송)
- 제30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제31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제32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 제33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제34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제35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제36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제3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38조(선거운동정보의 전송요건)
- 제39조(교통편의의 제공)

제3장 선거운동의 제한

- 제40조(연설금지장소)
- 제41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 제42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제43조(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제44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45조(시설물설치 등)
- 제46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제47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제48조(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 제49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 제5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제51조(왜곡·허위보도 등 금지)
- 제52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 제53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 제54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제55조(녹음기 등의 사용)
- 제56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 제57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제58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제59조(행렬 등의 금지)
- 제60조(호별방문의 제한)
- 제61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 제62조(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63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64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65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4장 벌칙

제66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7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8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9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70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71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제72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제73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74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제75조(허위사실공표죄)

제76조(후보자비방죄)

제77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78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제79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80조(부정선거운동죄)

제8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82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83조(선거범죄선동죄)

제84조(양벌규정)

제8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8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87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88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전송하는 행위

제4조(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13조 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제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선거절차법 제8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선거절차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선거절차법 제71조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10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선거절차법 제71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자치구·시·군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도 또는 구·시·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구·시·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현행~~공직선거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④ 예비후보자가 선거절차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⑤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17조의 선거벽보, 제19조의 선거공보, 제21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

⑦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 제9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현행~~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수(그 구·시·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선거절차법 제79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폐지·분할·합병 직전의 읍·면·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제1항, 선거절차법 제34조제5호 및 ~~현행~~공직선거법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

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 이내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그 구·시·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 이내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⑦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

제11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① 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제10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②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표지 및 그 표지 분실 시 처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선임 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설치·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선거운동의 방법

제13조(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9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설치·게시·첩부하는 행위

2.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10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선거절차법 제6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예비후보자공약집) ①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②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

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후보자의 선거운동) 후보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
2.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3.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4.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광고, 경력방송, 공개장소 연설·대담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6.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7.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벽보, 전단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경력방송,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8.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전단형 선거공보, 신문광고, 방송광고

제16조(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25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27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제26조에 따른 인터넷광고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35조 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제36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⑦ 제4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제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선거벽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선거절차법 제81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선거절차법 제6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첨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현행 공직선거법 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까지 첨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첨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첨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첨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④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거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 후보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첨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⑨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

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 수량공고·규격·작성·제출·확인·첩부·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선거벽보 첩부를 위한 협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선거절차법 제1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다음 각 호에 상당하는 수로 한다.

1.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3분의 2
2.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준매수의 2분의 1

제19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2면으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현행 공직선거법 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선거절차법 제85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절차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선거절차법 제84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선거절차법 제85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⑦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선거절차법 제69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표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⑨ 후보자가 제13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6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⑩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선거절차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선거절차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와 같이 제출하는 경우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⑬ 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

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구역이 큰 선거구의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지면에 작은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을 선거구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선거구의 후보자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종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담내역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공약서)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④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⑥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7조제3항·제8항 및 제19조제4항(단서는 제외한다)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

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품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회수는 해당 후보자가 각각 1회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비용은 해당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이 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에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⑥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방송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는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방송광고는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제2항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광고를 함에 있어서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방송일시의 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26조(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 ⑤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4.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구마다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

② 제25조 제1항 후단·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경력, 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④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연설원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을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단위로 미리 지정·공고하고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연설을 할 사람의 성명·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신청한 방송시설의 이용일시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일시를 정하되, 그 일시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그 지정된 일시의 24시간 전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그 시간대에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일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와 체결한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방송일전 3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⑩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⑪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연설을 행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⑫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청서의 서식·중첩된 방송일시의 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외에 선거운동기간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당해 선거의 후보자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연설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③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방송일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71조제1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경력방송) 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2.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각 2회 이상
3. 시·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

③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④ 제27조 제12항 및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⑤ 경력방송 원고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의 제출 및 경력방송실시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27조 제12항 및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팔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17조의 선거벽보, 제19조의 선거공보, 제21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⑦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⑨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⑩ 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31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 4개 이상 동시선거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제31조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31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할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절차법 제195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 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 제27조 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⑨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기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 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⑧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 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⑭ 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35조 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그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⑥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선거운동정보의 전송요건)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7조 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교통편의의 제공)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운동의 제한

제4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32조의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

제41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을 지지함을 표방하는 행위

제42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선거절차법 제71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1.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
2.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
3.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제44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를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 기간 중에는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시설물설치 등)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에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정당(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게시할 수 있다.

제46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17조의 선거벽보, 제19조의 선거공보 및 제21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제47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48조(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49조(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
2.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3.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4.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한 광고
5.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6.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 광고. 다만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 출연은 제외.

제50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51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

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중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왜곡·허위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52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절차법 제195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제53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3.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4.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의 경력방송
5.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

제54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55조(녹음기 등의 사용)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2.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제56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과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1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③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58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②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

제59조(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61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62조(전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20명 이하의 수신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수신대상자의 수에 관계없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63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선거절차법 제71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5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선거절차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4.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

· 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제4장 벌칙

제66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제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제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투표보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3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33조 제1항·제34조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6조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85조 제69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공직선거절차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8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66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66조 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9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① 제51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66조 내지 제6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1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답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인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도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72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7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3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답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75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한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77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51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5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6조 제5항·제49조·제50조 제1항·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4항, 제29조 제4항, 제30조 제2항, 제33조 제8항, 제34조 제4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5조 제13항 후단[제3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공직선거절차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2.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3.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4. 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소품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6.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7. 제33조 제7항[제3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6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9. 제65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0.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1. 제43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2. 제4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3.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4.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6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6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7.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6조 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14조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

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3. 제17조 제1항·제9항, 제19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4. 제46조 제1항·제3항 또는 공직선거절차법 제14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③ 제6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6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7조 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제31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라. 제41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마. 제37조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65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사.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자.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차. 제57조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카.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횡포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6조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17조 제8항(제19조 제13항 및 제21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24조 제1항의 횡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제31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8. 제33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9.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82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제33조 제6항[제34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 제6항·제3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공직선거절차법 제198조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선거절차법 제245조 제7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3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66조 내지 제69조·제71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1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8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제3항, 제80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6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2. 제19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접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31조 제8항 또는 선거절차법 제147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 제3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 제3항·제27조 제10항·제28조 제3항(제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9조 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2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나. 제24조 제3항 후단 및 제2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나. 제1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31조 제6항 또는 제10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동차, 확장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라.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2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⑥ 제66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⑦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공직선거절차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제66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66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87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4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85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답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023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공직선거법 체계정비 방안 연구」

2023년 12월 21일 인쇄

2023년 12월 21일 발행

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02-3294-8405

연구기관 :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